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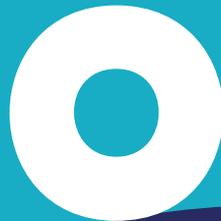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일 시 2021. 12. 21.(화) 14:00 ~ 17:00

장 소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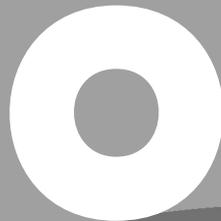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일 시** 2021. 12. 21.(화) 14:00 ~ 17:00

**장 소**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학회



#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 일시: 2021. 12. 21.(화) 14:00~17:00
- 장소: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3층)
- 프로그램

| 시간                            | 주요 내용  | 발표                          |
|-------------------------------|--|-----------------------------|
| 14:00~14:10                   | 개회 및 인사  | 기획재정담당관                     |
| <b>세션1</b>                    | <b>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b>   | <b>사회: 이주영(한국인권학회)</b>      |
| 14:10~15:50                   | 【발제1】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 【발제2-1】 취약집단(아동/노인/장애인) 인권상황 비교  |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                               | 【발제2-2】 취약집단(여성/이주민) 인권상황 비교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지정토론】                        |  |                             |
|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       |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위원)<br>김철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
| 일반국민과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br>이명희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br>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 15:50~16:00                   | 휴식   |                             |
| <b>세션2</b>                    | <b>통계로 보는 한국의 인권</b>   | <b>사회: 유영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b> |
| 16:00~17:00                   | 【발제3-1】 한국의 인권통계 2021  |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              |
|                               | 【발제3-2】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축과 활용  | 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             |
|                               | 【지정토론】   |                             |
| 인권통계 활용방안 및 국가인권지표로의 발전 방향 모색 | 박중수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br>주윤경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br>이희길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br>이상운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실장) |                             |



# 목 차

## 세션1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

**발제1.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7

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2-1. 취약집단(아동/노인/장애인) 인권상황 비교** ..... 31

정병은(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발제2-2. 취약집단(여성/이주민) 인권상황 비교** ..... 45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

이성훈(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 67

김철효(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71

### 지정토론. 일반국민과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77

이용석(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 83

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 93

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96

## 세션2 통계로 보는 한국의 인권

|                                     |     |
|-------------------------------------|-----|
| 발제3-1. 한국의 인권통계 2021 .....          | 103 |
| 김대훈(스탯코리아 대표)                       |     |
| 발제3-2.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축과 활용 .....      | 127 |
| 심수진(통계개발원 사무관)                      |     |
| 지정토론. 인권통계 활용방안 및 국가인권지표로의 발전 방향 모색 |     |
| 박종수(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147 |
| 주윤정(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         | 151 |
| 이희길(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         | 153 |
| 이상운(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실장) .....       | 156 |

세션 1

#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

사회: 이주영(한국인권학회 회장)





발제1

#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 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2021년 국가인권실태 조사 결과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사)한국삶의질학회)

# 발표 목차

01

국가인권실태조사  
개요

02

2021년 조사 결과  
1: 인권 인식

03

2021년 조사 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04

2021년 조사 결과  
3: 인권 관련  
쟁점들

05

2021년 조사 결과  
4: 인권 교육 및  
개선

## 국가인권실태조사 개요(1): 필요성과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 인권실태를 요약할 수 있는 인권통계 작성의 중요성
  - 인권에 대한 관심 급증과 사회 각계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요구 증가
  - 국민의 인권 현황 정보 요구에 부응
  - 다양한 쟁점들이 얽힌 인권 현황 파악 및 인권보호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연구의 목적

- ▶ 2019년, 인권관련 최초 정부승인통계 <국가인권실태조사> 시작 및 이후 매년 실시
  - 2018년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2019년부터 조사 통해 미비한 지표 파악
  - 전국 단위 국가인권실태조사 2년간 통계청과 공동 실시 이후 2021년 민간 조사기관 시작
  - 기존 승인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권지표 통계의 발굴

## 국가인권실태조사 개요(2): 표본 추출

|                            |   |
|----------------------------|---|
| <b>목표 모집단</b>              | ○ 조사기간 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개인   |
| <b>조사 모집단<br/>(표본 추출틀)</b> | ○ 조사모집단: 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 제외한 일반가구 만 19세 이상 가구원<br>○ 표본 추출틀: 2019년 등록 센서스(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   |
| <b>표본규모 및 배분</b>           | ○ 표본 배정: 시/도별 가구 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 조사구 특성(일반/아파트) 비례 배분<br>○ 표본규모(과대추출방법): 1000개 조사구 추출, 조사구당 목표가구 10가구   |
| <b>표본추출방법</b>              | ○ 층화 : 시/도(17개 권역), 동부/읍면부,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br>○ 표본추출단위<br>- 1차(psu) : 조사구 → 확률비례계통추출<br>- 2차(ssu) : 조사구 내 가구(조사구당 10가구) → 계통추출<br>- 최종 조사 단위 : 표본가구 내 적격가구원 전수조사 |
| <b>추정</b>                  | ○ 표본 가중값 적용 후 복합 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 추정법 적용  |

## 국가인권실태조사 개요(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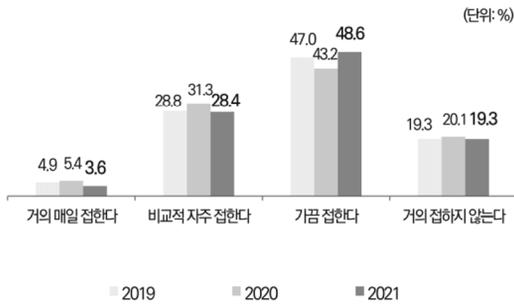
- 조사방법: 조사원 대면조사(TAPI), 인터넷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사전조사
  - 2021년 6월 1~8일, 전국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북권/경남권) 만19세 이상 남녀 100명 조사
- 인지면접조사
  - 2021년 6월 1일 2차례 30분씩, 20대-70대 연령대별 남녀 1명씩 총 12명 1그룹당 80분 진행
  - 취지 설명 후 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한 후에 문항별로 생각이나 느낌을 듣는 것으로 진행함
- 본조사
  - 조사원 교육 : 7월 7~9일, 서울/대전/대구에서 집체교육 진행
  - 조사원 교육 시 나온 수정사항 등 반영하여 비수도권은 7월 16일부터 실사 시작
  - 코로나 재확산으로 수도권 조사는 9월 13일부터 시작

## 조사결과 1: 인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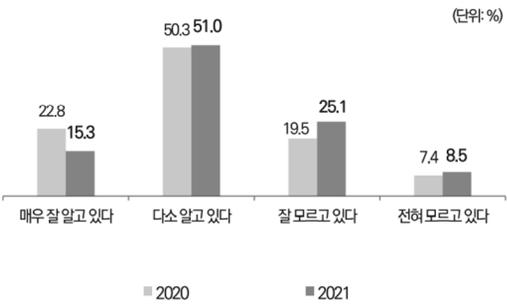
인권 용어 '접한다(거의 매일+비교적 자주+가끔)' 80.7%  
2020년 79.9%대비 0.8%p 증가

기본적 인권 보호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다소 알고 있다)' 66.4%  
2020년 73.1% 대비 6.7%p 감소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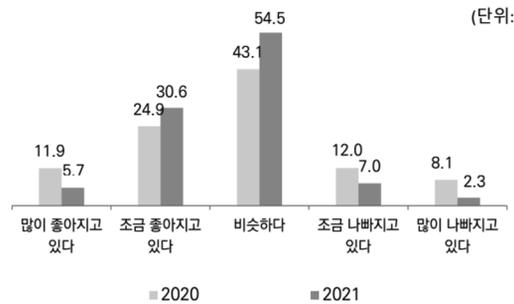


## 조사결과 1: 인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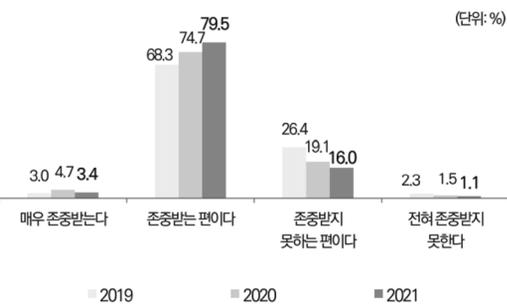
인권 상황  
'좋아지고 있다(많이 좋아지고 있다+조금 좋아지고 있다)' 36.3%  
2020년 36.8%대비 0.5%p 감소  
'비슷하다' 응답 11.4%p 증가

나의 인권  
'존중받는다(매우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이다)' 82.9%  
2020년 79.4%대비 3.5%p 증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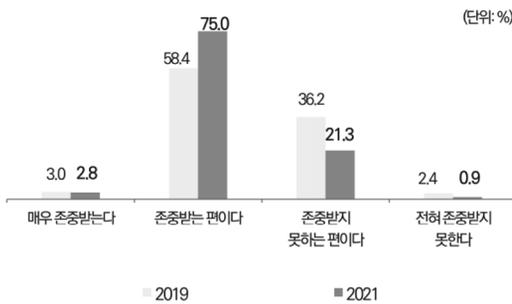


## 조사결과 1: 인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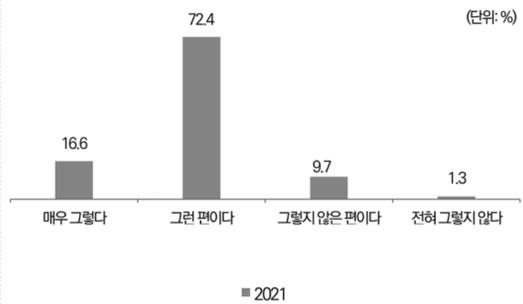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받는다(매우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이다)' 77.8%  
 2019년 61.4%대비 16.4%p 증가

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차별 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89.0%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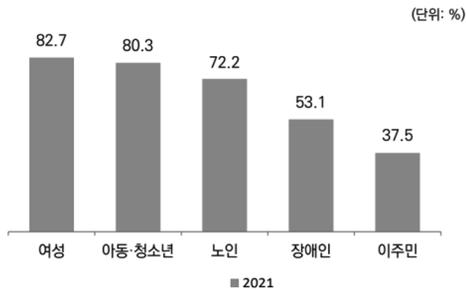


## 조사결과 1: 인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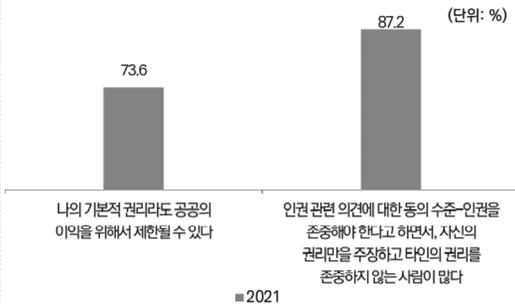
'여성(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82.7%  
 반면, '이주민(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37.5%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73.6%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87.2%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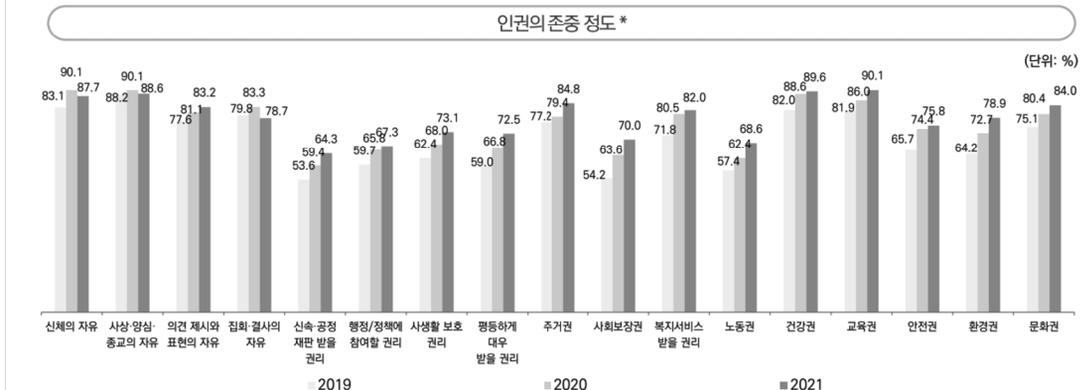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우리나라에서 교육권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90.1%

- 2020년 86.0% 대비 4.1%p 증가

우리나라에서 건강권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89.6%

- 2020년 88.6% 대비 1.0%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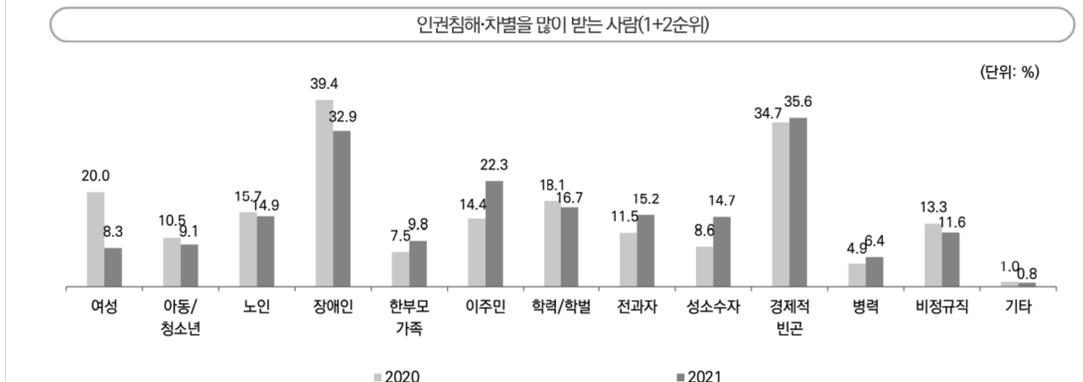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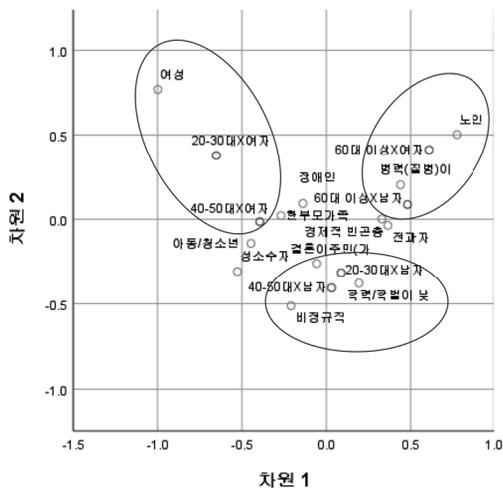
인권침해·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

2020년 대비 '이주민(7.9%p)', '성소수자(6.1%p)' 등이 증가한 반면

'여성(11.7%p)', '장애인(6.5%p)' 등은 감소함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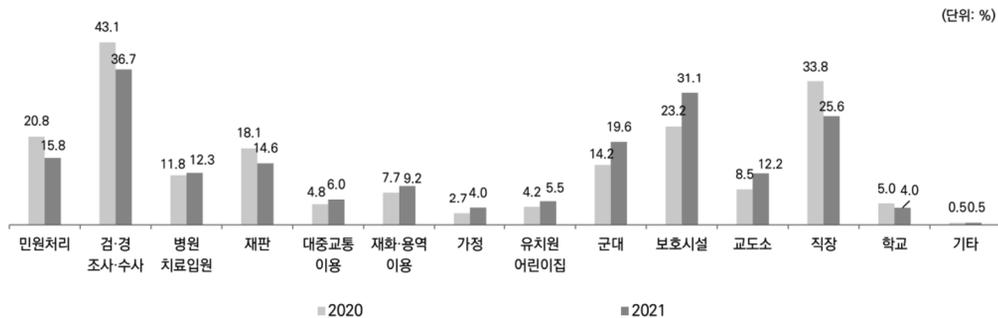
응답자 인구적 특성과 인권 취약집단 대응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별로 가까운 집단에 대해 취약집단으로 응답하는 경향 발견됨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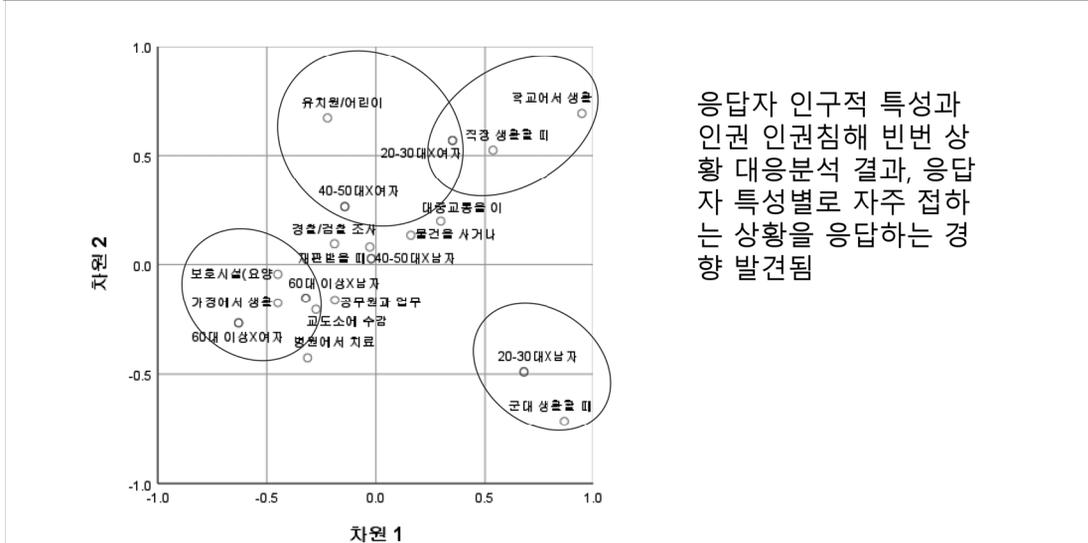
###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군대(5.4%p)’, ‘보호시설(7.9%p)’ 등에서 증가한 반면, ‘직장(8.2%p)’, ‘검경조사/수사(6.4%p)’, ‘민원처리(5.0%p)’ 등에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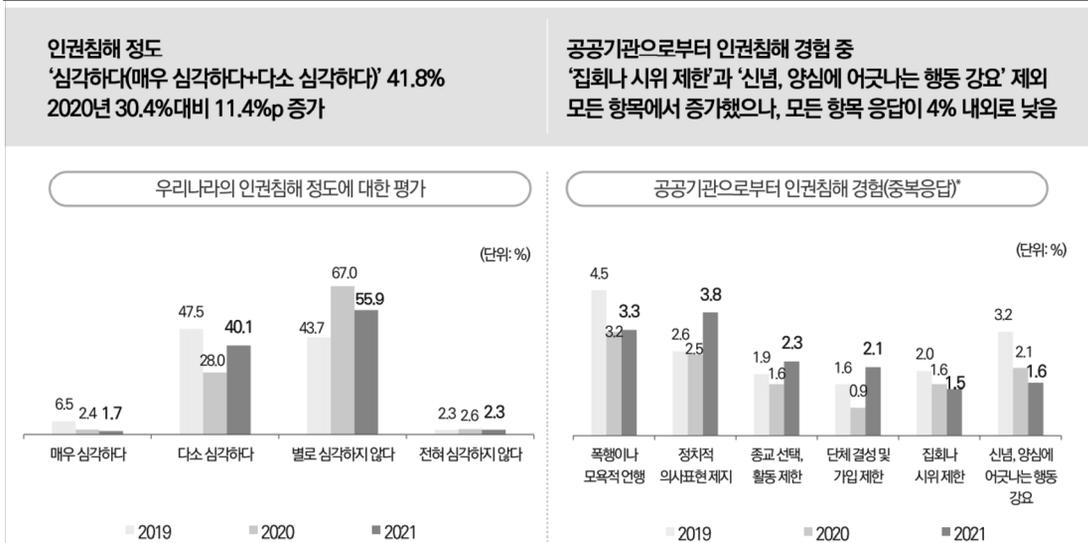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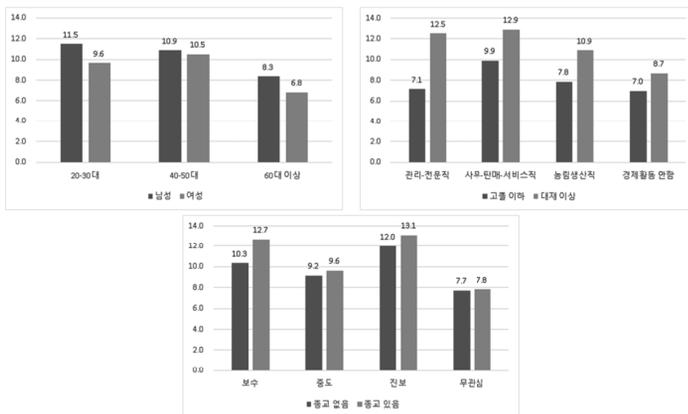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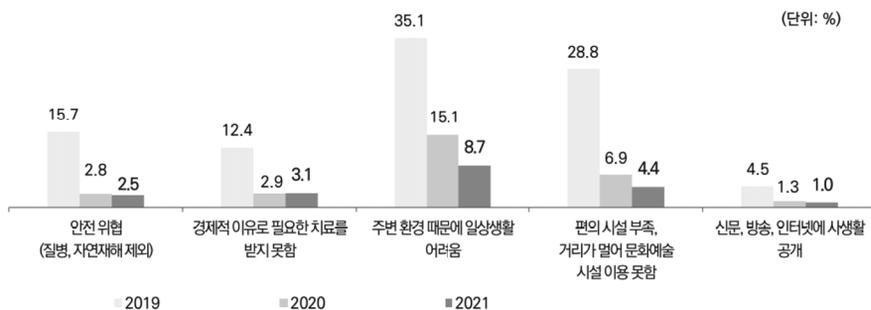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응답에서 인 구학적, 사회경제적, 의식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 발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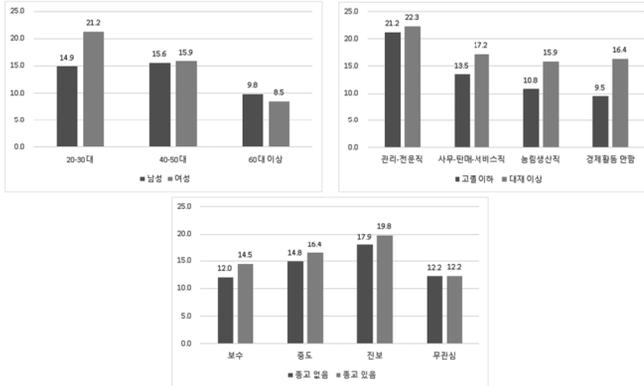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사회적·문화적 이유로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비슷함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움'이 6.4%p 감소하여 다른 항목대비 크게 감소함

인권침해 경험(중복응답)\*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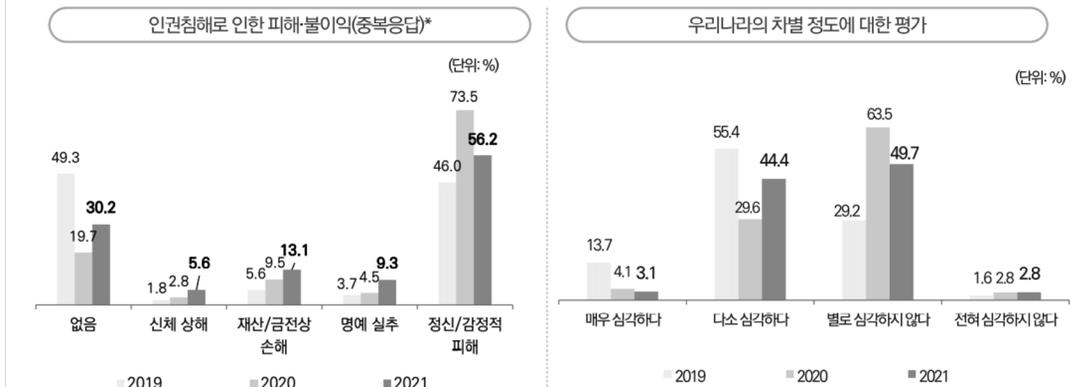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응답에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의식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 발견됨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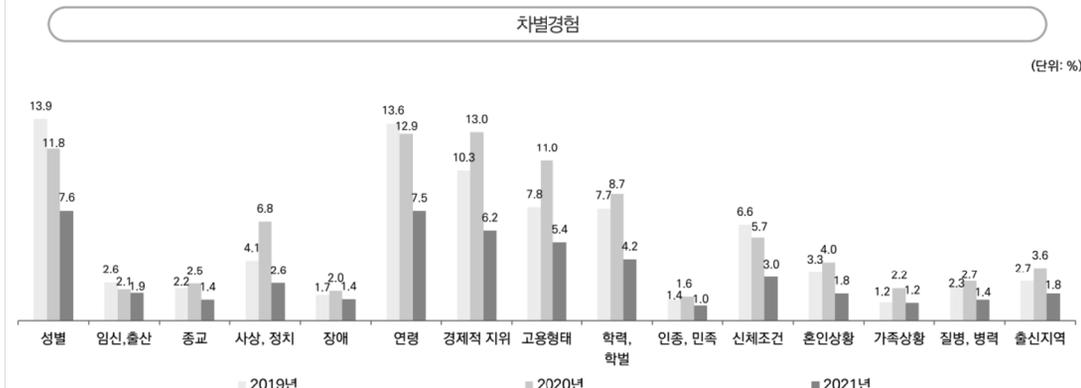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항목이 증가했으나, '정신/감정적 피해'는 56.2%로, 2020년 대비 17.3%p 감소함

차별 정도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다소 심각하다)' 47.4% 2020년 33.7%대비 13.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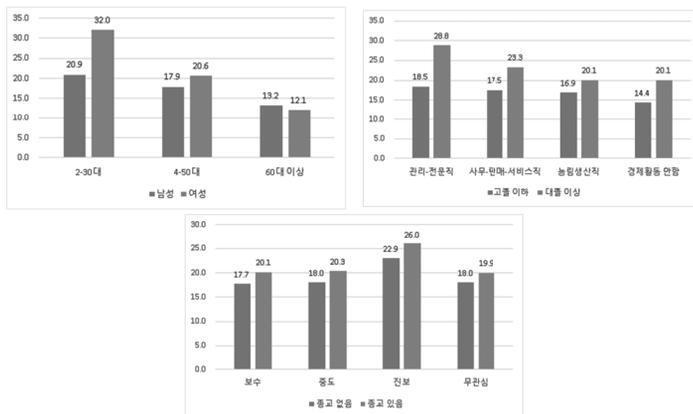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차별은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연령',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경험이 높았던 반면, 2021년은 '성별(7.6%)', '연령(7.5%)', '경제적 지위(6.2%)'가 차별경험으로 높게 응답됨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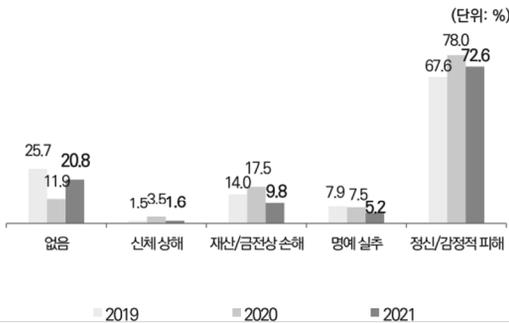
차별 경험 응답에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의식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 발견됨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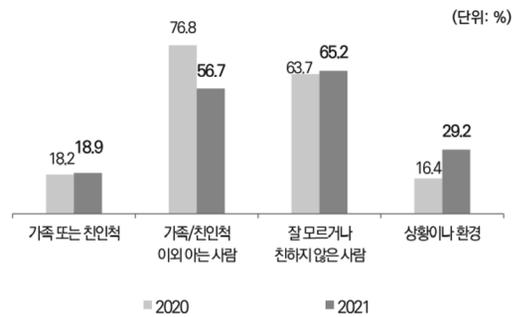
차별로 인한 '정신/감정적 피해' 72.6%  
2020년 78.0%대비 5.4%p 감소

2020년에는 인권 침해나 차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에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응답이 65.2%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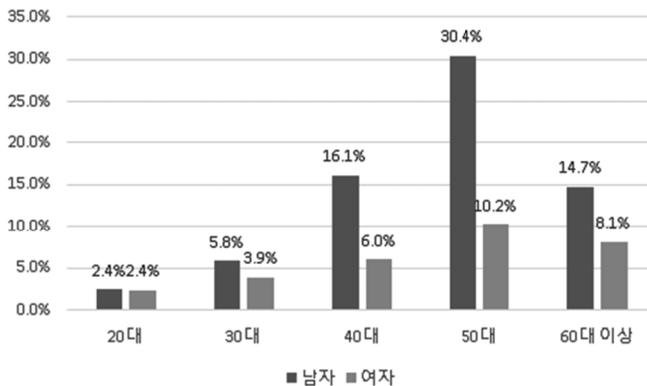
차별로 인한 피해·불이익(중복응답)\*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1+2순위) \*\*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 및 차별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5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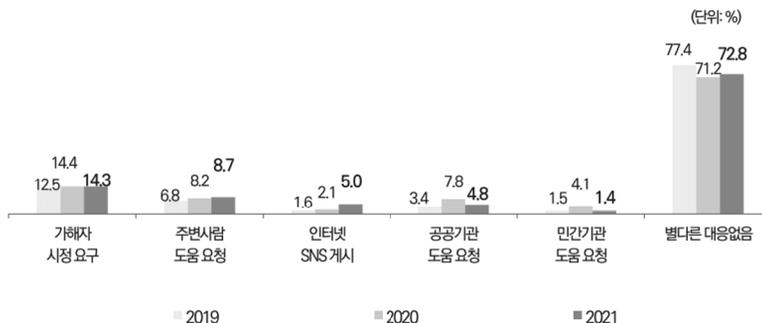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 방법

1위 '별다른 대응없음' 72.8%, 2020년 대비 0.6%p 증가

2위 '가해자 시정 요구' 14.3%, 2020년 대비 0.1%p 감소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방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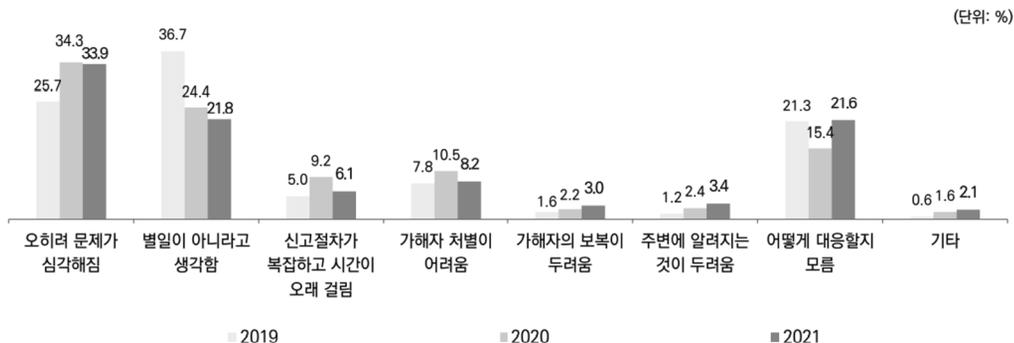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반적 경향성은 비슷하나, '어떻게 대응할지 모름'이라는 응답이 2020년 대비 6.2%p 증가함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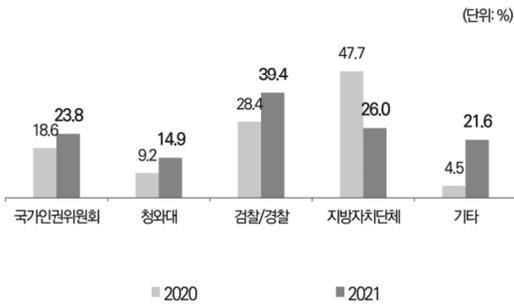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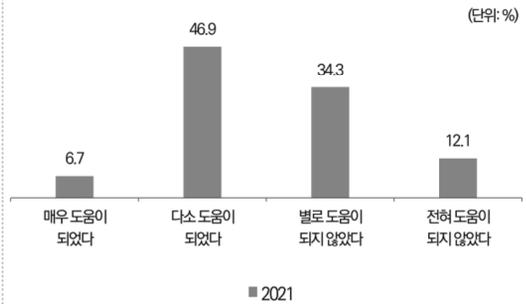
도움 요청한 공공기관  
'검찰/경찰',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21.7%p 감소함

도움 요청한 공공기관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다소 도움이 되었다)  
53.6%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중복응답)\*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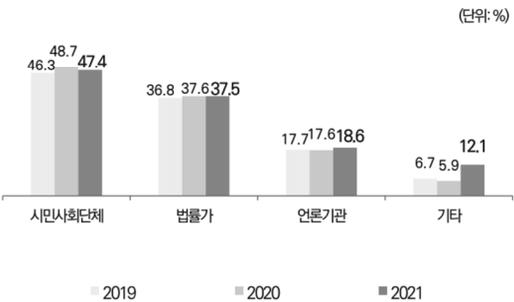


## 조사결과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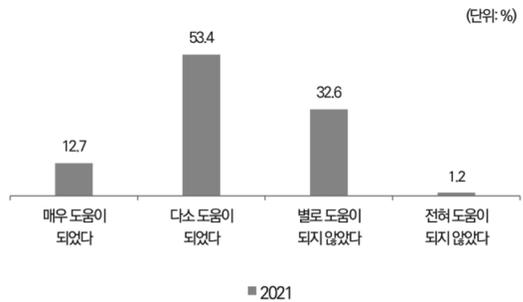
도움 요청한 민간기관  
'시민사회단체' 47.4%, '법률가' 37.5% 등  
전반적 경향성 이전 조사와 비슷함

도움 요청한 민간기관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다소 도움이 되었다)  
66.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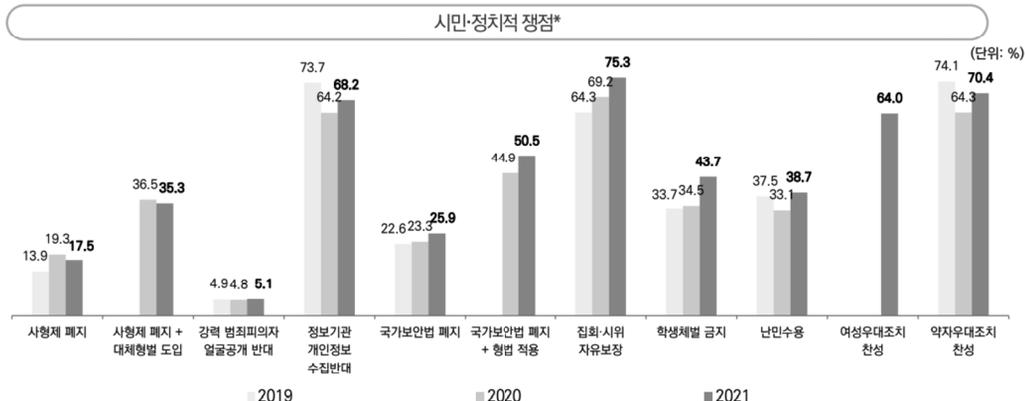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의 도움 정도



## 조사결과 3: 인권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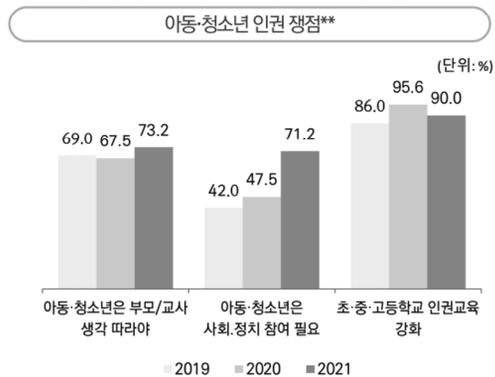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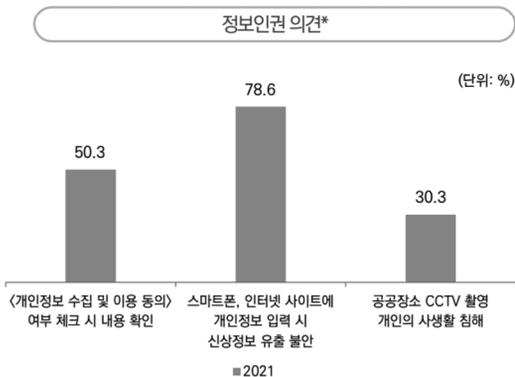
사형제 폐지 이슈를 제외한 모든 인권 관련 쟁점에서 인권친화적인 의견이 증가함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한 쟁점은 '학생체벌 금지'로 9.2%p 증가함



## 조사결과 3: 인권 관련 쟁점

'개인정보 입력 시 신상정보 유출 불안' 78.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시 내용 확인' 50.3%  
'공공장소 CCTV 촬영 개인 사생활 침해' 30.3%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응답이  
지난 조사 대비 높아짐  
'아동·청소년은 사회·정치 참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23.7%p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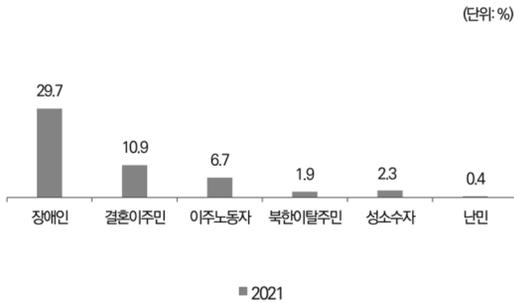


## 조사결과 3: 인권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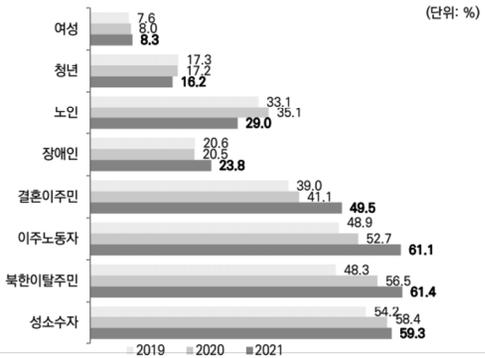
가족, 이웃, 친구 중 '장애인' 있다 29.7%로 가장 높음  
'결혼이주민' 10.9%, '이주노동자' 6.7% 순임

정치적 대표자가 됐을 때 '불편하다'는 응답은  
'결혼이주민(8.4%p)', '이주노동자(8.4%p)'에서 크게 증가함  
반면, '노인'은 6.1%p 감소함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



정치적 대표자로서 사회적 집단에 대한 거리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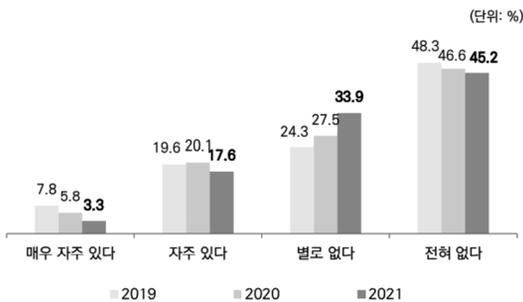


## 조사결과 3: 인권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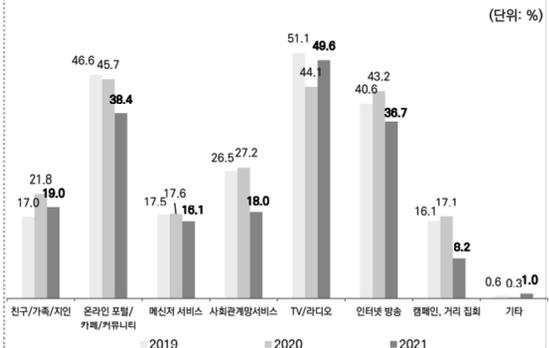
혐오표현 경험  
'있다(매우 자주 있다+자주 있다+별로 없다)' 54.8%  
2020년 53.4%대비 1.4%p 증가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  
2020년에는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가 가장 높았으나,  
2021년 결과 'TV/라디오'가 49.6%로 가장 높음

혐오표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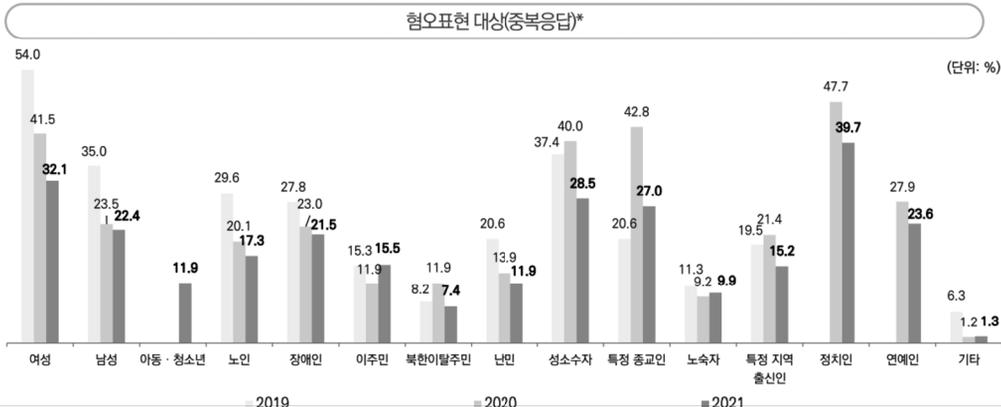
혐오표현 접한 경로(중복응답)



## 조사결과 3: 인권 관련 쟁점

### 혐오표현의 대상

거의 모든 집단에 대한 응답이 감소한 반면, '이주민(3.6%p)' 증가함  
 '특정 종교인(15.8%p)', '성소수자(11.5%p)'에 대해 혐오가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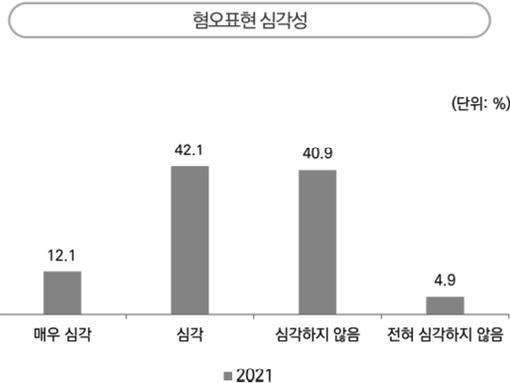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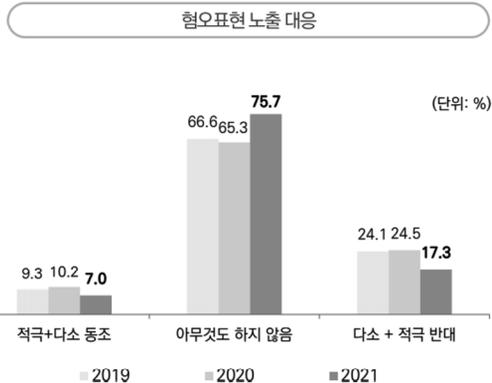


## 조사결과 3: 인권 관련 쟁점

### 혐오표현 노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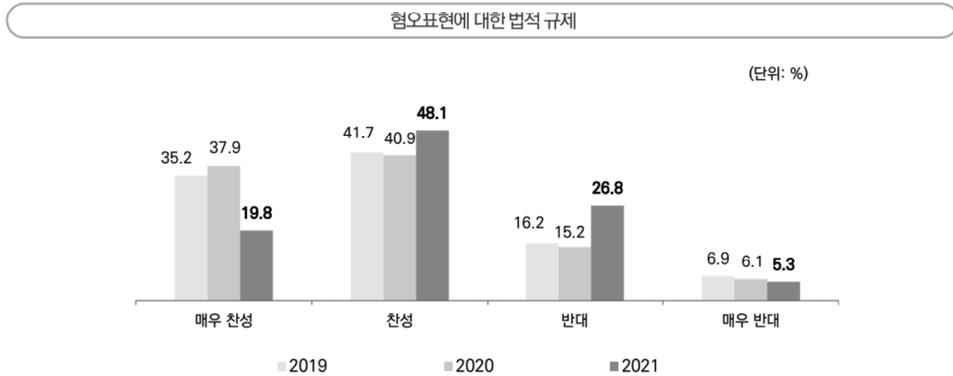
'아무것도 하지 않음' 75.7%, 2020년 대비 10.4%p 증가

혐오표현 '심각하다'(매우 심각+심각) 54.2%



## 조사결과 3: 인권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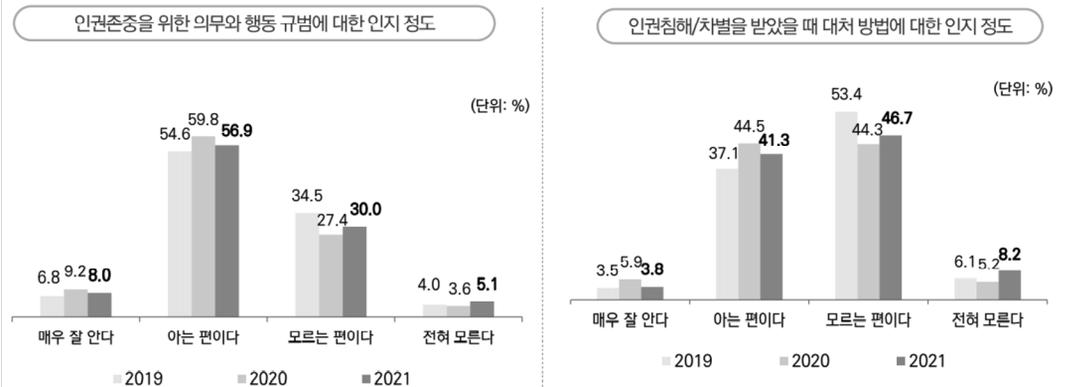
혐오표현 법적 규제 '찬성(매우 찬성+찬성)' 67.9%  
2020년 78.8%대비 10.9%p 감소



## 조사결과 4: 인권 교육 및 개선

인권 존중의 의무와 규범에 대한 인지  
'안다(매우 잘 안다+아는 편이다)' 64.9%  
2020년 69.0%대비 4.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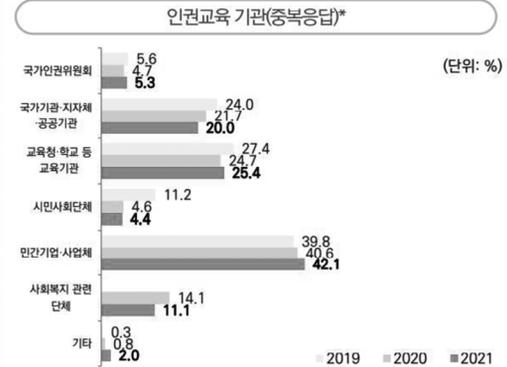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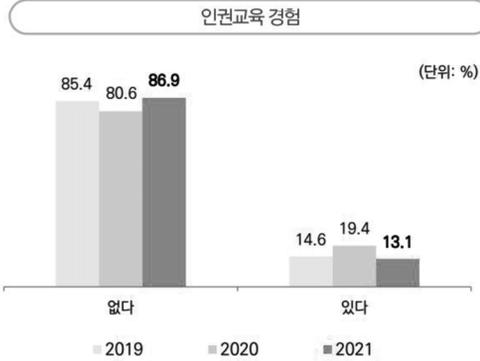
인권침해와 차별 시 대처방법에 대한 인지  
'안다(매우 잘 안다+아는 편이다)' 45.0%  
2020년 50.4%대비 5.4%p 감소



## 조사결과 4: 인권 교육 및 개선

**인권교육 경험 '있다' 13.1%**  
2020년 19.4%대비 6.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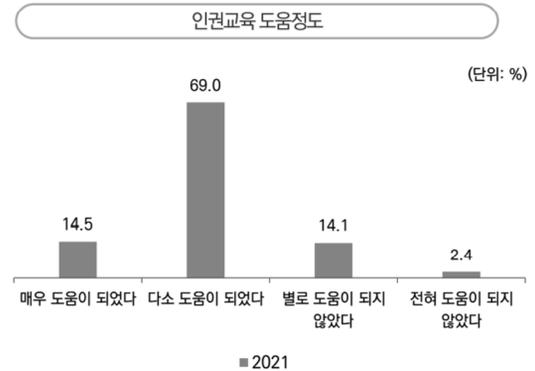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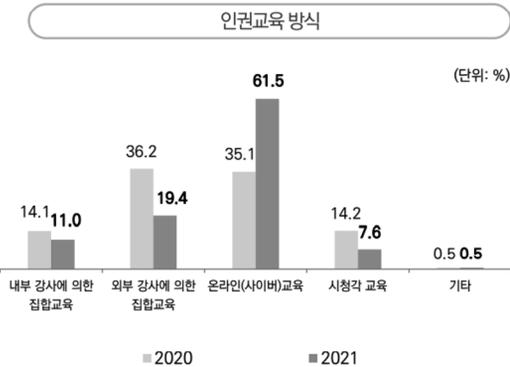
**인권교육 받은 기관**  
1위 '민간기업·사업체' 42.1%, 2020년 대비 1.5%p 증가  
2위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25.4%, 2020년 대비 0.7%p 증가



## 조사결과 4: 인권 교육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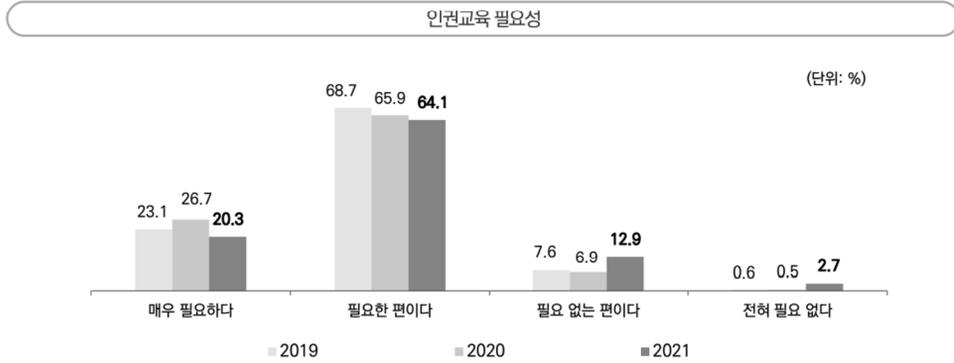
**인권교육 방식**  
1위 '온라인 교육' 61.5%, 2020년 대비 26.4%p 증가  
2위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19.4%, 2020년 대비 16.8%p 감소

**인권교육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다소 도움이 되었다)'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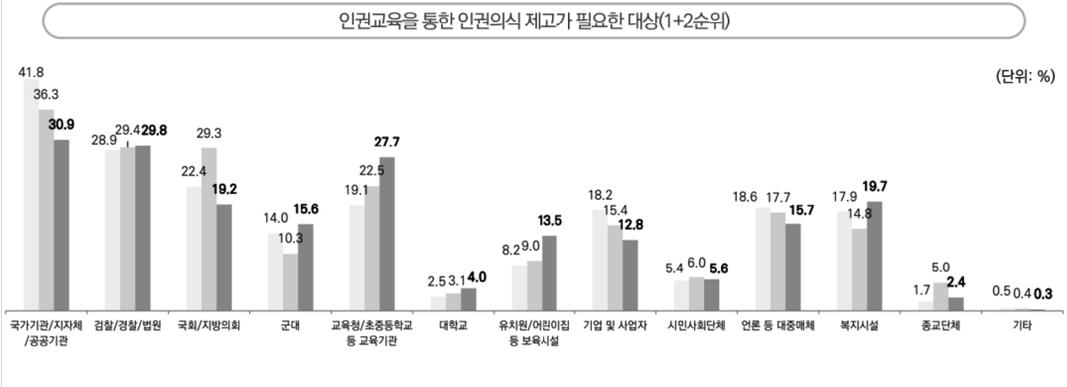
## 조사결과 4: 인권 교육 및 개선

인권교육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 84.4%  
2020년 92.6%대비 8.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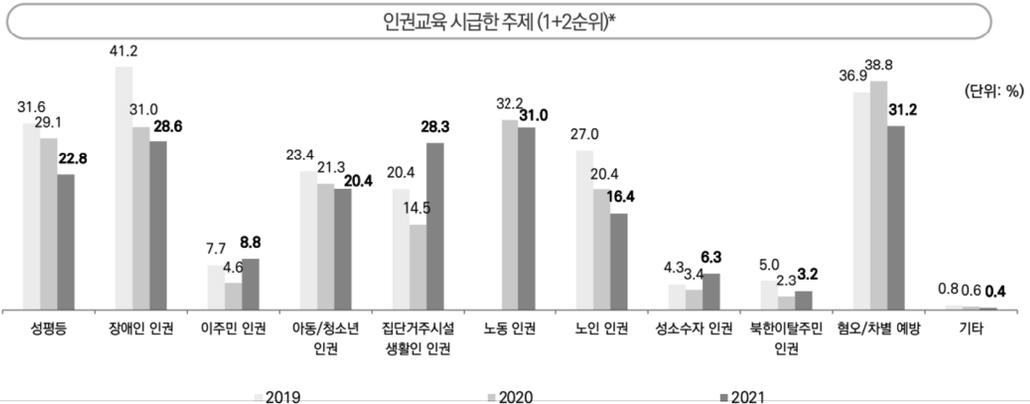
## 조사결과 4: 인권 교육 및 개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  
'군대(5.3%p)',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5.2%p)', '복지시설(4.9%p)' 등에서 증가한 반면,  
'국회/지방의회(10.1%p)',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5.4%p)' 등에서 감소함



## 조사결과 4: 인권 교육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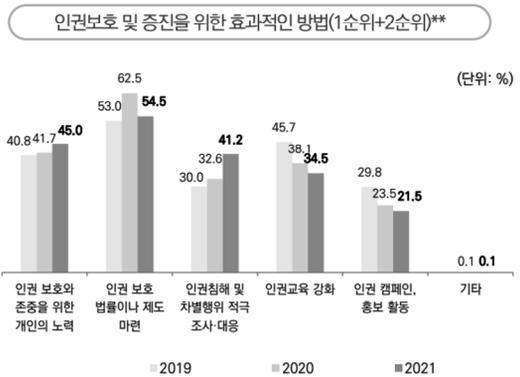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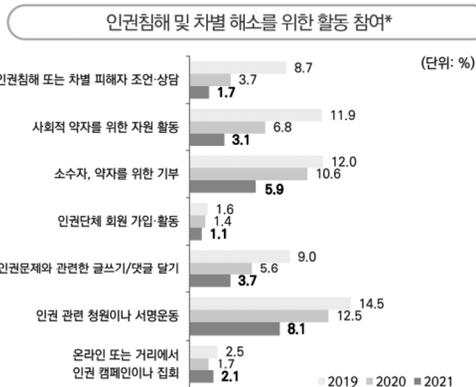
인권 교육 시급한 주제에 대해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이라는 응답이 13.8%p 증가함  
 반면, '성평등(6.3%p)', '혐오/차별 예방(7.6%p)' 등에서 감소함



## 조사결과 4: 인권 교육 및 개선

모든 항목에서 활동에 참여한 경험 '있다'는 응답 감소

전반적인 경향성이 비슷한 가운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 대응' 8.6%p 증가,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8.0%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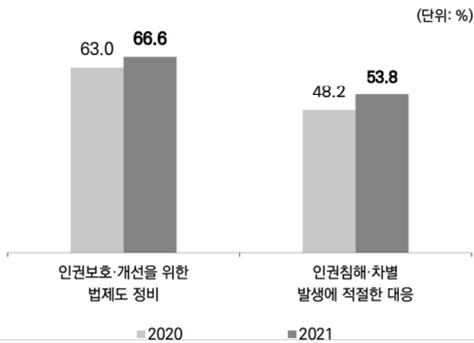


## 조사결과 4: 인권 교육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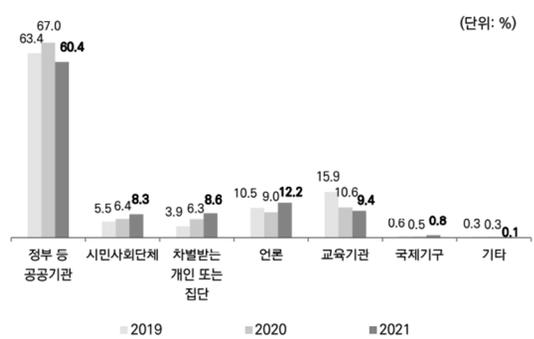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적절한 대응' 모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증가함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1위 '정부 등 공공기관' 60.4%, 2020년 대비 6.6%p 감소  
2위 '언론' 12.2%, 2020년 대비 3.2%p 증가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 증가

코로나 19 상황의 특수성 반영 가능성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에서 2-30대 여성의 높은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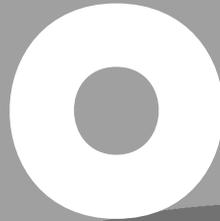
인권 쟁점에서 친인권적 의견 증가하지만 인권보다 안전 우선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증가

발제2-1

# 취약집단(아동/노인/장애인) 인권상황 비교

정병은(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취약집단(아동/노인/장애인) 인권상황 비교

정병은(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21.12.21

###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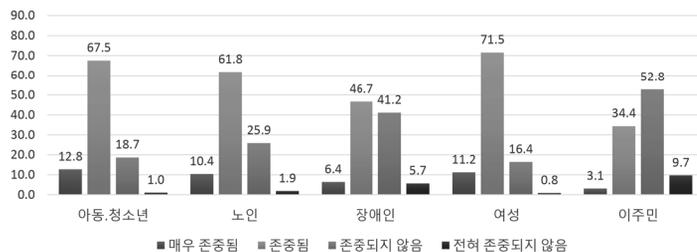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취약집단 실태조사와의 비교 목적

- [국가인권실태조사]의 표본설계상 취약집단의 사례수가 적거나 아예 조사대상이 안되어 취약집단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취약집단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중에서 [국가인권실태조사]와 유사한 설문 문항을 골라 비교하였음. 향후 취약집단의 실태조사 문항에 인권 관련 문항을 포함시키면 인권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임
  - 아동: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매년)
  - 노인: 노인실태조사(3년주기, 2014, 2017, 2020)
  - 장애인: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 2011, 2014, 2017, 2020), 단, 2020년 최종보고서는 미공개이므로 보도자료 내용으로 가름함
- 아동.청소년인권조사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 조사인 반면 노인과 장애인 실태조사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조사했기 때문에 비교가능한 문항이 적음
- 문항 워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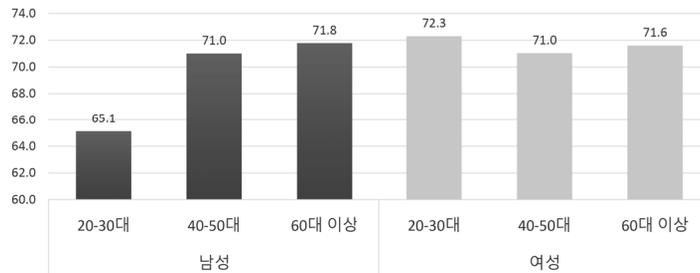
## 1.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나타난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취약집단의 인권 존중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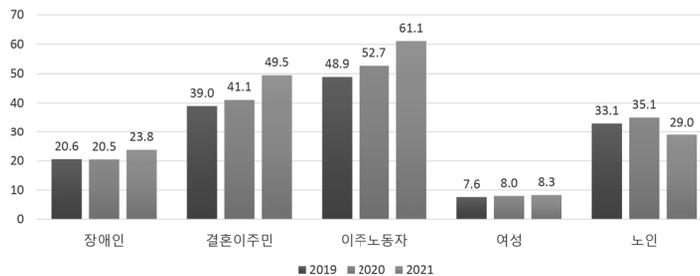
-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이주민 62.5% > 장애인 46.9% > 노인 27.8% > 아동.청소년 19.7% > 여성 17.3%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2030여성(55.7%), 대재이상(49.3%)에서 특히 높고, 이주민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2030여자(65.6%), 4050여자(65.4%), 대재이상의 관리전문직(65.0%), 대재이상의 사무판매직(64.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연령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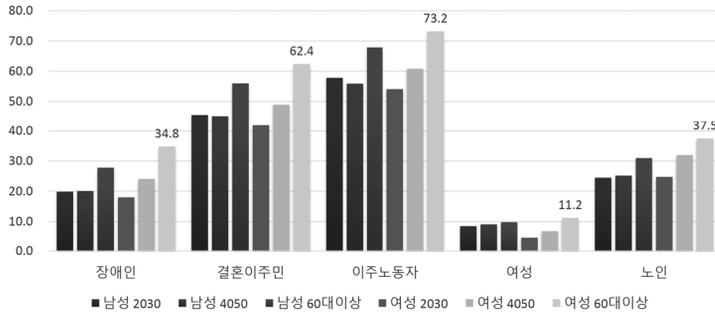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 의견은 70.4%로 나타남
- 문항이 달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은 2019년 74.1%, 2020년 64.3%로 조사됨
- 2030 남성층은 찬성율이 65.1%인데, 이와 달리 다른 인구집단은 71% 이상의 찬성을 보임

### 사회적 거리감(지역구의 정치인, 지자체단체장이 되는 것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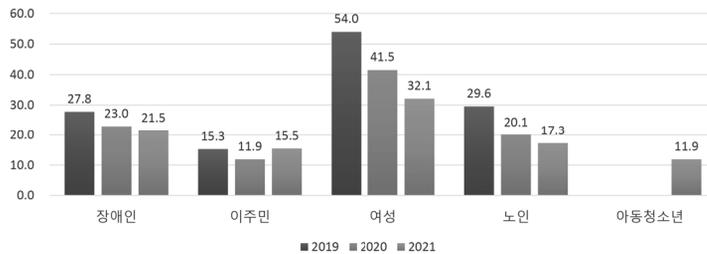
- 노인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불편감은 29.0%로 작년 35.1%보다 감소했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불편감은 거의 변화가 없음.
- 반면 이주민과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불편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에 대한 불편감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의 폭이 큰 편이고, 장애인에 대한 불편감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노인에 대한 불편감은 약 30%, 장애인의 불편감은 약 20%를 차지함

### 성별·연령별 사회적 거리감(지역구의 정치적 대표자, 지자체단체장)



- 남성은 2030대와 4050대의 거리감(불편감)이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60대이상 고연령층보다 낮은 편임
- 여성은 2030대 < 4050대 < 60대이상의 순으로 거리감(불편감)이 높음. 특히 여성 2030대는 다른 인구집단보다 일관되게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다는 특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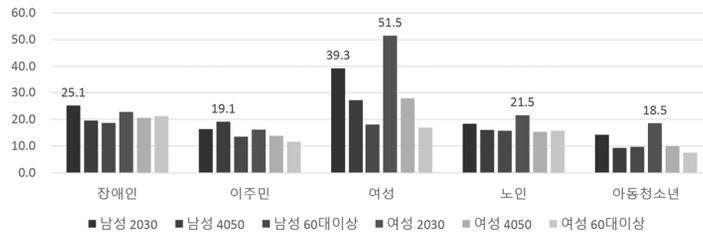
###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중복응답)



- 가장 많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집단은 여성이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순으로 나타남
- 시기별로 보면 혐오표현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2019년 54.0%에서 2020년 41.5%, 2021년 32.1%로 크게 줄었음(이외의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혐오표현은 감소하였음)
- 취약집단 중 이주민 혐오표현만 11.9%에서 15.5%로 증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은 11.9%로 가장 낮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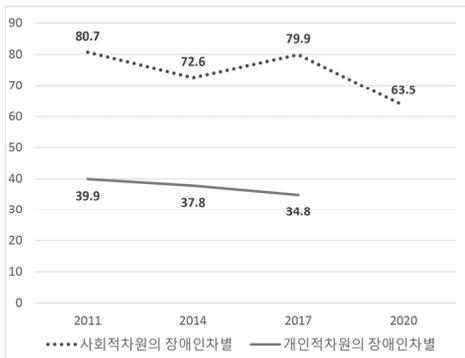
- 혐오표현의 대상에 따라 응답비율이 다소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저연령층, 여성, 대재이상 고학력층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임



| 장애인(21.5%)   | 이주민(15.5%)   | 여성(32.1%)                                      | 노인(17.3%)                                      | 아동(11.9%)   |
|--|--|--|--|---|
| 대재이상 관리전문<br>직(23.2%)<br>대재이상 사무판매<br>서비스직(23.2%)<br>대재이상 농림생산<br>직(23.3%) | 대재이상 관리전문<br>직(18.3%)<br>대재이상 사무판매<br>서비스직(17.5%)<br>대재이상 농림생산<br>직(17.4%) | 대재이상 관리전문<br>직(40.9%)<br>대재이상 비경활인<br>구(42.0%) | 대재이상 관리전문<br>직(19.9%)<br>대재이상 농림생산<br>직(20.7%) | 대재이상 사무판매<br>서비스직(14.7%)<br>대재이상 비경활인<br>구(15.1%) |

## 2. 장애인의 차별 인식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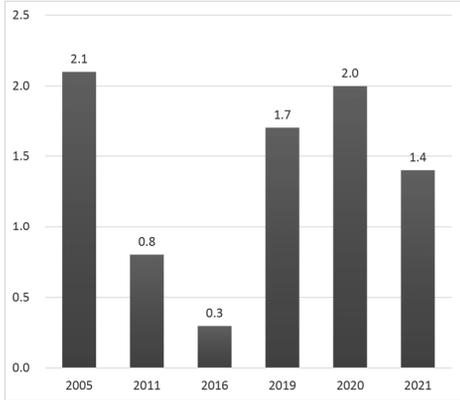
### 장애인의 장애차별 인식



-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사회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약 60%, 개인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약 30%가 응답함
- 사회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은 2011년보다 10% 이상 감소하였고, 개인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은 소폭 감소하고 있음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1, 2014, 2017, 2020)  
2020년 조사자료는 미공개상태이며 일부 항목만 보도자료로 공개되었음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자료: 국민인권실태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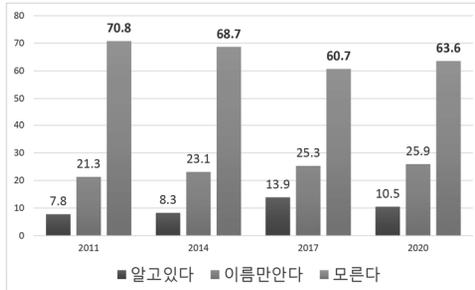
-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장애인차별 경험율은 1.7%(2019), 2.1%(2020), 1.4%(2021)로 평균적으로 2%대를 나타낸다.
-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6%로 추정되므로, 장애인의 1/3 정도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장애 차별의 유형(중복응답)은 사회적 차별(37.1%) > 재화·용역 차별(30.9%) > 고용 관련 차별(30.3%) > 신체·언어적 폭력(23.6%) > 의 순이며, 여러가지 유형으로 장애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중복응답)

| 구분      | 구분      | 2011 | 2014 | 2017 |
|---------|---------|------|------|------|
| 입학·전학   | 유치원     | 30.5 | 27.1 | 37.1 |
|         | 초등학교    | 34.2 | 38.8 | 40.3 |
|         | 중학교     | 29.8 | 31.6 | 33.0 |
|         | 고등학교    | 29.3 | 25.1 | 26.0 |
|         | 대학교     | 16.3 | 12.5 | 11.6 |
| 학교생활    | 교사로부터   | 21.4 | 18.7 | 19.8 |
|         | 또래로부터   | 49.2 | 47.1 | 50.7 |
|         | 학부모로부터  | 15.1 | 13.7 | 18.4 |
| 결혼      |         | 26.5 | 16.4 | 17.9 |
| 취업      |         | 34.0 | 35.8 | 30.9 |
| 직장생활    | 소득      | 20.7 | 23.9 | 19.4 |
|         | 동료와의 관계 | 16.9 | 20.0 | 17.6 |
|         | 승진      | 14.2 | 13.3 | 12.4 |
| 운전면허 취득 |         | 14.3 | 10.2 | 8.9  |
| 보험계약    |         | 53.7 | 45.4 | 36.4 |
| 의료기관 이용 |         | 3.7  | 4.6  | 4.0  |
| 정보통신 이용 |         | 2.0  | 1.9  | 1.9  |
| 지역사회 생활 |         | 7.8  | 7.3  | 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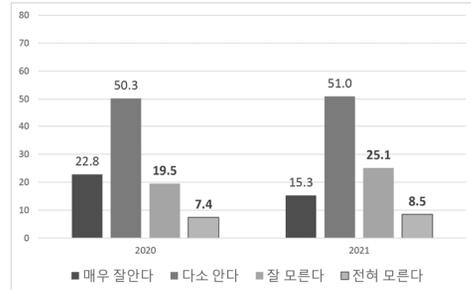
-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학교에서의 차별이 감소하지 않고 모든 학교급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 대학교생활에서는 차별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시기에는 오히려 차별이 증가하고 있음
- 교사로부터의 차별이 20%로 높고, 또래로부터의 차별이 50%에 달함
- 성인이 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데, 의료기관, 정보통신, 지역사회 생활에서 차별경험이 낮은 이유는 해당 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못하거나), 지역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1, 2014, 2017, 2020)

### 일반국민: 헌법의 기본권 조항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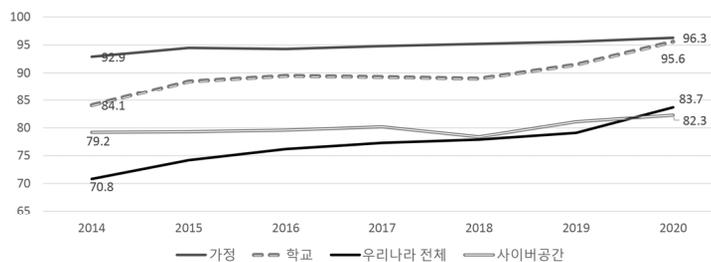


자료: 국가인권실태조사(2020, 2021)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는 장애인은 60% 이상인 반면 '헌법의 기본권 보장'을 모른다는 일반국민은 30% 이하를 차지함
- 대부분의 장애인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법률)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이런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 3.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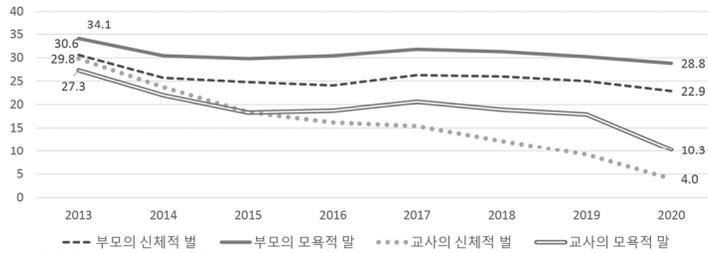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도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때 존중된다는 평가가 2014년 70.8%에서 2020년 83.7%로 증가하였음
- 가정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은 소폭 향상되고, 학교에서의 인권은 2014년 84.1%에서 2020년 95.6%로 증가하여, 아동청소년인권의 개선은 주로 학교에서의 상황이 개선된데 연유한 것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부모와 교사의 신체적 벌과 모욕적 말로 살펴보면, 교사의 신체적 벌은 2013년 29.8%에서 2020년 4.0%로 가장 빠르게 급감하였으며, 교사의 모욕적 말도 2013년 27.3%에서 2020년 10.3%로 17.0%p 감소하였음
- 반면 부모의 신체적 벌은 30.6%에서 22.9%로 7.7%p 감소하였고 모욕적 말은 34.1%에서 28.8%로 5.3%p 감소하여 교사보다 감소폭이 작음
-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 의견이 2019년 33.7%에서 2021년 43.7%로 증가하여 학생 체벌이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가정내에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차별 경험

| 차별 이유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남자/여자    | 19.5 | 21.4 | 24.9 | 28.8 | 28.2 | 23.3 |
| 공부를 못한다  | 24.0 | 25.8 | 28.2 | 28.6 | 27.6 | 22.6 |
| 나이가 어리다  | 21.0 | 21.3 | 20.4 | 21.3 | 28.1 | 24.5 |
| 외모·신체조건  | 19.6 | 21.6 | 23.0 | 24.2 | 28.9 | 20.9 |
| 어려운 가정형편 | 2.8  | 2.4  | 2.8  | 3.2  | -    |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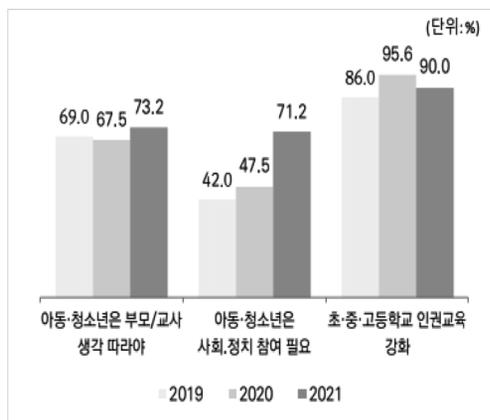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 차별 이유   | 2019 | 2020 | 2021 |
|---------|------|------|------|
| 성별      | 13.9 | 11.8 | 7.6  |
| 학력/학벌   | 7.7  | 8.7  | 4.2  |
| 연령      | 13.6 | 12.9 | 7.5  |
| 외모·신체조건 | 6.6  | 5.7  | 3.0  |
| 경제적 지위  | 10.3 | 13.0 | 6.2  |

자료: 국가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 아동청소년은 차별 경험이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2020년에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차별이 감소했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등으로 아예 차별이 발생할 상황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은 빈곤에 따른 차별 비율이 낮은 반면 성인은 빈곤(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이 매년 TOP3에 들 정도로 순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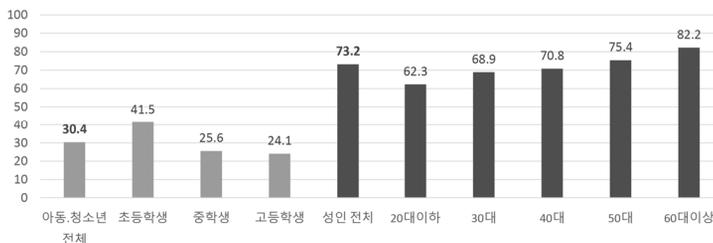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성인의 인식



자료: 국가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쟁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을 부정하는 의견은 2020년보다 5.7%p 증가하였음
- 반면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찬성하는 의견은 50% 미만이었던 예년과 달리 2021년에는 70% 이상으로 나타나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의견은 90%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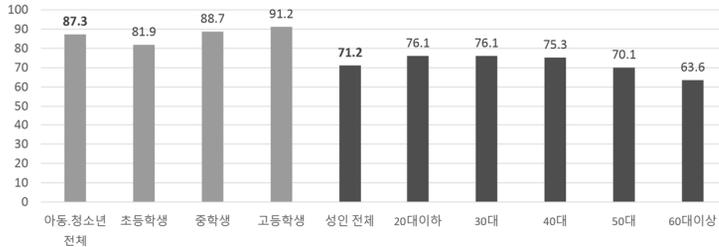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에 찬성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

-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성인은 73.2%가 찬성하는 반면 아동청소년은 30.4%가 찬성함. 특히 중고등학생의 찬성율은 약 25%로 더 낮음
- 성인은 연령이 많아질 수록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을 부정하는 의견이 더 강하며, 고등학교를 거치지 얼마되지 않은 20대도 62.3%가 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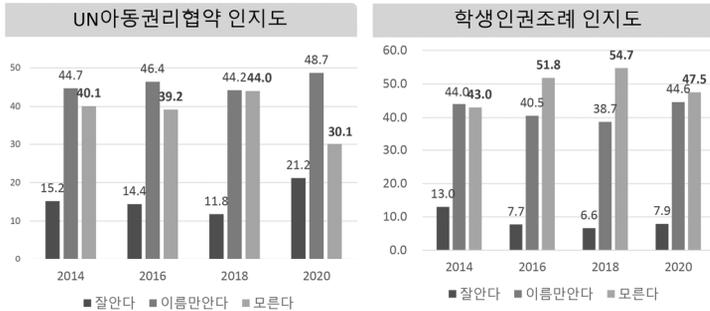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할 필요하다”에 찬성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

-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예년에는 50% 이하의 찬성율을 보여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인식의 간극이 크게 벌어졌으나, 2021년에는 성인의 71.2%가 찬성하고 아동청소년은 87.3%가 찬성하여 인식의 차이가 매우 좁혀졌음
-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의 찬성율이 낮고 고등학생의 찬성율이 90% 이상으로 높으며, 성인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찬성율이 낮아짐

### 아동청소년의 인권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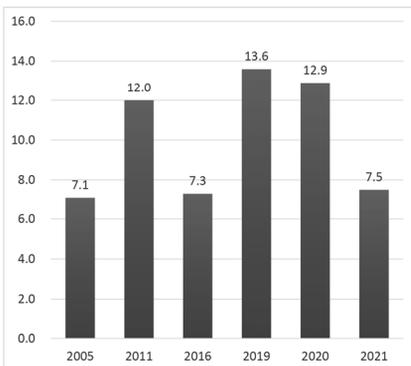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UN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조례를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30.1%, 47.5%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모른다는 응답이 감소하였지만, 학교에서 인권 관련 수업이 시행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규정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모르고 있음

## 4. 노인의 차별 경험

### 연령에 의한 차별 경험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2021)

-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은 최소 2019년 13.6%에서 2021년 7.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의 차별 경험 감소가 실제로 차별 발생 상황이 아예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연령 차별의 유형은 고용 관련 차별이 52.8%로 매우 높고, 재화·용역 이용 차별이 26.3%, 사회적 차별이 16.0%,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14.9%로 나타남

### 노인의 차별 경험

| 구분        | 2014 | 2017 | 2020 |
|-----------|------|------|------|
| 대중교통수단 이용 | 37.7 | 38.2 | 20.8 |
| 식당·커피숍 이용 | 9.6  | 5.3  | 16.1 |
| 판매시설 이용   | 17.7 | 10.8 | 14.7 |
| 공공기관 이용   | 11.0 | 7.4  | 8.7  |
| 의료시설 이용   | 14.4 | 10.1 | 12.7 |
| 일터        | -    | 21.4 | 10.6 |
| 가속내 의사결정  | -    | -    | 11.3 |

자료: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차별 경험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서의 차별은 크게 감소하였고, 일터에서의 차별도 2017년 21.4%에서 2020년 10.6%로 크게 줄었음. 식당·커피숍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2014년에 비해 2020년에는 노인의 차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식당·커피숍 이용에서의 차별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무인 자동화 주문, 복잡한 외국어 메뉴, 디지털 결제 등이 노인에게 삶의 장벽으로 느껴질 것임

# 요약

전반적으로 취약집단에 대해 2030남성 집단이 가장 포용성이 낮고 2030여성 집단이 가장 포용성이 높음. 또한 고학력 집단에서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더 높게 드러남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인 여성노인은 인권의식이 가장 낮고 다른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도 가장 멀게 느낌

취약집단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 줄 장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이 낮지 않으므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음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가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짐.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당사자와 성인의 인식 격차가 큰 편임

장애인이나 노인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차별이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발제2-2

# 취약집단(여성/이주민) 인권상황 비교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취약집단(여성/이주민) 인권상황 비교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 1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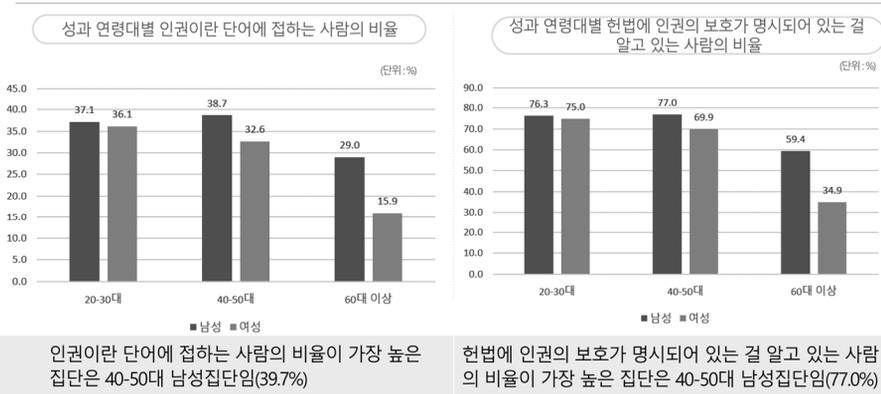
##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 여성, 이주민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인권의식의 측면에서 본 20-30대 여성집단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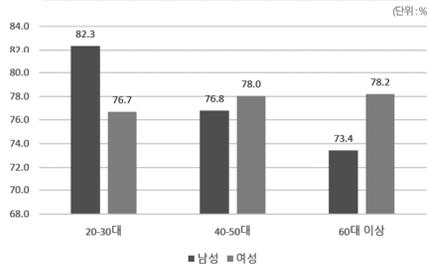
- 이번 조사결과 20-30대 여성은 우리나라의 인권개선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이 다른 성별 연령대별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음
  -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음
  - 우리나라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안전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도 가장 낮음
  -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가장 낮음
  - 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야하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공감
- ❖ 반면에 동년배(20-30대) 남성들의 생각은 긍정적
- 본인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은 20-30대 남성임(84.9%)
  - 20-30대 남성의 경우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90.4%) vs. 여성은 74.2%만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함.
  - 20-30대 '남성은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높음(90.3%)

## 인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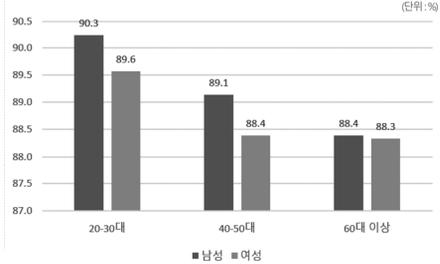
## 인권인식

성과 연령별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1년 전 보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집단은 40-50대 남성임(42.9%)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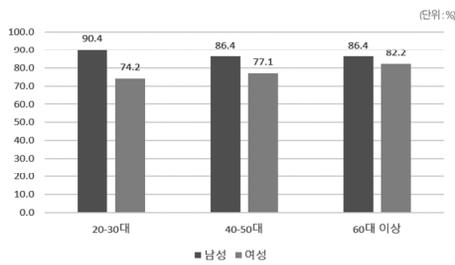
성과 연령대별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20-30대 '남성은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높음(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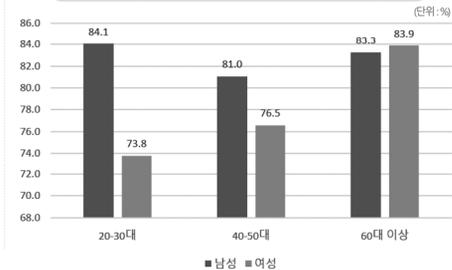
## 인권인식

성과 연령별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0-30대 남성의 경우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90.4%)  
-> 여성들 스스로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성과 연령별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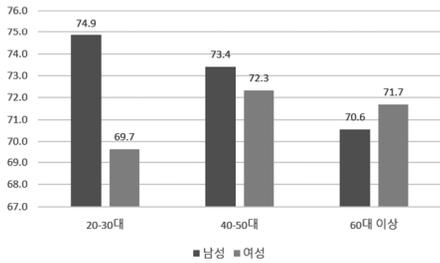


20-30대, 40-50대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음

## 인권인식

성과 연령별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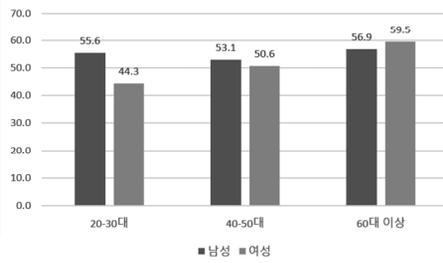
(단위:%)



20-30대 남성의 경우 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74.9%)

성과 연령별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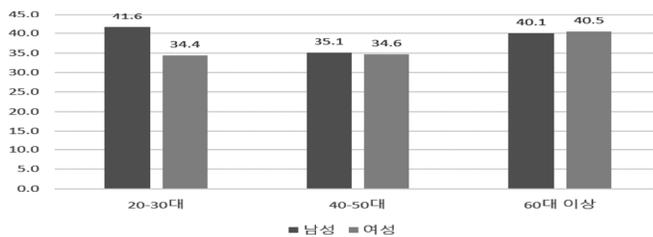


20-30대 여성의 경우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44.3%)

## 인권인식

성과 연령별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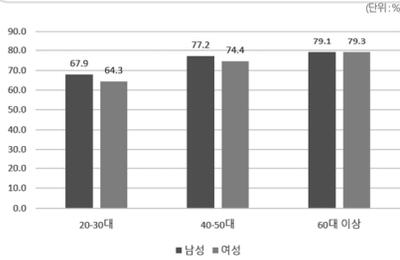
(단위:%)



20-30대 여성집단이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평가를 하고 있음(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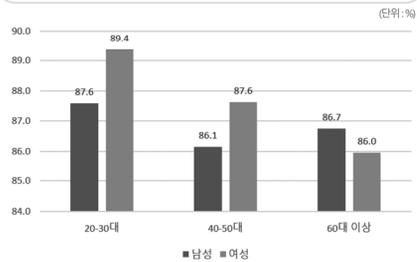
## 인권인식

성과 연령별 공공의이익을 위해 개인권 제한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권의 제한에 대해 반대

성과 연령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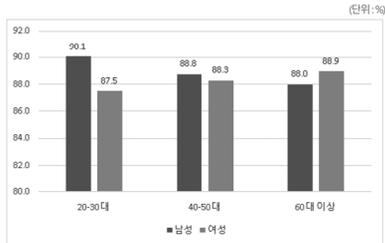
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공감

## 20-30대 여성의 인권차별에 대한 경험

- 이번 조사결과 인권차별에 대한 경험이 세대와 연령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인데, 가장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집단이 20-30대 여성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 차별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30대 여성집단(32.0%)로 가장 높으며, 차별의 사유수도 가장 많음.
-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20.7%)로 다른 연령대나 남성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종교, 학력/학벌, 고용형태(비정규직 등), 혼인상황, 신세조건, 가족상황, 출신지역 등 많은 항목별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경험이 높다고 응답함
- 반면 20-30대 남성집단은 40-50대 이상의 다른 집단에 비해서 차별경험을 한 경험율은 높은 편이나 동년배인 여성집단과 비교할 때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찬성하는 비중이 20-30대 여성에 비해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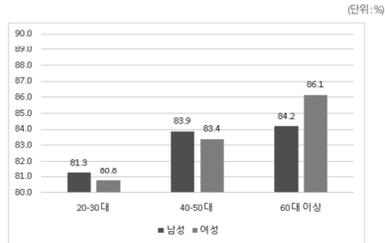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과 연령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존중받는다 고 보는 비율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20-30대와 40-50대는 남성이 보다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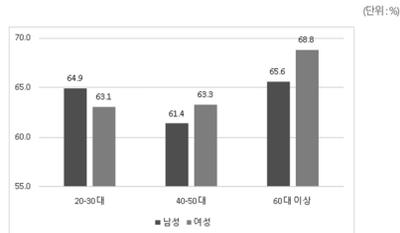
성과 연령별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존중받는다 고 보는 비율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30대가 낮는데, 그 중에서도 20-30대 여성이 가장 낮음(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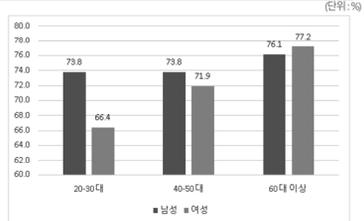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과 연령별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에 대한 긍정 비율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 (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는데 대해서는 40-50대 남성이 가장 부정적(61.4%) 그 다음은 20-30대 여성(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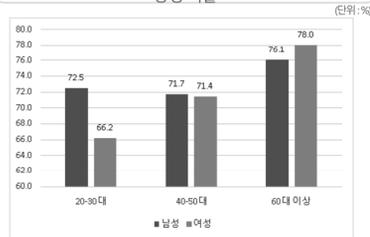
성과 연령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존중받는다 긍정 비율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고 보는데 대해서 20-30대 여성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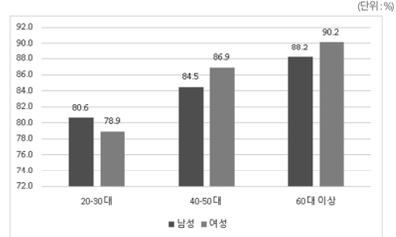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과 연령별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 긍정 비율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30대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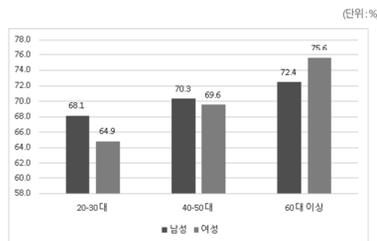
성과 연령별 주거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데 대한 긍정 비율



주거권이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30대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20-30대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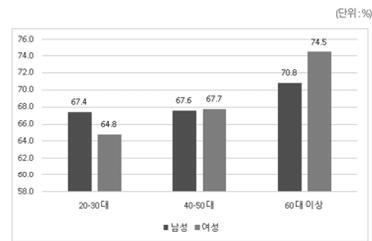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과 연령별 사회보장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데 대한 긍정 비율



사회보장권이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30대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20-30대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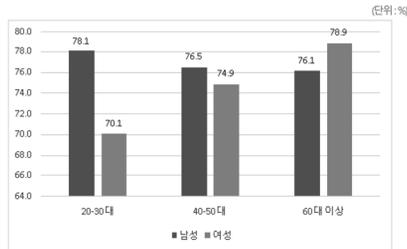
성과 연령별 노동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데 대한 긍정 비율



노동권이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30대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20-30대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64.8%)

##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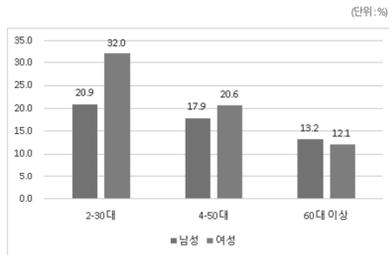
성과 연령별 안전권이 존중되고 있다에 대한 긍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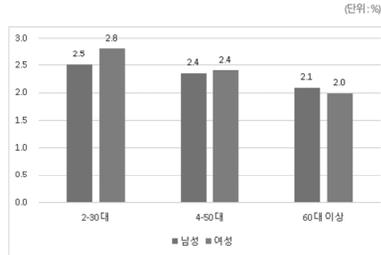
안전권이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30대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20-30대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70.1%)

## 인권침해와 차별

성과 연령별 차별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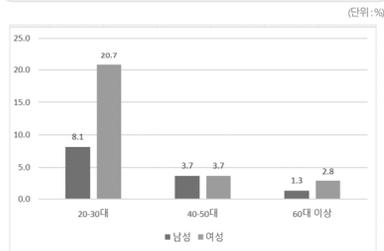
성과 연령별 차별 경험자의 평균 차별 사유 수



차별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30대 여성집단(32.0%)로 가장 높으며, 차별의 사유수도 가장 많음.

##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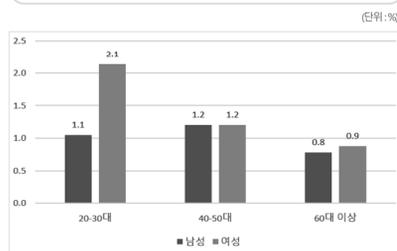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지난1년 성별에 따른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20.7%)로 높게 나타남. 다른 차별유형에 비해 피해경험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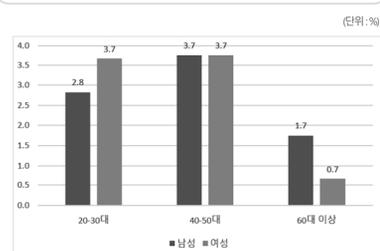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별, 연령별 지난1년 종교에 따른 차별



종교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2.1%)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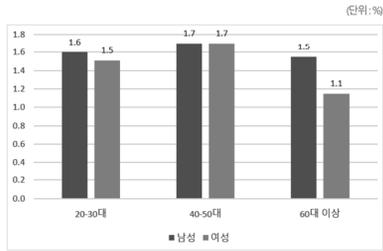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지난1년 사상/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



사상/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20-30대 여성 40-50대 남성과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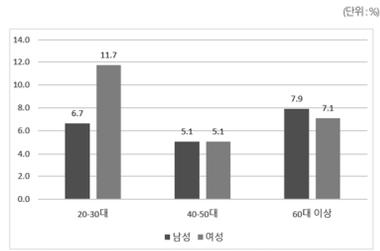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별, 연령별 지난1년 장애에 따른 차별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0-50대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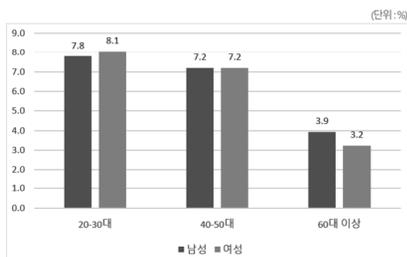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지난1년 연령에 따른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집단이 가장 높음(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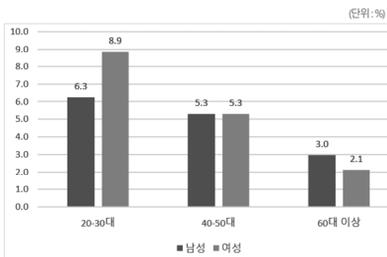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별, 연령별 지난1년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경제적 지위에 따른 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8.1%)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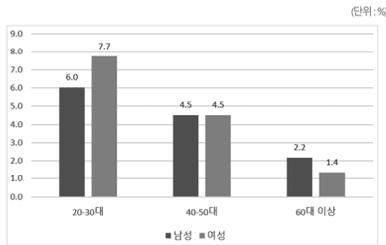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지난1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8.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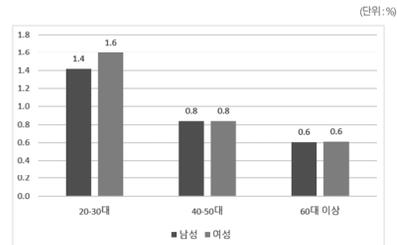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별, 연령별 지난1년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7.7%)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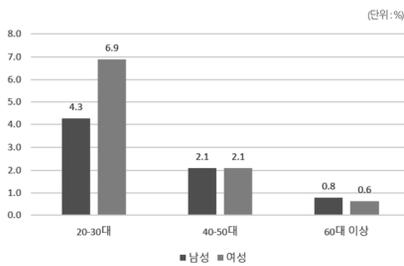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지난1년 인종/출신국가/피부색에 따른 차별



인종/출신국가/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1.6%)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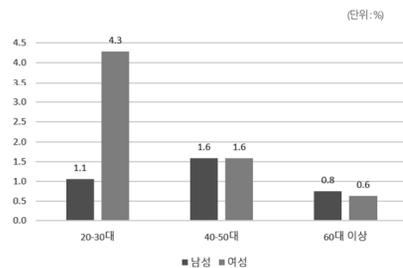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별, 연령별 지난1년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6.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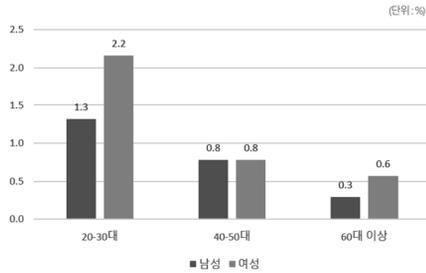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지난1년 혼인상황에 따른 차별



혼인상황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4.3%)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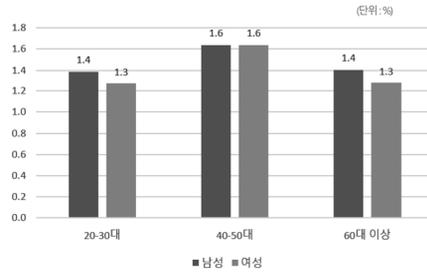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별, 연령별 지난1년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이 가장 높았음(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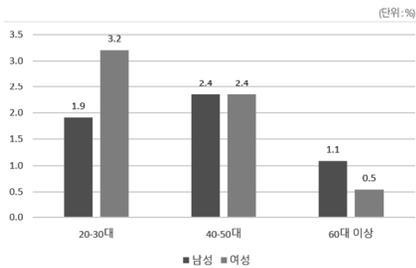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지난1년 질병/병력에 따른 차별



질병 또는 병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0-50대 남성과 여성집단이 다소 높았으나 집단 사이의 큰 차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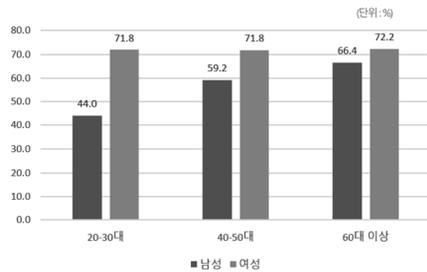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별, 연령별 지난1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30대 여성의 비율(3.2%)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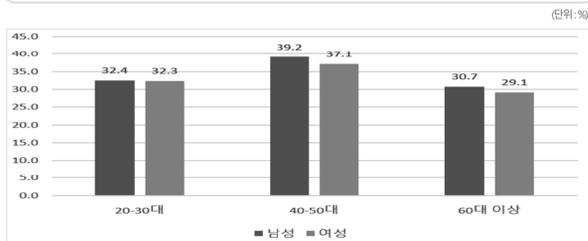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찬성하는 비율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찬성하는 비율은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남. 가장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집단은 20-30대 남성집단임(44.0%)

##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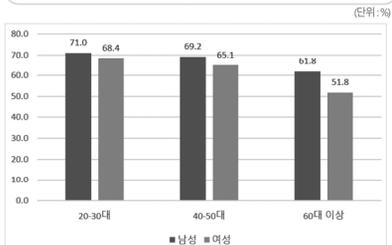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비율



혐오표현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40-50대 남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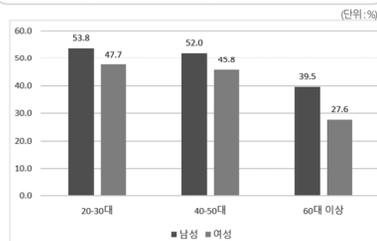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

성별, 연령별 인권존중 규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 연령대별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인권 차별/침해 대처방법



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 연령대별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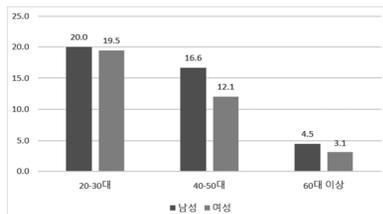
## 인권교육 및 개선

- 전반적으로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은 인권 캠페인이나 거리 집회 등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20-30대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인권단체 활동,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인권 캠페인이나 거리 집회등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으로 나타남
- 동시에 20-30대 여성들은 다른 어느 집단(성과 연령별)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인권교육 및 개선

성별, 연령별 인권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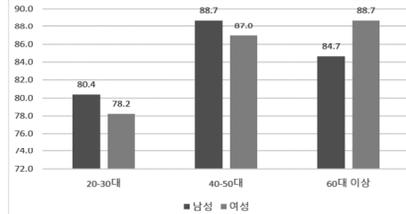
(단위: %)



인권교육의 경험율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20-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60대 이상은 저조한 편임

성별, 연령별 인권교육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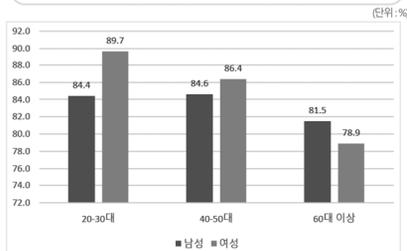
(단위: %)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서 20-30대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20-30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여성이 가장 낮음(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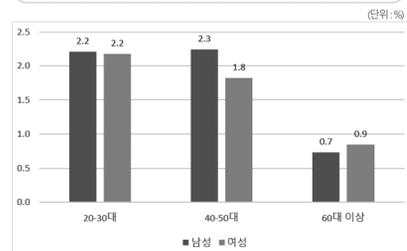
## 인권교육 및 개선

성별, 연령별 인권교육 필요성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높게 느끼는 사람은 20-30대 여성(89.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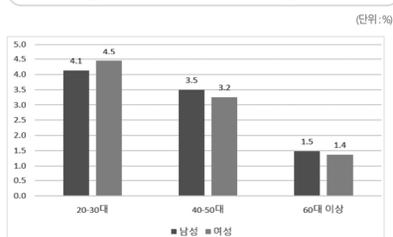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연상담 경험



인권침해 또는 해소하기 위한 활동은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저조한 반면, 20-30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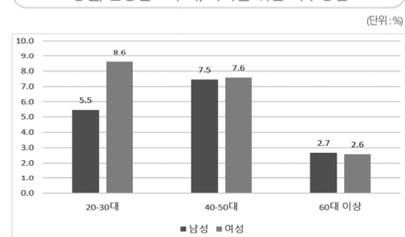
## 인권교육 및 개선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활동 경험은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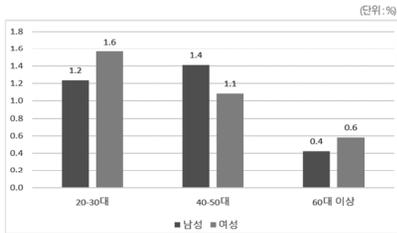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경험은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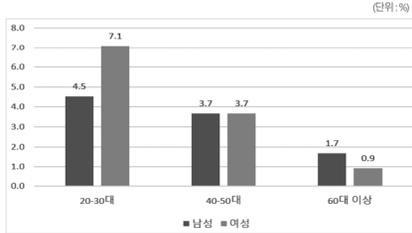
## 인권교육 및 개선

성별, 연령별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경험



인권단체 회원 가입과 활동경험은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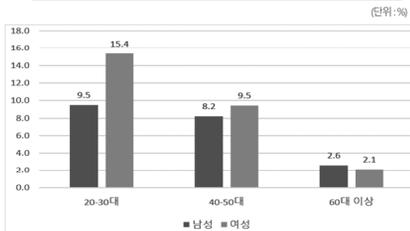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경험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은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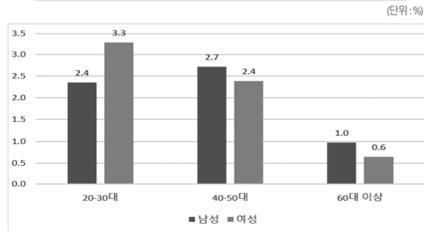
## 인권교육 및 개선

성별, 연령별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은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15.4%)

성별, 연령별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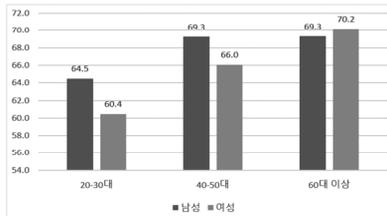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경험은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3.3%)

## 인권교육 및 개선

성별, 연령별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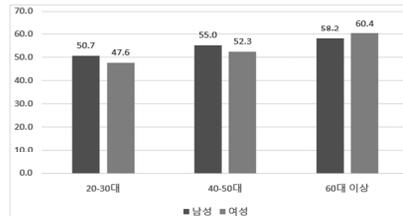
(단위: %)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 보호와 개선은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데 대해서 20-30대 여성이 가장 부정적(60.4%만 그렇다고 응답)

성별, 연령별 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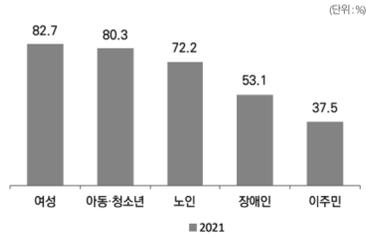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적 대응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20-30대 여성이 가장 부정적(47.6%만 그렇다고 응답)

## 이주민의 인권

- 이번 조사만으로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움
- 단 취약집단별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질문문항에 대하여 각 취약집단 중 이주민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서 응답자들이 이주민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짐(전체 응답자중 37.5%만이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
- 인권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중에서 이주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19년 14.4%에서 2020년 22.3%로 증가하여서 이주민의 인권의 개선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주민의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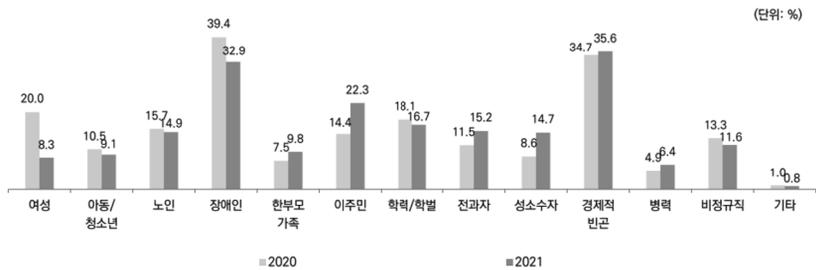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편이다(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7.5%로 취약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주민의 인권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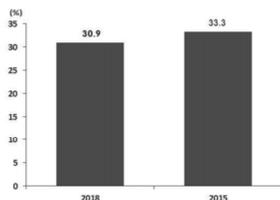


인권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 중에서 이주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19년 14.4%에서 2020년 22.3%로 증가

## 이주민의 인권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2015, 2018)

(단위: %)



인권침해 정도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다소 심각하다)' 41.8% 2020년 30.4%대비 11.4%p 증가  
결혼이민자의 31.6%, 기타귀화자의 262.7%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III-6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단위: %, 명)

|           |                  | 있다               | 없다                | 합계                 |
|-----------|------------------|------------------|-------------------|--------------------|
| 전체 (2015) |                  | 33.3             | 66.7              | 100.0              |
| 전체 (2018) |                  | 30.9<br>(86,487) | 69.1<br>(193,533) | 100.0<br>(280,020) |
| 다문화가구 유형  | 결혼이민자            | 31.6             | 68.4              | 100.0              |
|           | 기타귀화자            | 26.7             | 73.3              | 100.0              |
| 성별        | 여성               | 30.8             | 69.2              | 100.0              |
|           | 남성               | 31.5             | 68.5              | 100.0              |
| 연령        | 29세 이하           | 34.0             | 66.0              | 100.0              |
|           | 30~39세           | 32.9             | 67.1              | 100.0              |
|           | 40~49세           | 32.3             | 67.7              | 100.0              |
|           | 50~59세           | 25.6             | 74.4              | 100.0              |
|           | 60세 이상           | 17.5             | 82.5              | 100.0              |
| 교육수준      |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포함) | 26.3             | 73.7              | 100.0              |
|           | 중학교 졸업           | 31.5             | 68.5              | 100.0              |
|           | 고등학교 졸업          | 30.9             | 69.1              | 100.0              |
|           | 대학 졸업 이상         | 33.6             | 66.4              | 100.0              |
| 혼인상태      | 미혼               | 26.5             | 73.5              | 100.0              |
|           |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 31.9             | 68.1              | 100.0              |
|           | 배우자 사망           | 24.2             | 75.8              | 100.0              |
|           | 이혼·별거            | 29.5             | 70.5              | 100.0              |
| 국내 거주기간   | 5년 미만            | 35.9             | 64.1              | 100.0              |
|           | 5~10년 미만         | 34.9             | 65.1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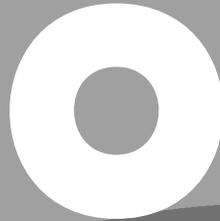


지정토론

#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

이성훈(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김철호(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

이성훈(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인권통계 및 지표

- 2021년 12월 9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채택, 2022년 6월 차기 정부 실행
- 통계 및 지표 관련은 제3장에 명시
- 인권지표/통계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국가보고서와의 연계에 대한 준비 필요
- SDGs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개발 (UPR과 연계)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 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2022) 이행 평가를 위한 인권통계와 지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23-2027) 수립을 위한 인권통계와 지표 개발

○ 100명 표본 심층조사의 장단점

용어에 대한 설명 내용과 방식에 따른 답변의 차이 가능성  
1년 시차를 둔 응답의 차이

## 조사 결과 및 해석에 대한 의견

### 1. 인권의식

- ‘기본적 인권 보호 알고 있다’ 전년대비 6.7 감소에 대한 원인 해석 ???
-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서 여성(82.7%)1위와 장애인 (53.1%) 4위 차이에 대한 해석 - 당사자 운동의 효과 차이? 여성인권과 장애인권의 ‘본질적 차이에서 기인?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87%)와 ‘나의 인권 존중받는다’ (82.9%) 3.5% 증가의 대조적 결과에 대한 해석?

### 2. 인권침해와 차별

- ‘응답자 인구적 특성과 인권 취약집단 대응 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별로 가까운 집단에 대해 취약집단으로 응답하는 경향 발견됨’ 이에 대한 대응책?
-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보호시설 인권 침해 증대 데이터에 반영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

- 차별정도 ‘다소 심각하다’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응답이 2019-2020-2021 2019년 기준 감소 → 증대, 증대 → 감소로 변화한 현상에 대한 해석?
- 인권침해 및 차별가해자에 5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대한 해석 - 가부장적 정치경제적 권력 집중...
- 도움 요청한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21.7% 감소한 이유에 대한 해석 - 지자체의 대응능력 부족? 지자체의 인권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지자체에 의한 인권침해 낮은 빈도?

### 3. 인권 관련 쟁점등

- 정치적 대표자가 됐을 때 ‘불편하다’는 응답은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서 증가한 현상에 대한 해석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차별과 혐오 증대와 연관?
- ‘성소수자’와 ‘특정 종교인’ 혐오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한 해석 - ‘이태원 집단감염 사건’과 개신교회 집단감염과의 연계?

### 4. 인권교육 및 개선

-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응답 감소와 ‘필요없다’ 증대 해석 - 인권교육의 낮은 효과성 반증?
- 인권교육 필요한 대상의 차이 - 군대, 학교, 복지시설 증대, 국회/지방의회, 공공기관 감소에 대한 해석?

## 결과 요약

-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 증가
-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반영 가능성
- 인권침해나 차별경험에서 2-30대 여성의 높은 응답 비율
- 인권쟁점에서 친인권적 의견 증가하지만 인권보다 안전 우선 → 인권과 안전을 대립된 개념? 개인의 자유권과 집단 안전?
-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증가

## 취약집단(아동/노인/장애인) 인권상황 비교

데이터 성격이 다르므로 인해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해석

사회적 거리감 대상은 5개 집단: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여성, 노인

### 1.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다섯 표본 집단의 비교 적합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혐오표현의 대상: 모든 대상 감소 (이주민은 다시 증가), 순위는 여전히 여성이 여전히 1위 (크게 감소했지만)

### 2. 장애인의 차별 인식과 경험

사회적 차별과 개인적 차원의 장애 차별에 대한 구분의 명확성?

### 3. 아동 청소년 인권 상황

유엔 아동권리협약 인지도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이 상관관계 여부

### 4. 노인의 차별 경험

노인 경우 코로나19 변수에 대한 해석이 여부

## 취약집단(여성/이주민) 인권상황 비교

○ 인권의식의 측면에서 본 20-30대 여성집단의 특성

○ 20-30대 여성의 인권 차별에 대한 경험

○ 인권교육 및 개선에 대한 인식

○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에 대한 해석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 20대와 3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 필요

○ 대학생, 취업생, 직장인 등 신분 차이에 따른 응답의 차이?

○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권적 평가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

#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

김철효(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1. 이주민의 ‘인권실태’는 조사될 수 없을까?

지난 세 차례의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조사표를 살펴보면 조사참여자의 인구적 특성을 파악할 때 출신국이나 국적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참여자 가운데 이주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에서 조사참여자 가운데 이주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조사표는 한글로만 제작되어 있어, 한글을 읽는 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혹은 귀화한 국민은 조사에 접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번 조사는 민간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 되었는데, 대부분의 조사기관은 대규모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활용하여 조사참여 표본을 추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패널에 외국인 또는 귀화 국민을 포함 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진다. 과거 2019년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연구를 수행할 때, 조사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당시 접촉했던 여러 조사기관이 어려움을 표명하여 결국 자료의 대표성 문제의 의문을 갖고도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를 통해서 설문 조사를 하여야 했다.

이주민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어렵다. 먼저 조사표를 몇 개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2019년 조사 당시 310명의 조사 대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어 조사표를 10개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실시하였는데, 이것도 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화한 것이었다. 설문지의 번역을 하는 것 자체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참여자에게 번역된 내용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한국어 설문에서 사용된 용어가 특정한 언어권에서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인지조차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설문조사 참여에 ‘훈련되지 않은’ 많은 이주민 조사참여자들은 1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수거된 설문지 다수가 응답의 진정성이 의심되어 자료의 사용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에

이른 적도 있다. 예를 들어 4점 또는 5점 척도 질문이 길게 이어질 때는 1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비이주민에 대한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실태조사」에 이주민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이주민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발행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93%에 해당한다. 이 숫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숫자로 2019년 말 252만여 명(전체 인구 4.87%)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었다. 이들 가운데 이른바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결혼 이주민’은 약 16.9만 명이다. 전체 ‘외국인’의 1/10이 되지 않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1948년 「국적법」 제정 당시부터 2020년 말까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6.9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이들 ‘외국인’과 ‘귀화자’는 모두 UN이 제시하는 정의<sup>1)</sup>에 따른 ‘이주민(migrant)’라 할 수 있다.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는 정확한 수치는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25만여 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은 EU와 OECD의 정의<sup>2)</sup>에 따른 ‘이주배경인구(population with a migrant background)’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내 총인구 가운데 대략 5%는 이주민 또는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즉 총인구의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국 등을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의 대상이 될 위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국가인권실태조사」에 완전히 빠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주민 조사의 어려움과 비용을 고려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비용 및 시간의 5% 만큼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 이주민 조사참여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노력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1) UN DESA (1988), *Recommendations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Rev.1. (UN Doc. ST/ESA/STAT/SER.M.58.Rev.1)

2) EU/OECD (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OECD Publishing/European Union.

## 2. 「국가인권실태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인권 실태조사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최소한 393건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4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범위는 인권교육 실태조사, 혐오차별 표현 실태 모니터링, 인권의식 조사, 주요 취약 집단에 대한 대상별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광범위하다. 각각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주제나 연구 대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의 다양성도 찾을 수 있다. 다수의 연구가 연구 참여자 및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개별 인터뷰 및 집단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인권실태의 양적 및 질적 현황을 파악하고, 법제도와 경제·사회적 배경의 분석, 해외 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인권실태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위치는 어디라고 보아야 할까?

「국가인권실태조사」도 여러 실태조사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그 연구범위가 ‘국민’(비국민이 조사에 참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을 대상으로 ‘인권 담론에 관한 인식’과 ‘인권침해 및 차별, 혐오 표현, 인권교육의 경험에 관한 주관적 인식’(또는 인지된 차별, 침해, 교육)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통계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실태조사」가 보다 포괄적으로 한 해 동안의 인권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의 흩어져 있는 여러 실태조사를 취합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그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룬 진정 사건, 시민사회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 기타 언론에 보도된 사건 등을 두루 아우를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국가인권실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 3. 「국가인권실태조사」로 살펴 본 한국 인권상황의 변화

한편 ‘인권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조사 방식의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인권의 실태와 쟁점, 교육 등에 관한 인식(설문 1-12번, 20-29번, 31-33번, 35-37번)과 ‘인권침해와 차별’과 ‘인권 교육’의 경험에 관한 주관적 인식(설문 13-19번, 30번, 34번)을 주로 조사하고 있다. 이같이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는 설문조사가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발제자의 발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 조사 자체는 조사 결과를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만,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인과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2019-2021년 사이 ‘주거권’의 존중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집값 상승’, ‘전세난’ 등의 사회적 이슈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2020-2021년 사이에 ‘검·경 조사·수사’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군대’에서는 더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해당 기간에 발생한 정치적 상황이나 사건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의할 점은 위의 조사 결과들이 모두 실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국가인권실태조사」의 결과는 ‘한국 인권상황의 변화’ 보다는 한국 인권상황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인권실태조사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인권실태 상황을 기록하고 보고하거나, 관련 보도를 취합하거나, 법제도로 인해 명백하게 인권이 제한되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반영하는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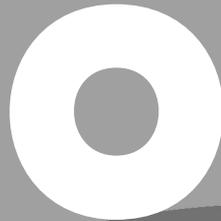
# 일반국민과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석(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일반국민과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의의와 방안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유사 고민 (현 : 예산범위 내 학교단위 조사)
- 아동·청소년 관련 정기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NYPI),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교육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NYPI),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NYPI),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중단연구(KEDI) 등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승인통계 제402001호)’

※ 2020년 기준 (2021년 결과는 2022년 1월 공표)

- 인권기준이 되는 협약과 인권침해 조사구제기구인 인권위에 대한 인식 낮으나 증가추세
-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이 1순위 : 발표문의 혐오대상으로서 아동(11.9%)
- 여가와 운동, 수면시간 부족. 학업부담으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경험 (수면부족 : 숙제와 학원 등 학업 이유 41.9%)
- 학교 의미 약화 (학업중단 생각 증가추세 중 2020년 코로나 시기 감소) 및 ‘무기력’ 원인 높음.
- 참여권 보장받는다는 주관적 인식이 높고 증가 추세(2020년 71.0%)이나 학생 자치권 등 구체 사안 참여 수준은 낮음(학생회 자율권 보장 40~50% 수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대표 참여 27.4%,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11.9%).

-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 22.9%,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4.0% : 학교 체벌 상대적 급감은 체벌 금지 법제화 효과(그러나 아직도 존재). 2021. 1월 자녀 체벌 근거로 오용되던 민법 제915조의 부모 징계권 폐지 이후 상황 주시. \* 학원 체벌 : 2019년 문항 분량 축소로 삭제된 학원 체벌 문항 추가 필요성 검토 중

## ○ 시민이자 인권과 참여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

-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들의 상황은 높지 않으나 당사자의 주관적 응답률은 높음 :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 청소년은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생각에 따라야 한다 70% 선에서 추이 변화는 크지 않음.
-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87% 내외로 추이 변화는 크지 않음.
-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성인 인식 :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을 부정하는 의견이 73.2%로 2020년보다 5.7%p 증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찬성하는 의견은 71.2%로 2020년 47.5%보다 크게 상승.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 증가가 아동·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보는 근본적 인식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청소년이 꼽는 참여권 제한 요인 1순위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2020년 33.1%)’

## ○ 참고자료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115개 지표항목 중 42개 지표항목의 결과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 <표 1>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지표(소분류)   |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  |
|-----------------------------|----------------------|---|--|--|
|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br>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 조직<br>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  |
|                             |                      | 1-1-2. 인권에 대한 인식                                  |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br>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br>1-1-2-3. 인권의식 및 태도* |  |
|                             |                      | 1-1-3. 인권교육                                       |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br>1-1-3-2. 인권교육 경험(경험유무, 장소, 도움정도)*   |  |
|                             |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 1-2-1. 차별 경험률                                     | 1-2-1-1. 차별받은 경험*<br>1-2-1-2. 차별해 본 경험*  |  |
|                             |                      |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  |
|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
|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                      |   | 2-1-2-1.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br>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br>2-1-2-3.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  |
|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                      |   |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br>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br>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  |
|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                      |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정도*   |  |
|                             |                      |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 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정, 학교)*  |  |
|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                      | 2-3-1. 결사·집회 경험률                                  |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  |
|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                      |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  |
|                             |                      |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 2-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도(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  |
| 2-5. 정보접근권 (제17조)           |                      | 2-5-1. 매체 접근율                                     | 2-5-1-1. 매체 이용률<br>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  |
|                             |                      | 2-5-2. 미디어 리터러시                                   |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br>2-5-2-2. 미디어 역량   |  |
| 3. 폭력 및 학대                  |                      | 3-1. 차별,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나, 다) |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 3-1-1-1. 가정(부모)에서의 폭력피해 경험*<br>3-1-1-2.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br>3-1-1-3.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br>3-1-1-4.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

| 대분류                                | 중분류  | 지표(소분류)   |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
|------------------------------------|--|---|---|
|                                    | 제28조 2항)                                       | 3-1-2.<br>아동·청소년의<br>성폭력 피해 경험률                               |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br>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
|                                    |  | 3-2.<br>아동학대,<br>유기 및 신체적,<br>심리적 회복과<br>사회복귀<br>(제19조, 제39조) |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br>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br>3-2-1-3. 가정 내 방임 정도*<br>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br>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
|                                    | 4-1.<br>부모의<br>지도와 책임<br>(제5조, 제18조 1항,<br>2항) | 4-1-1.<br>부모와의 관계   | 4-1-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
|                                    |  | 4-1-2.<br>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br>서비스 실태                             |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br>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
| 4.<br>가정환경<br>및<br>대안양육            | 4-2.<br>가정의 보호를<br>받지 못하는<br>아동·청소년<br>(제20조)  | 4-2-1.<br>입양률   |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br>4-2-1-2. 입양 사후관리   |
|                                    |  | 4-2-2.<br>대안양육 비율   |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br>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
|                                    |  | 4-2-3.<br>가출청소년의<br>서비스 이용률                                   |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br>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br>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
|                                    | 4-3.<br>양육 및 보호조치에<br>대한 심사<br>(제25조)          | 4-3-1.<br>양육·보호 조치에 대한<br>서비스 적절성                             | 4-3-1-1.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
| 5.<br>장애,<br>기초 보건<br>및 복지         | 5-1.<br>장애(제23조)                               | 5-1-1.<br>장애아동 및<br>청소년보호(지원)                                 |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
|                                    |  |   |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
|                                    |  |   | 5-1-1-3. 장애 청소년 진학을 및 취업을 추이  |
|                                    | 5-2.<br>생존 및 발달<br>(제6조 2항)                    | 5-2-1.<br>사망률   | 5-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
|                                    |  |   | 5-2-1-2. 사고 사망률   |
|                                    | 5-3.<br>보건서비스<br>(제24조)                        | 5-2-2.<br>안전에 대한 인식률  | 5-3-1.<br>보건 서비스<br>인프라 구축 현황   |
| 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  |   |   |
|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  |   |   |
| 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  |   |   |
|                                    |  | 5-3-2.<br>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
|                                    |  |   |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
|                                    |  |   | 5-3-3-1. 흡연율  |
|                                    |  |   | 5-3-3-2. 음주율  |
|                                    |  | 5-3-3.<br>약물남용 예방<br>프로그램 제공률                                 |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
|                                    |  |   |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

| 대분류                                 | 중분류                           | 지표(소분류)   |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  |
|-------------------------------------|-------------------------------|---|---|--|
|                                     |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 5-4-1. 신체적 건강   | 5-4-1-1. 주관적 건강평가*  |  |
|                                     |                               |   | 5-4-1-2. 운동 실천율*  |  |
|                                     |                               |   | 5-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  |
|                                     |                               |   | 5-4-1-4.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  |
|                                     | 5-4-2. 정신적 건강                 | 5-4-2-1. 자살 생각과 그 이유*                                   |   |  |
|                                     |                               | 5-4-2-2. 우울감*   |   |  |
|                                     |                               | 5-4-2-3.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   |  |
|                                     |                               | 5-4-2-4. 삶의 만족도*  |   |  |
|                                     |                               | 5-4-2-5. 자아존중감*   |   |  |
|                                     |                               | 5-4-2-6. 고민거리 대화상대*                                     |   |  |
|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 5-5-1-1.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   |  |
|                                     |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빈곤을 포함)<br>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   |  |
| 6.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 6-1-1-1.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br>6-1-1-2.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br>6-1-1-3.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
|                                     |                               | 6-1-2. 학교 부적응률  | 6-1-2-1. 학업중단율<br>6-1-2-2.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  |
|                                     |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 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 6-2-1-1. 학교생활 만족도*(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  |
|                                     |                               | 6-2-2. 진로·직업교육  | 6-2-2-1. 진로교육 현황<br>6-2-2-2. 직업교육 현황  |  |
|                                     |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 6-3-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                             | 6-3-1-1.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시설 수*<br>6-3-1-2.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 시설 이용만족도*                       |  |
|                                     |                               |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br>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br>6-3-2-3. 하루 평균 학습시간*          |  |
|                                     | 7. 특별 보호 조치                   |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 7-1-1-1. 아동·청소년 난민 수<br>7-1-1-2.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br>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
|                                     |                               |   |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br>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br>7-1-2-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급 현황 |
|                                     |                               |   |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

| 대분류                      | 중분류                                 | 지표(소분류)                                    |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
|--------------------------|-------------------------------------|--|-------------------------------|
|                          | 7-2.<br>소년 사범                       | 7-2-1.<br>자유박탈<br>아동·청소년 현황                | 7-2-1-1.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
|                          |                                     |  |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
|                          |                                     | 7-2-2.<br>인권친화적 사범환경                       |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
|                          |                                     |  |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
|                          |                                     |  |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
|                          |                                     |  |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
|                          | 7-2-3.<br>회복적 프로그램<br>(다이버전) 운영     | 7-2-3-1.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수 |                               |
|                          |                                     | 7-2-3-2.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                               |
|                          | 7-3.<br>경제적 착취                      | 7-3-1.<br>청소년노동조건 수준                       |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
|                          |                                     |  | 7-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
|                          |                                     |  | 7-3-1-3. 청소년 실업률 추이           |
|                          |                                     | 7-3-2.<br>청소년<br>노동인권 보호 노력                |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
|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  |                               |
| 7-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                                     |  |                               |
| 7-4.<br>성적 착취            | 7-4-1.<br>아동·청소년<br>성범죄자 처벌 수준      | 7-4-1-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                               |
|                          |                                     | 7-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                               |
|                          | 7-4-2.<br>성범죄<br>피해 아동·청소년<br>지원 정도 | 7-4-2-1.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                               |
|                          |                                     | 7-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                               |

## ○ 참고문헌

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 예정)

# 일반국민과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이용석(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 1. 장애를 가진 사람의 타자화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제약 없이 제공할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인권은 장애, 비장애와 상관 없이 보편적, 불가분적, 불가침적, 총체적 의미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규정이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뿌리로부터 자라난 사회적·역사적 산물, 곧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를 떼면 ‘장애’를 국가로부터 판정을 받아야지만 ‘장애인 인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이라는 사회적 정체성만으로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늙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이주민이어서, 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은 인권의 존중은커녕 차별받고 배제된다. 이 차별과 배제의 양적 측정이 결국 ‘국가인권실태의 조사’결과로 수치화로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2021년 국가인권실태 조사 결과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32.9%)’이 되었다.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 6.5%가 감소된 결과지만 그렇다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의 빈도가 6.5% 줄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여전히 장애는 분리되고 배제됨으로써 차별받는다. 한 예로 전국의 7백여만개의 건물 중에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고작 2.3% 남짓이고,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중에서 저상버스 도입율은 여전히 20% 겨우 넘겼으며 시외버스는 서울 당진 간 단 한 코스에 불과하다. 고용률은 34.5%로 비장애인의 절반가량이며, 가구노동소득은 비장애인의 45~50% 수준이며 이 차이는 매년 늘고 있다.

의아하다. 장애인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32.9%)’이며 전년에 비해 6.5%가 감소되었는데 왜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을까?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장애인을 지목한 32.9%라는 숫자는 장애 여부와는 상관없는 불특정 집단의 답변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스스로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82.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니까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써의 장애인을 지목한 것은 자신들과 장애인은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으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답변은 장애인을 타자화 함으로써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 자신과 명확히 구별한다. 이런 답변은 또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받는지 묻는 질문에 77.8%가 그렇다고 답변함으로써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장애인 등을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상화된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차별 문제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훨씬 명백하고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그 상황도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는 데에 있다.

### 【 장애인 차별 인식 】

(단위: %)

| 구분        | 전체          | 연령별         |             |             |
|-----------|-------------|-------------|-------------|-------------|
|           |             | 만19세 미만     | 19-64세      | 65세 이상      |
| 없다        | 36.5        | 27.2        | 30.4        | 42.7        |
| <b>있다</b> | <b>63.5</b> | <b>72.8</b> | <b>69.6</b> | <b>57.3</b>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인권침해나 차별 인식과 불특정다수의 비장애인간의 인식의 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에 의하면 올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4,208건이다.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전년(2019년)도 4,376건보다 3.8% 감소하였지만,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2,069건(49.2%)으로 전년도 1,923건보다 7.6% 증가하였다. 2019년과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955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피해 상담이 758건(27.4%),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263건(9.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123건(4.4%) 등의 순이었다. 2020년도에도 역시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607(2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 정량적 양은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장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니까 활동이 위축이 오히려 차별 받을 기회를 줄였다는 의미겠다. 이렇듯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는 증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역별 차별 상담 비율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그 증감과는 상관없이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기제가 이제는 우리사회에 고착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우려스럽다.

## 2. 사람, 존엄하다는 것

사람이 존엄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더불어 옴터 왔다. 인간의 존엄을 권리의 체계로 구체화시킨 것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였습니다. 권리의 체계란 ① 권리의 주체와 ② 권리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③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 대상이라는 3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근대 시민혁명 이후 인권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까지 격상된다. 그렇다면 정말 누구나 인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인권의 목록에 들어가야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또 특정한 조건에서 인권이 제한된다면 그 제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 인권의 주체와 내용, 범위를 둘러싼 긴장은 인권의 역사에서 늘 존재해 왔다. 누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권리가 누구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권리로 생각되기도 하고, 특권이 인권으로 위장하여 약자들에게 폐약을 부리는 일들도 일어난다. 누구의 ‘입장’인가에 따라 인권을 해석하는 방향과 범위도 달라지곤 하는데, 이러한 혼란과 무분별한 해석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방향타 역할을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인권이 인권으로 불리기까지는 수많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인권의 개념이 ‘등장’한 시기는 서구 유럽에서 봉건사회의 몰락과 함께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던 때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인간의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인권선언>에서의 ‘모든 사람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인권개념이 비로소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근대 시대 이전에는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인권’이라는 개념이 언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표기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인간을 ‘All men’으로 표기했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man’으로 표기했다. 그러던 것이 <세계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용어가 남성지배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여성들의 지적에 의해 ‘human being’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즉, 인권이 ‘Rights of Man’(남성이 중심인 인간의 권리)에서 비로소 ‘Human Rights’(보편적 인간의 권리)로 불리게 된 것이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前文)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의 권리에 대한 원칙이 잘 표현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종교와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지닌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인권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인류 공통의 기준으로 합의한 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인권법의 모법(母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에 관한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국제인권조약들과 선언들을 탄생하는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의 인권적 해석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재구성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이다. 2006년 8월 25일 5년간의 집중된 UN 특별위원회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약칭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추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적인 협약”(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국제조약으로 통과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복지’, ‘시혜’ 그리고 ‘재활’차원에서 접근되었으나, 지난 20여 년간 ‘권리 중심(Right-based) 접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고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협약은 증명한 것이다.

2006년 12월 13일 UN 62차 총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UN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국제법으로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장애인의 권리장전이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UN CRPD 채택은 전통적으로 ‘복지’, ‘시혜’, ‘재활’차원에서 접근했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권리중심(Right-based) 접근’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인권’관점에서 장애를 인식한다는 것은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UN CRPD의 전문>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중략…>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의 근본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여 이들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듯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 모든 장애인 당사자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며 보장하며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적절한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과 관행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연구에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4. 차별과 혐오, 장애인 인권의 두 장벽

[사례 1\_ 차별]

[단독] “국립교대, 중증장애 이유로 입시 성적조작”

경향신문 발췌 2021.04.10.

한 국립교육대학교에서 지원학생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한 국립교대 입학사정관 A씨는 지난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3차례 이상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A씨는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만점에 가까운 점수에서 최종적으로는 최하점까지 낮췄다”고 말했다. A씨는 성적을 조작한 이유로 ‘팀장의 지시’를 꼽았다. 입학관리팀 팀장 박모씨가 A씨가 해당 학생에게 만점에 가까운 960점을 준 사실을 알고 점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880점으로 내리자 팀장은 최하점인 700점까지 내리도록 재차 지시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팀장은 2017년 10월 19일 A씨에게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이름을 거론하며 “OOO, 880에서 700으로 만들어 가지고 편차를 만들어 줘. OOO만 880에서”라고 말한다. A씨는 “거부하자 팀장이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다”고 말했다.

#### **중증장애인은 초등교사 될 수 없다?**

A씨는 팀장의 성적조작 지시가 지원 학생의 ‘중증장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팀장은 A씨가 면접관으로 참석하는 면접에 대해서도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시각장애 2급, 지체장애 2급)에게 낮은 점수를 주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날려야 한다. 내가 작은, 일반 대학이라면 신경도 안 쓰겠는데,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된다. 그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러겠어?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하면서”**

김진훈 송의여고 교사는 “입학요강에 기재가 돼 있다면 이를 고려해 지원 자체를 안 할 텐데 기재된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지원 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본창 정책국장도 “지원자격에 위배되지 않으면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며 **“이럴 거면 입학요강에 장애 4-6급만 지원 가능하다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 알렸지만 징계는 없었다 A씨는 “이후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당시 교무과장과의 면담에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학생 선발 관련한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추후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교무과장은 “큰일인데...”라고 말한 다음 “지켜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미 있었던 일을 꼬집어내기에는 늦은 것 같다”라고 말한다. 결국 해당 팀장은 성적 조작 지시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1차 서류조작은 물론이고 A씨가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관리자가 면접관에게 ‘떨어뜨리랴’라는 말을 한 것 자체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며 ‘추상적 위험범’을 언급했다.

추상적 위험범은 어떤 행위가 실제로 위험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면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A씨는 “팀장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지만 실제 면접에 들어가서는 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유감스럽다”며 “다만 A씨는 위계에 의한 성적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목된 팀장은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학교 역시 피해자다”라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학교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드러난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고 회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사례 2\_혐오]

### 소수자가 소수자를 혐오할 때

한국일보 발췌 2021.03.10.

몇 년 전 휠체어를 탄 지인과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탔다. 한 어른신이 휠체어를 보더니 "요즘은 장애인이 대통령보다 더 대접받아"라며 대뜸 시비를 걸었다. 왜냐고 여쭘더니 "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더니 못 대게 하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어른신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설명하다가 '어른에게 대든다'며 욕을 먹었다. 장애인 지인은 "싸워줘서 고맙다"면서도 "이런 일이 너무 흔해서 나는 이제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휠체어를 타는 내 딸이 혼자 외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란 생각 때문이었다.

설 연휴 전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보장 약속 이행'을 외치며 지하철에 휠체어 여러 대가 타는 시위를 벌였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나이 지긋한 어른신을 비롯해 일부 시민들은 이들 장애인 단체에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얼마 전 트랜스젠더임을 밝혀 강제전역된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대부분 고인의 명복을 빌었지만 혐오를 대놓고 전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스스로가 '어떤 소수자'라고 밝힌 사람들을 포함해서였다. 왜 같은 소수자들이 소수자를 혐오하고 비난할까?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그중 일부는 '저이 때문에 손해나 피해를 본다. 내 것을 빼앗는다'는 사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내 지인이 봉변당했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보자.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20년 동안 장애인 활동가들이 투쟁해 얻어냈다. 그 결과 장애인 대비 최소 5배는 더 많은 어르신이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소수자들이 연대하여 어떤 권리를 쟁취하면, 보통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노예제가 있던 시절 백인-노예소유주-남성들은 노예, 여성, 동성애자 등을 모두 일종의 '장애인'으로 보았다. 1850년대 미국 정신과 의사인 사무엘 카트라이트는 "편안한 노예제에서 탈출해 자유를 얻으려 하는 흑인은 정신 질환을 앓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여성 참정권을 여성운동가들이 쟁취하기 전 "고등교육은 여성의 몸을 아프게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 팽배했다. 1700년대 미국 이민국 심사에서 장애인이나 동성애자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몸"이라고 낙인찍혀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랬던 미국의 장애인권이 향상된 건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장애인들의 긴 투쟁이 있었고 거기에 다른 소수자 연대가 있었다. 킴 닐슨의 '장애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1977년 미국 장애인운동가들이 샌프란시스코 한 공공건물을 점거해 시위를 벌일 때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해 유색인종인권단체 등이 함께 음식을 가져다주며 연대했다.

나는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므로 장애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어떤 한편으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휠체어를 타는 딸이 나 없이도 어떻게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 무의가 어르신들을 섭외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구간을 리서치한 이유다.

우리 모두가 어느 공간에서는 소수자다. 한국어가 안 통하는 곳에서 우리 모두는 언어 소수자가 된다. 그러니 잠재적 소수자 모두가 서로 연대해야 하지 않겠나. 어린 시절 어렵풋하게 들었던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고독을 느껴보았나 그대. 우리는 너나 없는 이방인.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실질적 평등을 당연시하는 사회이다. 실질적 평등은 말 그대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질적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게 되며 차별이 마치 당연한 현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 혐오가 발생한다. 그래서 차별은 혐오의 원인이 되고, 혐오는 또다시 차별을 야기하는 이유가 된다. 이 두 양 극단의 기제는 장애인이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분리되고 배제되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사례 1]과 [사례 2]는 편의상 분류했을 뿐 두 사례 모두 차별과 혐오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고리형태의 순환구조이다. [사례 1]은 장애를 이유로 상급학교의 입학을 거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적조작을 통해서 입학 과정 자체에서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적조작을 지시한 자는 마치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행위로 위장하고 강요한다. [사례 2]에서의 장애인 권리 찾기 운동은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동이거나 이기적 행동으로 폄훼되고 장애인에 대한 분리 혹은 배제의 정당성으로 이해한다. 이렇듯 차별과 혐오라는 두 기제는 장애인을 사회의 특별한 존재-혹은 버림받아도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하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에 중대한 저해 요인으로 간주된다. 결국 두 기제는 앞에서 언급한 실질적 평등과는 정반대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생각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5. ‘장애’에 덧씌워진 프레임 깨기

장애인이라는 소수집단은 너무 오래 억압에 길들여져 있어 자존감 상실, 자기혐오에 빠져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숙명으로 여기는 구조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외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인 민감한 감각으로의 ‘감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인권’을 덧붙인 단어가 ‘인권감수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장애감수성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갖는 차별에 공감하고 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정’이며, 이 감정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공감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가 일상에서 장애인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곧 그들의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며, 차별과 혐오 상황에서 장애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아주 사소해서 놓치기 쉬운 장애인의 일상적 차별과 혐오 상황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곧 인권을 기반으로 한 장애감수성의 출발점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은 각 개인이 의식이 갖는 일정한 생각의 프레임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각 개인이 스스로 생각의 프레임을 되돌아보는 실천에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권적 프레임이 필요하다. 추하다, 도와줘야 하는 존재, 세금 갹아먹는 존재들이라는 강고한 프레임을 깨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장치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신체 결함이나 손상을 이해시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장애’로 구성되는지,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그 사람의 장애를 더 ‘장애화’하는지 이야기함으로써 장애인=배려 받는 자, 비장애인=배려하는 자와 같은 구도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장애’를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일종의 ‘화두’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을 텐데,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프레임은 ①장애를 대상화하지 않고 한 사람의 권리주체로, ②장애인을 배려나 인간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틀을 구성하고, 나아가 ③장애는 신체, 정신적 손상이라는 비정상성이라는 진부한 의료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야만 실태조사의 결과인 32.9%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작동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존재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과감히 깨고 ‘인권감수성’이라는 프레임의 새로운 구성을 통해야만 가능하며 ‘인권 실태조사’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 일반국민과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 1. 조사의 방법론적인 측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의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경험으로 실태조사의 방법론적인 면과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전달과 그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설계로 인권상황의 발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적지 않다. 그 실태조사의 결과적 측면에서 보면 실태조사와 정책이 수립이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됨에 따라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그에 따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태조사가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등 기존의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계층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정부부처, 일부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모는 다르지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유효성있는 표집 그리고 사회적 약자층의 특성에 맞는 조사내용과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연구기관의 경우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투입하는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면접관이 있을 경우는 이런 설문지 때문에 비표준편차를 크게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존 설문지로 조사를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며 이미지 카드나 전문 면접관의 조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면접관의 조력이 오히려 여러 설문조사간의 비표준편차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이주민 관련 조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설문조사의 도구에 따라, 그 도구가 얼마나 동일한지에 따라 조사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후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내용, 내용의 전달방법, 조사방법이 면밀히 검토되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장애영역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언어적 문제나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는 물론 표집에 있어서 장애영역별 비례, 이주민의 경우 업종 조사의 특성, 조사 도구도 조사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 그룹에서 특히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양적 조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각 부문별 인권의 쟁점은 그 현상이 생기는 맥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적 조사로 신뢰도와 타성도 있게 수행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2. 실태조사의 결과내용의 측면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실태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취약집단별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질문문항에 대해 각 취약집단 중 이주민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서 응답자들이 이주민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 중에서 이주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20년 22.3%로 2019년 14.4%보다 증가하여 인권의 개선정도에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는 장애인은 60% 이상인 반면 ‘헌법의 기본권 보장’을 모른다는 일반국민은 30% 이하를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장애인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법률)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이런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볼 때 과연 이 실태조사는 인권실태만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의 정보를 제공하여 그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을 유도하여 상황을 변화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인지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항 중 한가지, 응답의 내용이 다른 응답과 상응하지 않는 답변이 나온 경우 의문이 생겼다. 예컨대 2021년도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도 사회,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성인 71.2%이고 아동청소년 당사자는 87.3%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성인은 73.2%가

찬성하였고 아동청소년은 30.4%가 찬성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 사회, 정치 문제는 고도로 자기 의사능력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능력과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응답이 모순되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항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 일반국민과 취약집단 인권상황 비교

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2030 여성의 인권 의식, 차별의 경험이 바탕이 된 인권 감수성

- 한국사회의 페미니즘에 대한 역풍으로 인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소수집단
- 인권증진을 위한 정부/정치권의 역할
- 2030 여성은 여성 스스로에 대한 차별 뿐 아니라, 우리사회 연령차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차별에 대해 높은 감수성

### □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비주류로서의 여성 인권

-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만연한 가운데 여성들이 인식하는 유리벽, 유리천장
- 연령별·성별 위계 문화 속에서 2030 여성의 차별경험
- 정부가 보장해야하는 국민의 사회권 중 안전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필요성
- (안전권 존중에 대해 낮은 긍정, 특히 2030 여성 70.1%로 가장 낮음.)
- 적극적 우대조치, 정치적 가치 차원의 정책이므로 기득권 의견이 아닌 소수자 의견에 기반해서 추진할 필요

### □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낮은 한국사회 현실

- 인권차별/침해에 대한 대처방법에서, 2030 여성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짐.
- 2030 여성의 정보접근성 또는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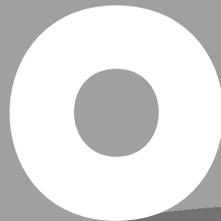
- 법 자체를 알고 있는 것과 법을 이용하는 것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 인권교육의 실효성 제고 필요 (예, 학교 성교육,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정부고위공무원 대상 성평등교육 등)
-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 (사법제도, 경찰 등 정부의 인권보호에 대한 신뢰도)
- 2020년과 비교한 차별대상 순위, 전년대비 비율이 오른 항목. 이주민(7.9%p)>성소수자(6.1%p).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문제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세션 2

# 통계로 보는 한국의 인권

사회: 유영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제3-1

# 한국의 인권통계 2021

김대훈(스탯코리아 대표)





# 한국의 인권통계 2021



김대훈(스탯코리아 대표)

한국의 인권통계: 현황과 과제

2021. 12. 21.

## 목차

인권통계 개발

인권통계 현황

인권통계 활용

## 인권통계 개발

---

- 인권통계 개발 목적
  - 인권 상황의 체계적(주기적, 과학적) 모니터링
  - 사건(event) 기반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인권 상황 모니터링
- 인권통계 개발 과정
  - 2018년: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 및 통계 자료 발굴
  - 2019년: 인권통계 시범 작성
  - 2020~2021년: 인권통계 보완 및 업데이트

## 인권통계 개발

-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11개 영역, 3개 권리유형, 41개 주제로 구성

| 인권영역      | 권리유형         | 인권주제           | 인권영역         | 권리유형         | 인권주제       |               |            |
|-----------|--------------|----------------|--------------|--------------|------------|---------------|------------|
| 거버넌스      | 평등권          | 정치참여의 평등       | 노동           | 평등권          | 고용에서의 평등   |               |            |
|           |              | 집회의 자유         |              |              | 노동조건의 평등   |               |            |
|           | 시민·정치적 권리    | 결사의 자유         | 일할 권리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평등권        |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            |
|           |              | 사상의 자유         | 노사관계 권리      |              |            |               |            |
|           |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건강           | 시민·정치적 권리  | 보건서비스의 평등     |            |
|           |              |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 생명권          |              |            |               |            |
|           |              |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평등권        |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            |
|           |              | 구제 및 면책 권리     | 안전할 권리       |              |            | 적절한 식생활 권리    |            |
|           |              | 사법정의           | 시민·정치적 권리    | 사생활 보호 권리    | 교육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의료 접근권     |
|           |              |                |              | 공정한 재판 권리    |            |               | 모성 및 아동 보호 |
| 사법적 구제 권리 | 교육기회의 평등     |                |              |              |            |               |            |
| 임의 체포와 구금 | 교육받을 권리      |                |              |              |            |               |            |
| 물질적 생활수준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사회안전망 권리       | 문화·미디어·정보    | 평등권          | 다양성 존중     |               |            |
| 인권과 빈곤    | 인권과 빈곤       | 표현의 자유         |              |              |            |               |            |
| 주거와 교통    | 시민·정치적 권리    | 거주 및 이동의 자유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평등권          | 문화적 생활 권리  |               |            |
|           |              | 적절한 주거 권리      |              |              | 정보 접근권     |               |            |
| 가족        | 시민·정치적 권리    | 가정폭력           | 환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쾌적한 환경 권리  |               |            |
|           |              |                | 가치와 의식       | -            | 식수 및 위생 권리 |               |            |
|           |              |                |              |              | 인권실태 평가    |               |            |
|           |              |                |              |              | 인권 인식과 교육  |               |            |

## 인권통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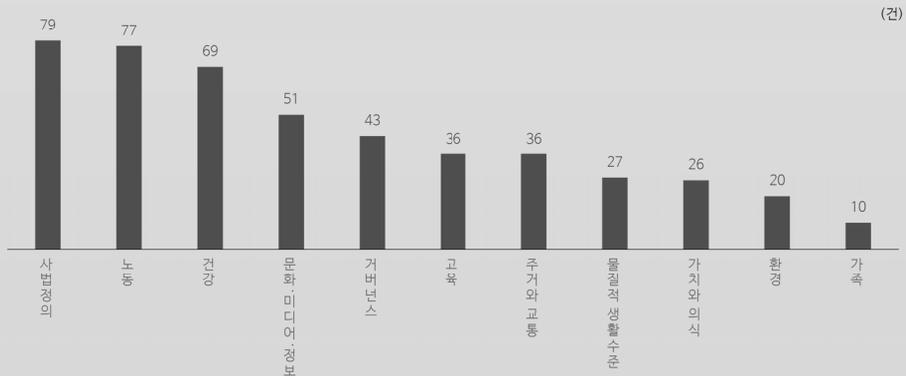
- 2018년 인권통계 자료 발굴
  -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 산출 국가통계를 대상으로 인권통계 작성 대상 검토 및 발굴
  - 인권통계 예비 목록 및 메타데이터 작성
- 2019년 인권통계 작성
  - 전년도 예비 목록을 활용하여 총 381건의 인권통계 작성
- 2020년 인권통계 업데이트
  -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2020) 신규 통계 포함 총 460건의 인권통계 작성 및 업데이트
- 2021년 인권통계 업데이트
  - 신규 발굴 통계 포함 총 474건의 인권통계 작성 및 업데이트

## 인권통계 개발

- 인권통계 작성 원칙
  - 인권주제 적합성: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41개 주제에 적절한 통계를 선별
  - 통계 신뢰성: 정부 산출 국가통계를 대상으로 작성
  - 통계 대표성: 전국 또는 전국민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이용
  - 통계 방향성: 인권 상황의 개선-악화 또는 향상-퇴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통계치 사용
  - 통계 주기성: 주기적으로 반복 생산·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중장기 시계열 통계 작성
  - 통계 간명성: 핵심 통계치만 선별하여 간결하게 제시
- 인권통계 작성 방법
  - 메타 정보: 통계명, 통계분류(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정의(산출방법, 자료원)
  - 통계 정보: 그래프명, 그래프, 통계표명, 통계표

## 인권통계 현황: 통계 구성

- 인권영역별 인권통계 구성(2021)



## 인권통계 현황: 통계 구성

• 권리유형별 인권통계 구성(2021)



## 인권통계 현황: 통계 구성

• 인권주제별 인권통계 구성(2021)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 인권통계 보고 형태: 통계집
  - 현재 인권통계는 개별 통계의 통계표를 인권 영역별로 수록한 통계집의 형태로 보고되고 있음.
  - 개별 단위 통계는 메타 정보, 그래프, 통계표의 표준 구성 체계를 갖추고 있음.

**통계번호** KEDA-1318  
**통계명** 중증치상환자 1시간 이내 응급실도착률  
**통계분류** 건강

**통계집적**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치상환자 중 1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비율을, 국·도·광역시·자치도인 「응급의료비환상통계」 자료로 작성함.

**그래프** 시·도별 중증치상환자 1시간 이내 응급실도착률, 2018

**통계표** 시·도별 중증치상환자 1시간 이내 응급실도착률, 2018~2018

| 연도   |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충청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라   | 경상   | 제주   | 합계   |
|------|------|------|------|------|------|------|------|------|------|------|------|------|
| 2018 | 45.1 | 42.3 | 43.5 | 44.2 | 43.8 | 42.9 | 43.1 | 43.4 | 43.6 | 43.7 | 43.2 | 43.5 |

**통계번호** KEDA-5401  
**통계명** 오성사살비  
**통계분류** 건강

**통계집적** 총살사 12년 동안 발생 및 본인·친인척 사살사 수를, 통계청 「사살원인통계」 자료로 작성함.

**그래프** 오성사살비, 2000~2018

**통계표** 오성사살비, 2000~2018

| 연도   | 비율(%) |
|------|-------|
| 2000 | 12.5  |
| 2001 | 13.2  |
| 2002 | 14.1  |
| 2003 | 15.0  |
| 2004 | 16.0  |
| 2005 | 17.0  |
| 2006 | 18.0  |
| 2007 | 19.0  |
| 2008 | 20.0  |
| 2009 | 21.0  |
| 2010 | 22.0  |
| 2011 | 23.0  |
| 2012 | 24.0  |
| 2013 | 25.0  |
| 2014 | 26.0  |
| 2015 | 27.0  |
| 2016 | 28.0  |
| 2017 | 29.0  |
| 2018 | 30.0  |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 인권통계 보고 형태: 관심통계
  - 2020년에는 인권영역별 관심통계를 별도 선정 (영역별 2종)
  - 관심통계에 대한 요약적 해설 보고 작성

**임금격차**

- 2019년 기준 여성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은 1만 6358원으로 남성 근로자가 받는 2만 3566원의 69.4% 수준임. 이 비율은 2005년 60.6%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남녀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2019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5472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2만 3103원의 23.7% 수준임. 이 비율 역시 2009년 55.3%에서 꾸준히 높아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듦.

**장시간근로자 비율**

- 임금근로자 중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근로자 비율은 2004년 53.7%에서 2018년 38.1%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

|           |  |
|-----------|--|
| 인권영역      | 관심통계   |
| 거버넌스      | 행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br>부패인식지수                    |
| 사법정의      | 범죄안건에 대한 인식<br>사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
| 물질적 생활수준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br>재정정책 재분배효과 지수          |
| 주거와 교통    | 최저주거기준 미달률<br>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가족        | 아동 및 노인 학대 발생률과 학대 유형<br>부모로부터의 욕설 및 체벌 경험률  |
| 노동        | 임금격차<br>장시간근로자 비율                            |
| 건강        | 공공의료비 지출률<br>공공의료기관 비율                       |
| 교육        |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br>교육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 문화·미디어·정보 | 의견 제의와 표현의 자유 존중도<br>소수 집단에 대한 포용도           |
| 환경        | 환경예산 비율<br>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
| 가치와 의식    | 인권침해 및 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br>인권교육 경험률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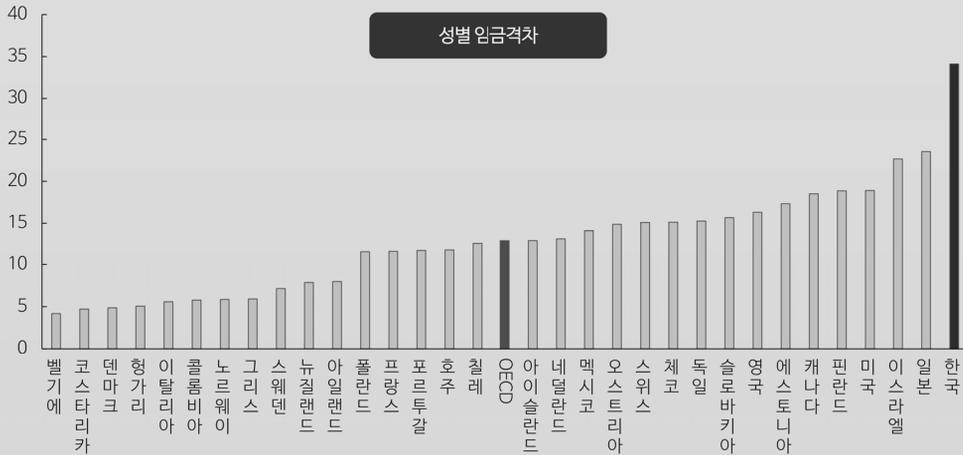
- 인권통계 보고 형태: 국제비교
  - 한국 인권상황의 객관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2021년에는 국제비교 해설 보고 작성(진행 중)
  - 인권통계를 활용한 횡단적 분석 시도
  - 인권통계 중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들로 별도의 관심주제 구성
  - 관심주제별로 인권상황의 동향과 국가 간 비교 분석

| 관심주제       | 통계명                                    |
|------------|--|
| 행정 투명성과 신뢰 |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            | 정부에 대한 신뢰(사회통합실태조사, Gallup World Poll) |
| 생명과 안전     | 사망률(사망원인통계, OECD)                      |
|            | 사망외인 사망률(사망원인통계, OECD)                 |
|            | 산업재해 사망률(산업재해현황, ILO)                  |
| 빈곤과 사회안전망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교통사고통계, OECD)               |
|            | 상대적 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 OECD)                |
|            | 재정정책 재분배효과 지수(가계금융복지조사, OECD)          |
|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한국의사회복지지출, OECD)    |
| 일자리와 질과 격차 | 근로시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OECD)                |
|            | 장시간근로자 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 ILO)               |
|            | 저임금근로자 비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OECD)           |
|            | 성별 임금격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OECD)             |
|            | 여성 관리직 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 성별 임금격차 국제비교(2018)
  - 한국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34.1%임. 이는 여성 근로자 임금이 남성 근로자 임금의 65.9%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비교 대상 32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큼.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큰 일본(23.5%)이나 이스라엘(22.7%)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심함.
  -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의 유럽 선진국들은 성별 임금격차가 5% 내외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 평균도 12.8%에 그침.
  -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0년까지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지 않다가(2000년 41.7%, 2005년 39.6%, 2010년 39.6%) 이후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2011년 36.6%, 2017년 34.6%, 2018년 34.1%, 2019년 32.5%).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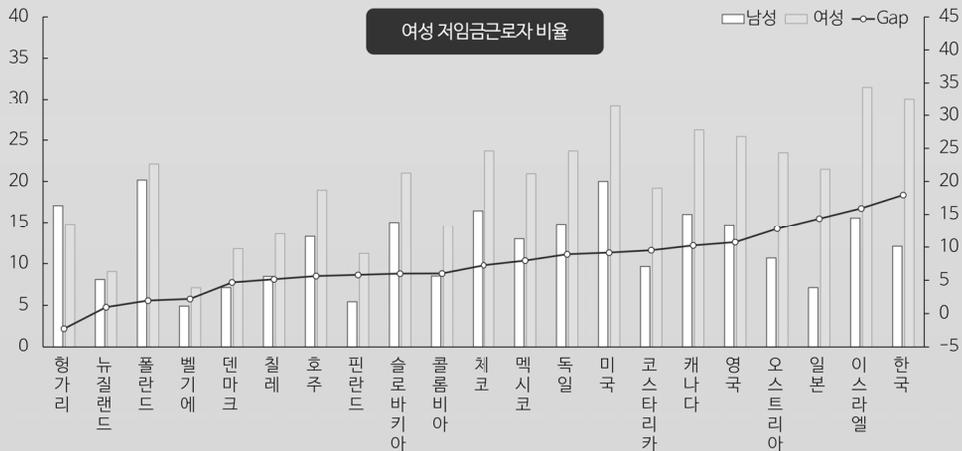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 •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국제비교(2018)

- 한국 여성 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기준 30.0%로 비교 대상 21개 국가 중 이스라엘(31.5%)에 이어 2번째로 높음.
- 한국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남녀 간 차이도 큼. 2018년 기준 남성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2.1%로 같은 해 여성 근로자의 30.0%보다 17.9%p 낮음.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격차는 비교 대상 21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임. OECD 국가들은 남녀 간 차이가 대부분 10%p 이내에 그침.
- 한국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2000년 45.8%, 2010년 40.4%, 2019년 26.1%),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남녀 간 차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2000년 30.7%p, 2010년 24.3%p, 2019년 15.0%p).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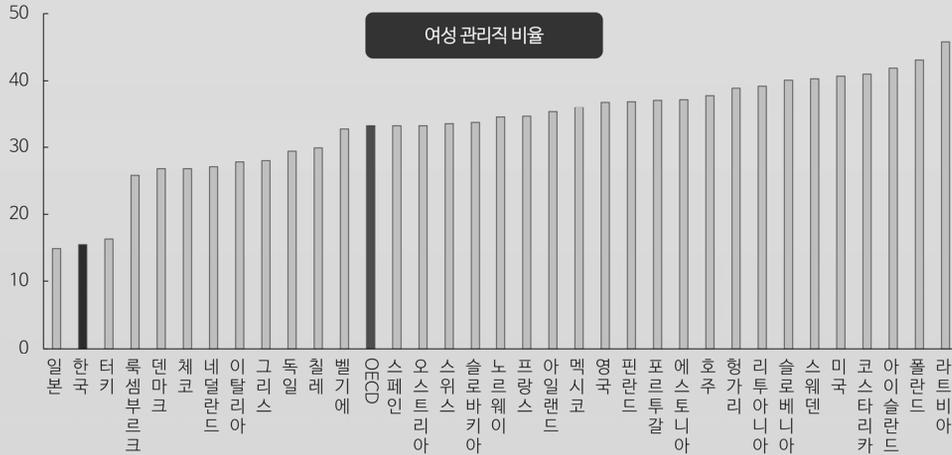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 • 여성 관리직 비율 국제비교(2019)

- 한국 여성은 일자리의 질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직장 내 승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OECD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직장 내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15.4%에 불과함.
-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3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비교 대상 34개국 중 일본(14.8%)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임. 한국, 일본, 터키 3개국을 제외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은 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25%를 상회함.
- 한국의 직장 내 관리직 여성 비율은 2016년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2010년 9.4%, 2013년 11.4%, 2016년 9.8%) 최근 들어 다소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2017년 12.3%, 2018년 14.5%, 2019년 15.4%).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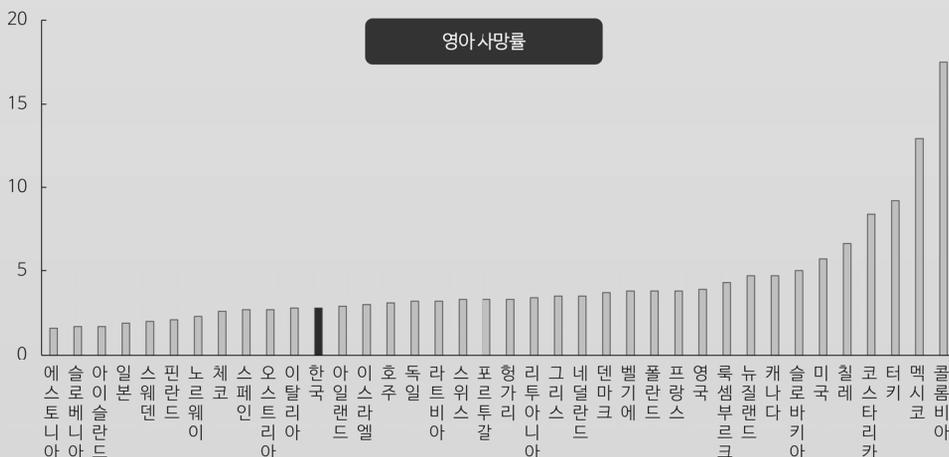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 • 영아 사망률 국제비교(2018)

- 영아 사망률은 아동 생명권의 핵심 지표임.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사망아 수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산출된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2018년 기준 2.8명으로 비교 대상 38개 국가 중 이탈리아와 함께 11번째로 낮음.
-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일본(1.9명), 스웨덴(2.0명), 핀란드(2.1명), 노르웨이(2.3명) 등에 비해서는 높지만 독일(3.2명), 덴마크(3.7명), 프랑스(3.8명), 영국(3.9명), 미국(5.7명)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지난 2005년 4.7명에서 2010년에 3.2명으로 줄었고 2014년에는 3명으로 감소함. 2015년부터는 2.7-2.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2015년 2.7명, 2016년 2.8명, 2017년 2.8명, 2018년 2.8명, 2019년 2.7명).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 · 노인 상대적 빈곤율 국제비교 (2018)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한국 노인의 경제적 생활은 매우 빈곤함.  
2018년 한국 노인(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43.4%로 OECD 비교 대상 32개국 중 가장 높음.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30%를 넘는 나라가 없음.
- 덴마크(3.0%), 아이슬란드(3.1%), 프랑스(4.1%), 노르웨이(4.3%), 헝가리(4.9%) 등은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5% 이내에 불과함.
-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가 공표된 최근 연도로만 한정하여 보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2015년 44.3%, 2016년 45.0%, 2017년 44.0%, 2018년 43.4%).

## 인권통계 현황: 통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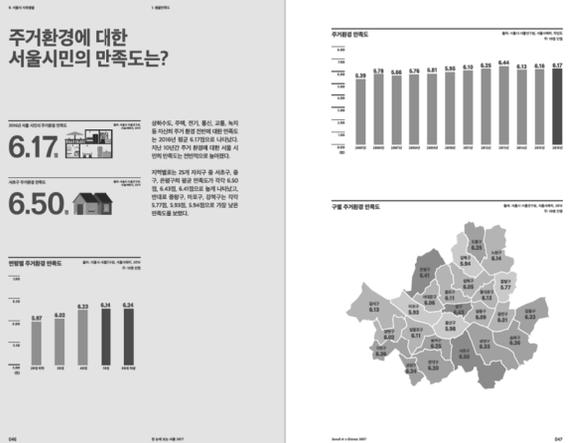
구슬이 서 말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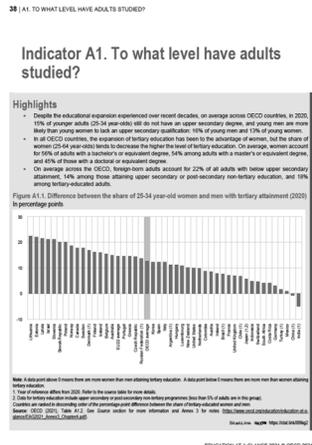
# 인권통계 활용: 국내외 통계 활용 사례

- 한눈에 보는 서울
  - 서울시의 「서울서베이」 지표를 보고하는 연례적 간행물
  - 주제별 지표 통계와 통계에 대한 해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계 설명형 보고서
  -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 극대화



# 인권통계 활용: 국내외 통계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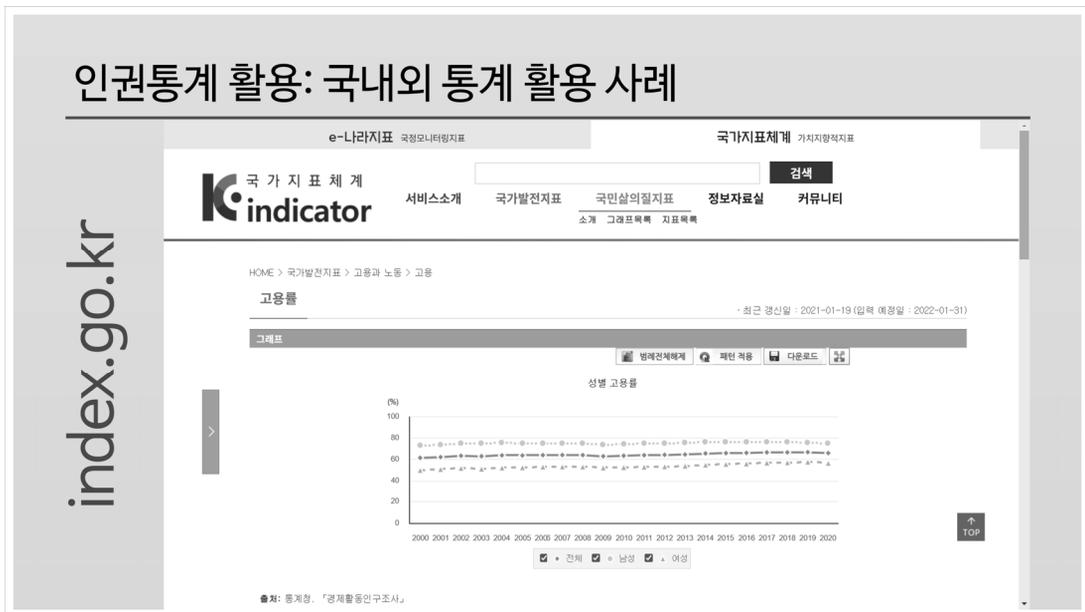
- OECD 통계 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등)
  - 특정 이슈를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심층 통계 보고서
  - 주제별로 완결성을 갖춘 독립적 이슈 페이퍼들을 수록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간



## 인권통계 활용: 국내외 통계 활용 사례

- 통계청 지표 포털(index.go.kr)
  -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계청의 대표적 온라인 지표 서비스
  -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는 통계 설명형 지표로서 두 지표의 검색 결과는 그래프, 상세 통계표, 지표 정의, 지표 해설 등의 정보를 제공함.
  - 그래프에서 원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상세 통계표의 시계열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래프의 그림 파일과 상세 통계표의 엑셀 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음.
  - 지표 정의에서는 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산출 방법, 주요 개념 등을 기술함.
  - 지표 해설은 해당 지표의 의미, 지표가 나타내는 현상의 변화 추이와 최근 상황, 국가 간 비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관련 용어와 연관 지표도 함께 볼 수 있게 리스트함.

## 인권통계 활용: 국내외 통계 활용 사례



# 인권통계 활용: 국내외 통계 활용 사례

통계표 **성별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시계열조회 | 역대 | 증감비교

[단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b>전체</b>   | 63.0   | 63.4 | 63.9 | 64.3 | 64.6 | 65.6 | 65.9 | 66.1 | 66.6 | 66.6 | 66.8 | 65.9 |
| <b>성</b>    | 남성     | 79.7 | 74.0 | 74.6 | 75.1 | 75.2 | 76.0 | 75.9 | 76.3 | 75.9 | 75.7 | 74.8 |
|             | 여성     | 52.3 | 52.7 | 53.1 | 53.5 | 54.0 | 55.0 | 55.7 | 56.1 | 56.9 | 57.2 | 57.6 |
| <b>연령집단</b> | 15-19세 | 5.4  | 6.1  | 6.8  | 7.0  | 6.9  | 7.7  | 7.8  | 8.0  | 8.4  | 7.4  | 6.6  |
|             | 20-29세 | 58.4 | 58.4 | 58.4 | 58.2 | 56.8 | 57.4 | 57.9 | 58.2 | 57.6 | 57.9 | 58.2 |
|             | 30-39세 | 71.4 | 72.0 | 72.2 | 72.8 | 73.3 | 74.1 | 74.4 | 74.7 | 75.3 | 75.7 | 76.0 |
|             | 40-49세 | 77.6 | 77.9 | 78.4 | 78.3 | 78.4 | 79.1 | 79.1 | 79.3 | 79.4 | 79.0 | 78.4 |
|             | 50-59세 | 70.2 | 70.9 | 71.6 | 72.3 | 73.2 | 74.2 | 74.4 | 74.3 | 75.3 | 75.2 | 75.4 |
|             | 60-64세 | 53.8 | 53.7 | 55.3 | 56.3 | 57.4 | 58.5 | 59.6 | 59.7 | 60.6 | 59.4 | 59.8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석: 1) 고용률 = (15-64세 취업자수 ÷ 15-64세 인구) × 100.  
 2) 고령층의 모수인구가 능력센서스 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2000.7-2017.12) 자료를 보정한 수치임.

**정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임. 만 15-64세 취업자수를 같은 연령대의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일을 도는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접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함.

**해설**

# 인권통계 활용: 국내외 통계 활용 사례

**해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해 취업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예전에는 고용 관련 지표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최근에는 고용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실업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업률은 실업실업이나 구직포기의 경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만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20년 현재 65.9%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4.8%, 여성이 56.7%이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경우 70% 이상이지만 20대와 60대의 경우에는 각각 55.7%와 60.4%에 그친다. 한국의 고용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급락한 뒤 2000년대 초반에 반등하였으나 이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은 68.4%인데, 한국은 이보다 약간 낮은 65.9%이다. 특히 영국(75.3%), 일본(77.3%), 네덜란드(77.8%), 스웨덴(75.5%), 스위스(79.9%) 등은 75% 이상의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용어**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일을 즉시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임. 경제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은 취업하고 있거나 혹은 실업자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 국내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며, OECD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 인구로 정의함.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만 활동상태에 따라 기차, 통학, 연로, 심상장애, 기타로 구분.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세 이상 인구를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후경살(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고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등은 제외함. OECD에서는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 인구로 정의함.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해당.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2000년 이전에는 구직기간 1주 기준, 그 이후부터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취업자**: 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우며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접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보조지표: 경제활동참가율(년, 2000 ~ 2020)  
 보조지표: 실업률(년, 2000 ~ 2020)

## 인권통계 활용: 국내외 통계 활용 사례

- OECD 지표 포털 (data.oecd.org)
  - OECD 지표의 검색 결과에서는 해당 지표의 정의, 지표 통계, 관련 지표 정보가 제공됨.
  - 검색 결과의 상단에 지표에 관한 메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 지표 통계는 차트뿐만 아니라 통계표로도 제공되고, 통계 시계열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거나 인구집단별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으며, 지표 통계의 데이터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음.
  - 검색 결과는 SNS나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공유할 수 있음.
  - 해당 지표 영역의 관련 지표들이 리스트되어 있어 별도의 검색 없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인권통계 활용: 국내외 통계 활용 사례

The screenshot shows the OECD Data website interface. The main heading is 'Employment rate'. Below the heading, there is a detailed definition of the 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s are defined as a measure of the extent to which available labour resources (people available to work) are being used. They are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employed to the working age population. Employment rates are sensitive to the economic cycle, but in the longer term they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and income support policies and by policies that facilitate employment of women and disadvantaged groups. Employed people are those aged 15 or over who report that they have worked in gainful employment for at least one hour in the previous week or who had a job but were absent from work during the reference week. The working age population refers to people aged 15 to 64. This indicator is seasonally adjusted and it is measured in terms of thousand persons aged 15 and over; and in numbers of employed persons aged 15 to 64 as a percentage of working age population.'

On the left side, there is a vertical sidebar with the text 'data.oecd.org'. Below the definition, there are 'Indicators' listed: '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by age group', and 'Employment by education level'.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bar chart titled 'Employment rate' with the subtitle 'Total, % of working age population, Q3 2021 or latest available'. The chart shows a steady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ver time, with the y-axis ranging from 60 to 80. The chart includes interactive options like 'Show: Chart, Map, Table', 'Fullscreen', 'Share', 'Download', and 'My pin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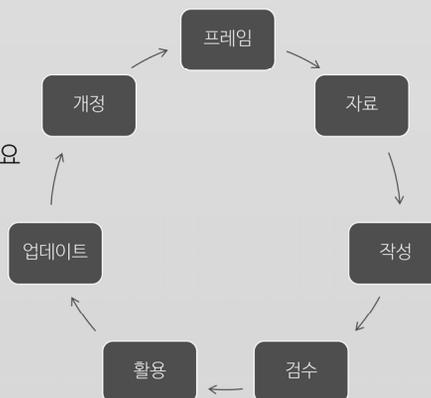


## 인권통계 활용: 향후 과제

- 인권통계 활용 과제
  - 인권통계 기반의 인권지표 개발
  - 인권지표, 인권통계, 인권연구자료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인권통계 활용: 향후 과제

- 인권지표 개발
  - 통계 설명형 지표로 개발
  - 인권은 범영역(cross-cutting) 주제이므로  
지표 개발 시 분야별 전문가 집단 참여가 매우 중요
  -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지표 선정 및 지표 해설 작성
  - 해설 작성은 삶의 질 지표와의 차별화에 핵심
  - 지표 해설을 활용한 정기적 지표 보고서 발간
  - 지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관리 거버넌스 구축



## 인권통계 활용: 향후 과제

- 인권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인권지표, 인권통계, 인권연구자료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 서비스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로부터 독립적인 데이터 전용 웹사이트 구축
  - 서비스 통합 수준에 따라 3가지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음.

| 설계안 | 통합 대상                              | 벤치마크                         |
|-----|------------------------------------|------------------------------|
| 1안  | 인권지표와 인권통계의 통합 검색                  | 통계청 지표 포털(index.go.kr)       |
| 2안  | 인권지표와 인권통계, 국가인권실태조사 문항결과의 통합 검색   | 통계청 지표 포털 + KOSIS Open API   |
| 3안  | 인권지표와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산출 연구자료의 통합 검색 |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tda.snu.ac.kr) |

## 인권통계 활용: 향후 과제



감사합니다



발제3-2

#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축과 활용

심수진(통계개발원 사무관)





#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축과 활용

심수진(통계개발원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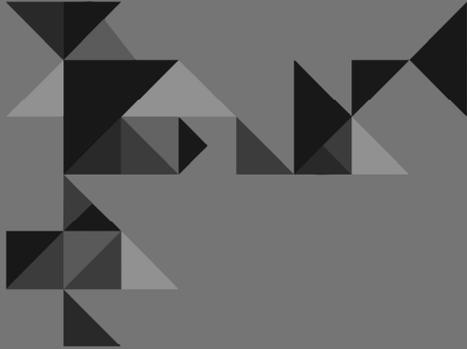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2021.12.21.)

통계청  
통계개발원

##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구축과 활용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심수진





# CONTENTS

- I. 배경 및 필요성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III.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IV. 측정이슈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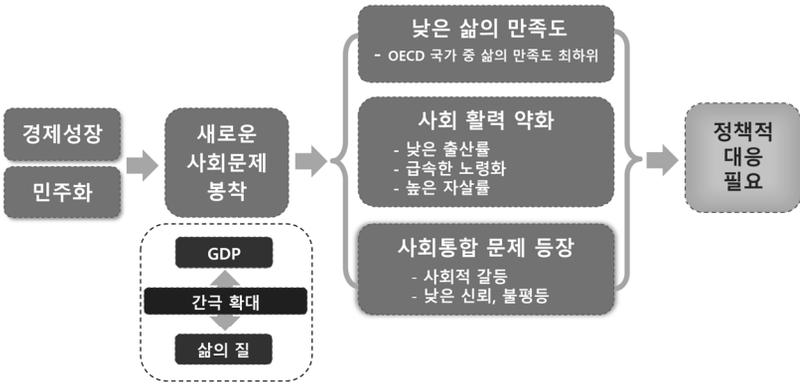
## 배경 및 필요성

## I 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 통계개발원

➔ **국내 상황**



```

    graph LR
      A[경제성장] --> C[새로운 사회문제 봉착]
      B[민주화] --> C
      subgraph DashedBox [ ]
        G[GDP]
        H[간극 확대]
        I[삶의 질]
      end
      C --- DashedBox
      C --> E[낮은 삶의 만족도  
-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 최하위]
      C --> F[사회 활력 약화  
- 낮은 출산률  
- 급속한 노령화  
- 높은 자살률]
      C --> G[사회통합 문제 등장  
- 사회적 갈등  
- 낮은 신뢰, 불평등]
      E --> H[정책적 대응 필요]
      F --> H
      G --> H
  
```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4

## I 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 통계개발원

➔ **국제적 변화 : 국제적 웰빙 측정 확산**

- 1) 국제적 관심의 확산
  - 1990년대 이후 경제중심에서 삶의 질과 환경 중시로 전환
  -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대두
  - 경제 중심의 GDP 한계 극복 필요
- 2) 국제 및 국가단위의 측정노력
  - OECD 글로벌 프로젝트('04년) → 제3차 부산포럼('09년) → How's Life 보고서 발간('11년)
  -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09년)
  - UN 세계행복보고서('12년)
  - 국가단위 측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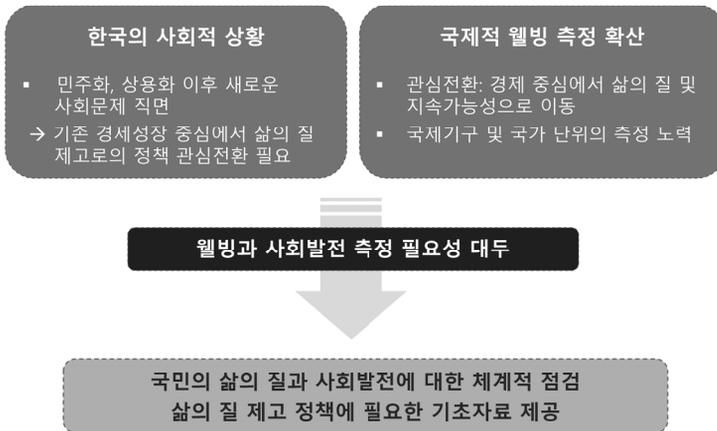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5

#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국가 단위 웰빙 측정 사례

| 국가    | 작성기관                 | 지표 및 보고서 명   | 시작연도 | 영역수 | 지표수 |
|-------|----------------------|--|------|-----|-----|
| 오스트리아 | 통계청                  | How's Austria?   | 2012 | 3   | 81  |
| 벨기에   | 연방기획국                | Belgium Complementary Indicators to GDP                              | 2016 | 13  | 67  |
| 벨기에   | 연방기획국                | Belgium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 2019 | 17  | 70  |
| 핀란드   | 통계청                  | Finland Findicators  | 2009 | 12  | 97  |
| 독일    | 연방총리                 | Well-being in Germany  | 2016 | 11  | 48  |
| 이탈리아  | 통계청/국가경제노동위원회        | Italy Measures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full set)    | 2013 | 12  | 130 |
| 이스라엘  | 중앙통계국                | Israel Well-being, Sustainability and National Resilience Indicators | 2015 | 11  | 88  |
| 룩셈부르크 | Stateg / 경제 및 사회 위원회 | Luxembourg Index of Well-being                                       | 2017 | 11  | 63  |
| 뉴질랜드  | 통계청                  | Indicators Aotearoa New Zealand                                      | 2019 | 24  | 110 |
| 노르웨이  | 통계청                  | Norway - How We Are Doing  | 2017 | 10  | 41  |
| 포르투갈  | 통계청                  | Well-being Index   | 2017 | 10  | 79  |
| 슬로베니아 | 통계청, 환경청, 국립보건원      | Indicators of Well-being in Slovenia                                 | 2015 | 20  | 90  |
| 스페인   | 통계청                  | Quality of Life Indicators   | 2019 | 9   | 59  |
| 스위스   | 통계청                  | MONET 2030 Indicator System  | 2018 | 17  | 106 |
| 영국    | 통계청                  | United Kingdom Measures of National Well-being                       | 2011 | 10  | 43  |

#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  
통계개발원

# II

##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8



통계청  
통계개발원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추진경과

**'11년**  
프레임워크 개발

- 공동연구영역
- 9개 영역, 84개 지표

**'12년**  
신규지표 개발

-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 사회통합실태조사

**'13년**  
전문가 의견수렴

-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 12개 영역, 83개 지표

**'14년**  
지표 서비스  
지표검토위원회

- 홈페이지 서비스
- 12개 영역, 81개 지표

**'19년**  
지표세분화

- 청소년/고령자 세분화
- 지역 공통항목 개발(21개)

**'18년**  
지표체계 개편

- 국민의견수렴 결과 반영
- 타 지표들과의 통일성 유지
- 11개 영역, 71개 지표

**'17년**  
국제회의  
국민의견수렴

- 주제: GDP plus Beyond
- 네이버 지식iN, 국민생각함

**'15년**  
제1회 포럼 개최

- 작성결과 공유 확산
- 주제: 국민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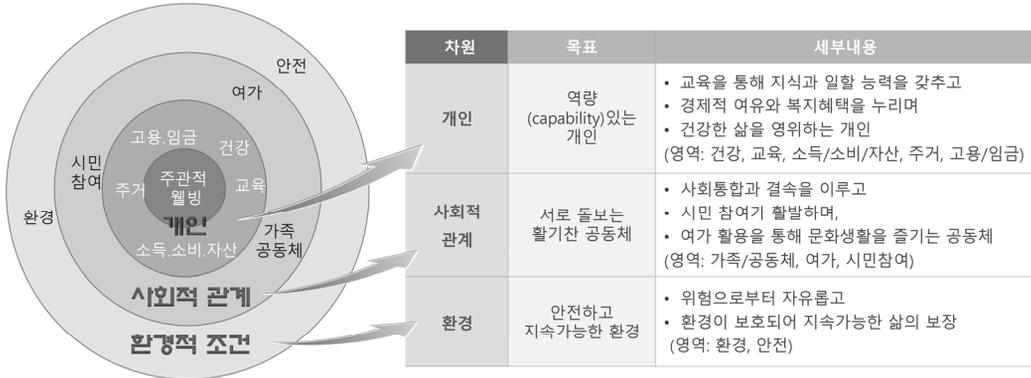
**'20년**  
지역사회조사 실시  
핵심지표 선정

- 지역사회조사에 공통항목 반영(11개)
- 국민생각함 의견 반영하여 핵심지표 선정(11개 지표)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9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3개 차원, 11개 영역 구성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 측정지표 : 11개 영역, 71개 지표

| 영역              | 객관지표 (42)   | 주관지표 (29)  |
|-----------------|---|--|
| 가족 공동체 (3, 2)   |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 가족관계만족도(+), 지역사회소속감(+)   |
| 건강 (5, 2)       | 기대수명(+), 건강수명(+),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자살률(-)  |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
| 교육 (3, 3)       | 유아교육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졸업자 취업률(+)  | 교육비 부담도(-), 학교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
| 고용-임금 (5, 1)    |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 비율(-)  | 일자리 만족도(+)   |
| 소득-소비-자산 (5, 2) |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가계부채비율(-)                                    |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
| 여가 (4, 2)       | 여가시간(+), 1인당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문화여가 지출률(+)                                       | 여가생활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
| 주거 (5, 1)       | 통근시간(-),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 주택임대료 비율(-), 자가점유가구 비율(+)                           | 주거환경 만족도(+)  |
| 환경 (3, 6)       | 미세먼지(PM2.5) 농도(-), 농어촌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면적(+)   | 대기질만족도(+), 수질만족도(+), 소음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
| 안전 (7, 2)       | 가해에 의한 사망률(-), 범죄피해율(-), 산재 사망률(-), 화재 사망자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 사회안전 인식(+), 야간보행 안전도(+)  |
| 시민참여 (2, 5)     | 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 정치적 역량감(+), 부패인식지수(+), 기관신뢰도(+), 시민의식(+), 대인신뢰도(+)                 |
| 주관적 웰빙 (0, 3)   |   |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2018년 지표개편 주요 내용

- 개편목적**
  - 사회변화의 반영과 함께 측정하는 지표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 지표의 작성기준, 조사방식 변경으로 인해 시계열 단절 지표 발생
- 개편과정**
  - 국민의견수렴 결과(2017년)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반영
    -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2014) 및 영역별 프레임워크 작성 연구(2015~2017)
    - 국가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조정, 지표표준화, 서비스 통합방안 연구(2017)
  - 개편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표검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개편결과**
  - 영역변경 : 12개 영역 → 11개 영역(사회복지 영역 삭제)
  - 지표변경 : 80개 지표 → 71개 지표(출처 및 산식변경 13개, 신규 8개, 삭제 17개)
  - 삭제지표 사유 - 삶의 질과의 적절성(폐기물 재활용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사회복지지출 비율 등)
    - 유사중복 지표(지니계수, 고혈압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등)
    - 시계열 단절(가구중위소비 등)
    - 측정방법 타당도(평생교육 참여율, 학업중단을, PISA 백분위순위, 에너지빈곤층 비율)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측정결과 공유

- 홈페이지(www.index.go.kr/kind)를 통한 분기별 업데이트

| 지표명                | 자료     | 단위    | 사항   | 출처   |
|--------------------|--------|-------|------|--|
| ▶▶▶ 가부장적 태도(가부장지수) | 184.2  | %     | 2018 | OECD, "OECD National Accounts", * 자료: OECD     |
| ▶▶▶ 가구소득           | 33,649 | 만원    | 2019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산식: 지출 -                    |
| ▶▶▶ 가구중위소득         | 2,766  | 만원    | 2018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산식: 가계소득/가                  |
| ▶▶▶ 가족관계만족도        | 56.6   | %     | 2018 | 통계청, "사회조사",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 ▶▶▶ 기대수명           | 0.8    | 일/1인당 | 2019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 ▶▶▶ 건강수명           | 73     | 세     | 2016 | WHO, "World Health Statistics", * 자료: WHO, ... |
| ▶▶▶ 교육수준           | 49.0   | %     | 2018 |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 자료: ...  |
| ▶▶▶ 고용률            | 69.9   | %     | 2019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 사회적 불평등        | 64.4   | %     | 2018 | 통계청, 사회조사                                      |
| ▶▶▶ 평균소득           | 162.4  | 만원    | 2019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자료: ...                |
| ▶▶▶ 부모양육           | 6.5    | 점/1인당 | 2019 |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사회통계정보시스템                           |
| ▶▶▶ 가난감각도          | 41.5   | %     | 2019 |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사회통계정보시스템                           |
| ▶▶▶ 기대수명           | 82.7   | 년     | 2018 | 통계청, "생명표", * 자료: 통계청, "생명표", 20-              |
| ▶▶▶ 기후변화 불안도       | 49.3   | %     | 2018 | 통계청, 사회조사                                      |
| ▶▶▶ 복지감각 만족도       | 50.2   | %     | 2018 | 통계청, 사회조사                                      |

### 연간 분석보고서 작성

국민 삶의 질 2019

통계청에서는 국민 삶의 질, 행복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11개 영역(가계·경제활동인구·교육·임금소득·사회·복지·건강·문화·고용·환경·안전·주거)의 71개 지표를 통해 측정결과를 최근 추세·시행방향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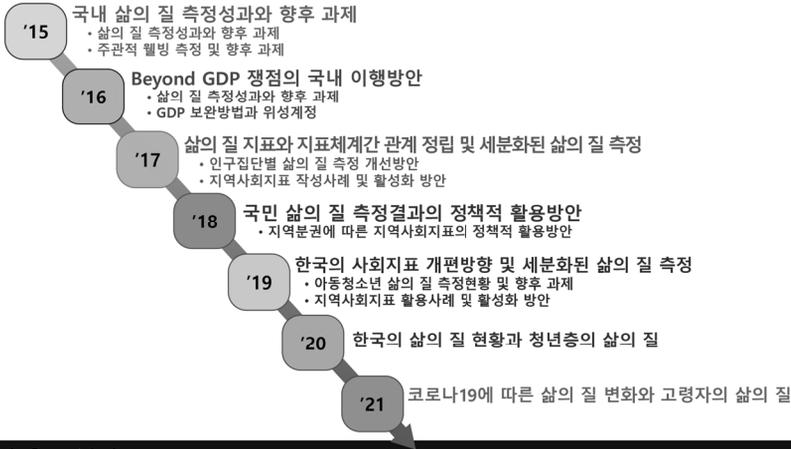
▶ 국민 삶의 질 지표 관련 자료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index.go.kr/index)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개별 지표의 사용 수식 및 설명, 출처, 관련 자료 등 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행정내역(통계자료 제공)도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부 담당자도 합니다.

Think Tank / Fact Tank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 측정결과 공유 : 포럼 개최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 지표세분화: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구집단 및 지역별 세분화 필요

#### 생애주기별 측정 세분화 : 정책대상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 생애주기   | 현행     | 개선                | 일정                          |
|--------|--------|-------------------|-----------------------------|
| 아동·청소년 | 청소년 통계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 '18년 연구, '19~'21년 협동연구(경사연) |
| 노년기    | 고령자 통계 | 고령자 삶의 질 지표 구축    | '19~'20년 DB 구축 연구           |

#### 지역별 측정 세분화 : 지역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 작성

-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역간 비교가능한 지표(주관적)의 개발 및 비교분석
- 지역의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지역간 비교가능성 확보를 통한 자료 구축(통계청, 행안부, 균형위, 지자체)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통계청 통계개발원

➔ 인구집단별 세분화 : 아동청소년, 고령자

아동 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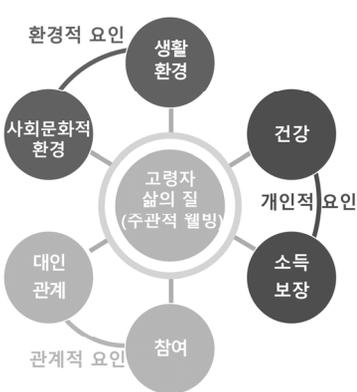
주요지표



사회적 배경 지표

인구      사회경제적

→ 시간의 흐름



고령자 삶의 질 (수관적 웰빙)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16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통계청 통계개발원

➔ 지역별 세분화 : 지자체 사회조사의 공통항목

기본방향 : 지역사회 삶의 질 측정, 영역별 최소 1개 지표, 지자체/행안부/균형위 의견수렴

조사항목과 주기: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 영역별 20여개 항목을 2년주기로 조사

**추진방향**

- 지역사회지표 공통항목
- 균형위 균형발전지표
- 행안부 지역단위 BLI

**공통항목 선정**

유사지표 비교

전문가 자문

작성 주체간 협의

지표선정

**매뉴얼 작성**

조사표 작성

조사지침 마련

특성지표 구축

실행후 수정보완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17



## II 추진경과 및 측정방법

### 지역별 세분화 : 지자체 사회조사의 공통항목

\* 삶에 대한 만족도, 가구 월평균 소득은 매년 조사하는 항목

| 영역           | 홀수년(12개)                          | 짝수년(11개)  |
|--------------|-----------------------------------|---|
| 삶에 대한 만족도(1) | 삶에 대한 만족도                         | 삶에 대한 만족도                                       |
| 건강(1)        |                                   | 의료서비스 만족도                                       |
| 사회통합(5)      |                                   | 일반인에 대한 신뢰, 기관신뢰(선택), 사회적 지원, 공동체의식, 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 소득소비자산(3)    | 가구 월평균 소득<br>소득만족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 가구 월평균 소득                                       |
| 주거와 교통(3)    | 주거환경 만족도, 교통수단 만족도,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   |
| 노동(2)        | 일자리 충분도, 일자리 만족도                  |   |
| 교육(1)        | 교육환경 만족도                          |   |
| 안전(2)        |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안전평가에 대한 평가                       |
| 환경(1)        |                                   | 환경체감도   |
| 문화와 여가(2)    |                                   | 여가활동 만족도<br>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 III

## 보고서 작성 및 관리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19



### III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 **지표가 지속적으로 작성되기 위해서는 활용도 중요**
  -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작성하고 배포할 필요
- ➔ **지표 작성 이후 최종 결과물은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작성, 제공**
  - 결과보고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약 그래프, 인포그래픽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 작성자와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로 발전
- ➔ **결과물 제공방식은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구성**
  - (전문가 대상) 요약된 결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심층분석 보고서, 메타데이터 제공 필요
  - (일반인 대상)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간략한 요약 보고서
  - (정책입안자) 헤드라인 지표 등을 통해 정책과 연계된 자료 제공, 취약집단별 비교자료 제공
  - (언론인) 인포그래픽이나 이슈가 되는 지표에 대한 요약자료



### III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 지표상황판 : '21년 6월 기준

|   |   |  |
|---|---|--|
| <b>건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대수명</li> <li>건강수명</li> <li>스트레스인지율</li> <li>주관적 건강상태*</li> <li>비만율</li> <li>신체활동실천율</li> <li>자살률</li> </ul>                 | <b>시민 참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투표율</li> <li>정치적 역량감*</li> <li>부패인식지수*</li> <li>기관신뢰도</li> <li>시민의식*</li> <li>자발봉사참여율</li> <li>대인신뢰도*</li> </ul>  | <b>여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여가지출률*</li> <li>여가시간*</li> <li>여가시간충분도*</li> <li>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li> <li>1인당 여행일수*</li> <li>여가생활만족도</li> </ul> |
| <b>고용·입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률*</li> <li>실업률*</li> <li>월평균 임금*</li> <li>저임금근로자비율</li> <li>근로시간*</li> <li>일자리만족도</li> </ul>                           | <b>안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에 의한 사망률</li> <li>범죄피해율</li> <li>아간보행안전도</li> <li>신체사망률*</li> <li>완제사망자수</li> <li>도로교통사고사망률</li> <li>아동안전사고사망률</li> <li>아동학대피해경험률</li> <li>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li> </ul> | <b>교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취월율*</li> <li>교육비부담도</li> <li>학교교육요괴</li> <li>학교생활만족도</li> <li>고등교육이수율</li> <li>대학졸업자취업률</li> </ul>           |
| <b>주관적 웰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만족도</li> <li>공정정서*</li> <li>부정정서*</li> </ul>  | <b>환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세먼지농도</li> <li>농어촌 상수도보급률</li> <li>1인당 도시공원면적</li> <li>대기질만족도*</li> <li>수질만족도</li> <li>토양환경만족도*</li> <li>소음만족도*</li> <li>녹지환경만족도*</li> <li>기후변화불안도*</li> </ul>        | <b>가족·공동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거노인비율*</li> <li>가족관계만족도*</li> <li>지역사회소속감*</li> <li>사단단체참여율*</li> <li>사회적 고립도</li> </ul>                     |
| <b>소득 소비 자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국민총소득*</li> <li>가구중위소득</li> <li>소득만족도</li> <li>소비생활만족도</li> <li>가구순자산*</li> <li>가계부채비율</li> <li>상대적 빈곤율</li> </ul> | <b>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가점용가구비율</li> <li>주택임대료비율</li> <li>1인당 주거면적</li> <li>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li> <li>통근시간</li> <li>주거환경만족도</li> </ul>  |  |

주 1) ● 개선, ● 악화, ● 동일  
 2) \* 표시는 2020년 값임(39개 지표)



# III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국민 삶의 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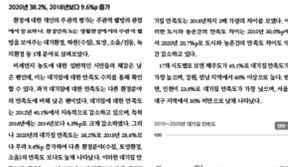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08-2019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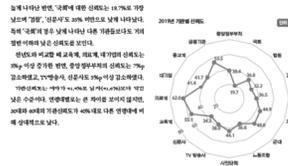
### 대기질 만족도

2019년 대기질 만족도 추이



### 기관신뢰도

2019년 기관신뢰도 추이



# III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온라인을 통한 지표 서비스(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www.index.go.kr/kind)

**국민 삶의 질 소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 삶의 질 향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 삶의 질 향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정의**

국민 삶의 질 향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 삶의 질 향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국민 삶의 질**

| 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국민 삶의 질 | 62.7 | 62.7 | 62.7 | 62.7 | 62.7 | 62.7 | 62.7 | 62.7 | 62.7 | 62.7 | 62.7 | 63.3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 삶의 질 향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 III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 주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사회변화에 따라 프레임워크나 개별 지표의 변화는 불가피
-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표 측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의미없는 지표가 발생
- 신규지표 개발, 통계자료의 생산 중단, 작성방법이 변경되어 시계열 단절
- **지표개편** 예) 한국의 사회지표(1979년 ~) : 7~8년 주기로 지표체계 개편(2019년 5차 개편)  
 국민 삶의 질 지표 : 2011년 지표개발 이후 2018년 지표체계 개편  
 OECD How's Life? : 2011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2020년에 개편된 보고서 발간

#### ➔ 지표의 작성 이후 주기적으로 검토와 보완하는 과정 필요

- 변경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지표 이용자들의 의견 반영 필요
- 작성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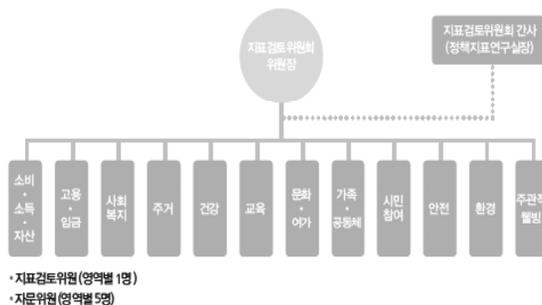
#### ➔ 국민 삶의 질 지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III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 국민 삶의 질 지표 지표관리 사례

- 지표의 변경이나 검토를 위해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영역별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와 영역별 자문위원
- 개별 지표에 대한 변경이나 지표작성과 관련된 내용 등을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 III 보고서 작성 및 관리

통계청 통계개발원

➔ 지표관리 사례

```

    graph TD
      A[지표에 대한 의견] --> B[지표검토위원회 검토 회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B -- 미적격 --> C[지표에 포함하지 않음]
      B -- 차별 --> D[지표통계 생산 실행 확인  
(출처, 자료, 신뢰성 등)]
      D -- 기생산지표 --> E[2회 이상 자료 구축]
      E -- 미생산 지표 --> F[지표생산 추진]
      F --> E
      G[살의 질 지표 투입] --> E
      E --> H[살의 질 지표 투입]
  
```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8

### IV 측정 이슈

통계청 통계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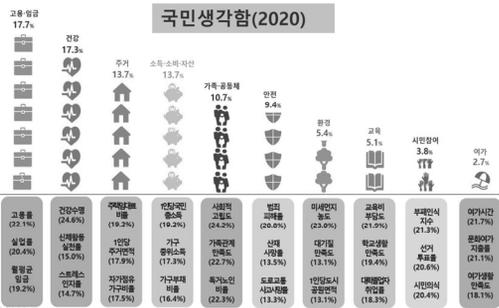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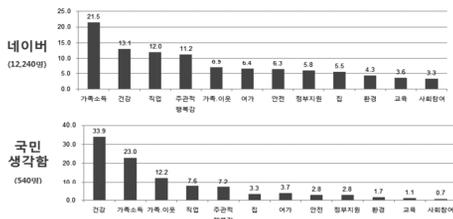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9

# IV 측정 이슈

## ▶ 삶의 질 지표의 타당성과 체감도

- ✓ 어떤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보여줄 것인지
- ✓ 지표 선정과정 : Top-down, Bottom-up, Hybrid

국민의견수렴(2017)



# IV 측정 이슈

## ▶ 지표 vs. 종합지수

|         | 지표나열(dashboard)                                    | 종합지수  |
|---------|--|---|
| 방식      | 개별 지표를 모두 나열하여 제시                                  | 전체 지표를 합산하여 하나의 수치로 제시  |
| 예       |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 소비자물가지수   |
| 삶의 질 측정 |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등                                    | 캐나다, 이탈리아, 부탄   |
| 장점      | 정보의 왜곡을 차단<br>참고자료로 활용도 높음                         | 많은 지표를 효과적으로 요약하여 제시<br>해석하기 쉬움(시계열, 집단간 비교 용이)<br>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도 용이                  |
| 단점      |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br>지표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br>정책적 관심이 낮음 | 작성과정에서의 자의성(합산방법, 가중치 등)<br>편의에 따라 오용될 가능성<br>중요한 하위 차원/지표가 묻힐 가능성<br>단순한 결론/정책에 이를 위험성 |

스티글리츠 위원회(Stiglitz et al., 2009) : "삶의 질의 단일한 요약 측정법을 구축하는 초점은 맞추기 보다는, 통계청은 각 사용자의 철학적 관심에 따라 다양한 종합지수 값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IV 측정 이슈

### ➔ 정책적 활용

- ✓ 정책수립 과정에서 웰빙 지표 활용 사례
  - 뉴질랜드 : 웰빙 예산(19년 5월), 예산 선정과정에서 웰빙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예산법에 의거, 12개 대표지표와 예산을 연계  
정책이 웰빙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현재 추세와 정책 예측을 비교
  - 아이슬란드: 웰빙지표를 근거로 하여 예산안 마련(2020년)
- ✓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질, 행복 증진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정책목표에 반영
- ✓ 인구집단 및 지역별로 세분화된 지표 작성을 통해 정책적 활용도 제고 필요



통계청  
통계개발원

# 감사합니다

shimsj@korea.kr



지정토론

# 인권통계 활용방안 및 국가인권지표로의 발전 방향 모색

박종수(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윤정(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이희길(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이상운(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실장)





# 인권통계 활용방안 및 국가인권지표로의 발전 방향 모색

박종수(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인권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 및 관리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인권통계와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대표된다. 국가인권통계는 2018년에 개발하여 2019년부터 그리고 국가인권실태조사 역시 2019년부터 통계화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3개년도의 인권 통계가 조사 및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인권통계는 기존 정부부처가 생산하는 행정통계 중 인권 관련 통계를 조합하고 자체조사 형태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 제도 및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통계의 작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행정 자료를 통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통계는 11개 인권영역과 3개 권리유형에 따른 41개 인권주제를 담은 인권통계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 인권주제별로 1개에서 43개까지의 통계를 수집하여, 총 460여개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11개 인권영역 중 가치와 의식의 1개 영역은 인권실태조사를 자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영역은 통계청 KOSIS, 국가발전지표, 국민삶의질지표, e-나라지표 등의 지표통계 및 기타 행정기관의 통계 보고서와 연감을 자료원으로 하고 있다.

인권통계의 활용과 발전에 있어서 단기와 중장기적 접근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단기적 접근은 인권통계의 생산과 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의 업데이트이고 장기적 접근은 인권통계 및 인권실태조사를 확장한 국가인권지표의 개발이다. 인권통계의 지표화는 한 국가의 인권 수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취약지점을 탐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평가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가인권지표(indicator)는 국가인권지수(index)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국가인권통계의 인권통계프레임워크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인권통계의 개발과 호러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다양한 인권의 분야와 주제를 프레임워크에 포함하고, 각 영역 및 주제별로 복수의 지표를 활용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선, 인권통계프레임워크가 정의한 영역과 권리유형 및 세부 주제의 다양성은 정보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지지만,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인권통계는 현재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3개 유형을 거버넌스, 사법정의와 같은 정치-행정 영역, 생활수준 및 노동과 같은 경제 영역, 교육 및 문화와 같은 사회 영역, 건강 및 환경과 같은 건강 영역을 포함한 11개 영역과 연계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인권유형의 내용을 담은 세부 인권 주제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권리유형이 다소 광범위한 수준으로 개념화되어 있고, 인권영역별로 연결되는 권리 유형이 상이하여, 인권영역과 권리유형, 그리고 인권 주제 간의 개념적 연계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각 세부 인권영역별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면 그 한계를 보다 명확히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거버넌스의 영역에서의 인권현황은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권리를 주로 보여 주고 있으며, 평등권 역시 정치참여에의 평등을 정의하고 있어 시민의 권리 보다는 정치적 권리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문화·미디어·정보 분야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주제에서 평등과 관한 인권 현황을 통계화하고 있는데, 다양성의 대상을 성, 연령, 국적, 장애, 질병, 범죄경력, 종교 등으로 다양화하였다는 장점을 가지나 해당 분야가 문화 영역에서의 평등권과 연계성이 높지 않다. 특히, 인권실태조사의 차별 경험률의 지표가 다양성 존중의 인권주제, 평등권의 권리유형, 문화·미디어·정보의 인권영역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차별 경험과 해당 인권 영역에 적합한가는 의문의 부분이다.

둘째, 인권통계의 발굴 기준의 재정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인권통계는 국가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와 통계 및 지표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발굴 및 작성되고 있고, 국가 수준의 대표성과 국가 승인 통계의 공인성, 그리고 동일 지표를 주기적으로 반복 측정하는 주기성을 발굴의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통계의 정책정보로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통계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와 관련한 개념적 또는 동시적/예측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실태조사는 인권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인권을 정의하여 측정 중에 있다. 하지만, 인권통계는

다양한 인권영역과 권리유형을 구분하여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인권통계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인 2개의 자료가 인권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통계 프레임워크가 각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특별히 부여하지 않았다면 세부 유형으로서 다의미를 가진 인권에 대한 통계가 포괄적 의미를 가진 인권을 어떻게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을지가 모호하게 정의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가 강조하는 인권영역과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영역의 내용과 중요성의 불일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통계는 노동영역의 77건, 사법 정의 영역의 72건, 건강영역의 64건의 통계를 관리 중에 있는데, 통계 수의 기준으로 이들 3개 영역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생활수준, 환경 및 교육, 주거와 교통 등의 분야가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셋째, 현재의 인권통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인권통계데이터 베이스는 3개 권리 유형을 기준으로 인권통계의 세부 내용을 연결하여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인권통계의 제공 방식이 사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성과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인권통계의 사용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것과 연계되는데, 현재 인권 통계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공직자 및 학계/연구계)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메타데이터 또는 로우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권의 개념과 유형이 다양함에 따라 인권정보를 사용하는 대상도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데, 권리 유형 이외에 사용자의 관심사에 기준한 데이터의 관리 및 제시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권통계프레임워크의 각 영역별 관심통계가 제시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연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해당 자료를 얼마나 활용할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영역의 행정기관 공정성과 부패인식지수는 유사한 개념이며, 이들 지수의 개선이 인권 분야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강 분야와 관련하여 공공의료비 지출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의 통계는 의료 분야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 자체가 인권 분야의 대표 지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역시 의문이다.

인권통계의 관심 지표 중 상당수가 정부 및 국가기관의 역할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국가의 개입이 증가할수록 인권 현황이 개선된다는 것은 인권 정책 분야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역설을 가져올 수 있다.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 사회 및

지역 사회의 활동이 강조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행정 일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여, 현재의 인권 통계는 국가 및 정부의 역할을 다소 강조하는 인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통계가 인권영역별로 관리가 되는 인상인데 권리유형 또는 인권주제별로 통계프레임워크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인권통계의 정책적 활용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다양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서로 상충될 때, 이 상충의 문제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질문이다. 인권의 수요가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게 중첩되어 나타날 때, 이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개선할 것인지도 고민의 부분이기도 하다. 즉, 인권통계가 인권 현황에 대한 모순 또는 상충, 모호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인권 취약 집단이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있지만, 대표적인 취약 집단을 한정된 인권통계도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 분야는 대상별로 복지수요와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 기획 및 평가에 활용 중에 있다. 하지만, 인권통계가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계층 간 차이를 고려하여 생산 및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인권통계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가공 및 재분석이 필요한 한계를 가진다.

# 인권통계 활용방안 및 국가인권지표로의 발전 방향 모색

주윤정(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상당히 광범위한 기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본 토론은 연구 자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 1. 인권통계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장기적인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핵심 데이터에 대하여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들(법무부 통계연보, 경찰청 통계연보, 보건사회통계연보 등) 중 아직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을 발굴하여, 전산화 하여서 장기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보건사회통계연보(1955년 이후 존재) 등은 현재 pdf등의 방식으로 확보가 가능하니, 대한민국국가 수립 이후 작성된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화와 정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 대한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2. 통계 범주에서 현재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인권영역,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고려 필요

기후변화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이주민/난민, 생태위기와 인권/동물권 등 인권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통계의 범주를 장기적으로는 권리 중심과 더불어 사람중심(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을 중심으로 재배치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분리통계의 개발이 인권통계와 관련해서는 항상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

또한 현재 새로 작성되고 있는 NAP,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권통계가 인권기본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수집, 작성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효과적으로 계획과 통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인권통계의 활용

인권통계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인권영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나 자문기구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인권통계 영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위원회나 자문기구 등을 형성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사회동향과 마찬가지로 연례적으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인권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의 보고서를 염두에 둘 수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권의 영역은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거기반의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계체계의 정립과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객관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근거기반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가의 인권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의 축적에 더해 인포그래픽 등을 풍부히 활용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인권통계 활용방안 및 국가인권지표로의 발전 방향 모색

이희길(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 1. 그간의 성과 평가

- 인권통계 개발과정은 18년 중기계획에 따라 비교적 안정으로 진행됨
  - 인력 및 관련 예산을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과제 추진
- 하지만 인권통계의 내용적 충실성, 정책적 활용,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표〉 인권통계 발전계획(17년)

| 연도/주체 | 추진내용  |
|-------|---|
| 2018  |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text-align: center;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인권위</div> <div style="flex: 2; padding-left: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3월 초)</li> <li>② 통계청과 MOU 추진(3~4월)</li> <li>③ 국가인권통계 자문위원회 구성(3~4월) *내부 실무지원팀 구성 포함</li> <li>④ 국가인권통계 관련 방안 연구(연구용역) 진행(3~11월, 통계청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개발원 공동연구</li> </ul> </li> <li>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준비(관련기관 자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법무담당관 협조</li> </ul> </li> </ul> </div> </div> |
|       |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text-align: center;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통계청</div> <div style="flex: 2; padding-left: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인권통계 관련 방안 연구 협조(3~11월)</li> <li>② 인권위와 MOU 추진(3~4월)</li> <li>③ 국가인권통계 구축 관련 업무 자문(기획/승인/대행/DB구축·온라인 서비스, 통계정책과, 통계서비스기획과)</li> </ul> </div> </div>  |

| 연도/주체 |     | 추진내용  |
|-------|-----|---|
| 2019  | 인문위 | ① ‘국가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br>- 실태조사 통계청 대행(실태조사, 분석, DB구축)<br>- 국가통계 승인 요청<br>② ‘2019년 대한민국 인권상황 보고대회’ 시범 개최(향후 정기 개최 검토)<br>③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제출(기획재정부) |
|       | 통계청 | ① ‘국가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통계조정과)<br>② ‘국가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행(조사대행과)<br>③ ‘국가인권상황 실태조사’ 분석 및 DB 구축(통계개발원)  |
| 2020  | 인문위 | ① 국가인권통계 DB 온라인서비스(시범) 실시<br>② ‘국가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통계청 대행)<br>③ ‘2020년 대한민국 인권상황 보고대회’ 개최  |
|       | 통계청 | ① 국가인권통계 DB 온라인서비스 준비   |

## 2. 향후 개선과제

- 인권통계 발전방안은 1) 인권통계의 콘텐츠 강화 및 인권보고서 발간 2) 활용 강화 3)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함

### 1) 인권통계의 콘텐츠 강화 및 인권보고서 발간

#### 가. 콘텐츠 강화 : 취약집단 및 인권지표 발굴

- 인권 취약집단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한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이들 취약집단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인권위에서 각 집단별 전문조사에 필요한 공통항목 모듈을 일정 주기로 측정 협조

- ‘군인’, ‘재소자’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
- 인권지표 추가 발굴
  - 전문가 집단(인권통계자문위원회 구축 및 활용)을 활용한 지속적 지표개발이 필요
-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 지표통계를 활용한 서술형 보고서

## 2) 인권통계 활용강화 : 정책활용 및 학술적 활용

- 정책적 활용 : 인권통계의 정책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양질의 ‘한국인권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정부기관에 배포
  - 특히 인권위 내부에서부터 정책수립에 인권통계의 활용을 강화
- 학술적 활용 : 인권통계 분석경진대회 개최(실태조사 활용)
  - 인권실태조사의 원자료를 공개하여 분석경진대회 실시하여 인권통계의 학술적 활용 유도

## 3) 대국민 서비스 강화

- DB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실행방안) 1) 중장기 “인권통계 개선 및 활용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별 사업들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마련하여, 2)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제도,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한 인권위 내부 및 외부 유관단체, 전문가의 협의과정을 거친 다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중요

# 인권통계 활용방안 및 국가인권지표로의 발전 방향 모색

이상운(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실장)

## 1. 서론

- 현 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 통계 구성의 방법론, 실제 구성된 통계 콘텐츠의 품질, 그리고 향후 과제에서 제시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등은 사회지표 개발 및 보고 방식에 있어 국제 기준과 흐름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발제문에서 “구슬이 서말이라도...”라고 밝혔듯이 잘 구축된 자원들을 어떻게 서비스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 그 이유는 이용자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 의사결정권자 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시된 통계가 너무 많고,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혹은 시민활동가 입장에서는 원하는 통계가 너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이 통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 구축된 인권통계의 대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통계가 아닌 여러 관계 기관들의 통계들을 활용해 재구성한 통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결국, 다른 통계 DB와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2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인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안

### 제언 1. 정보 및 지식 축적/공유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에 데이터 기반 인권 메시지를 공유 및 확산하는 데이터 플랫폼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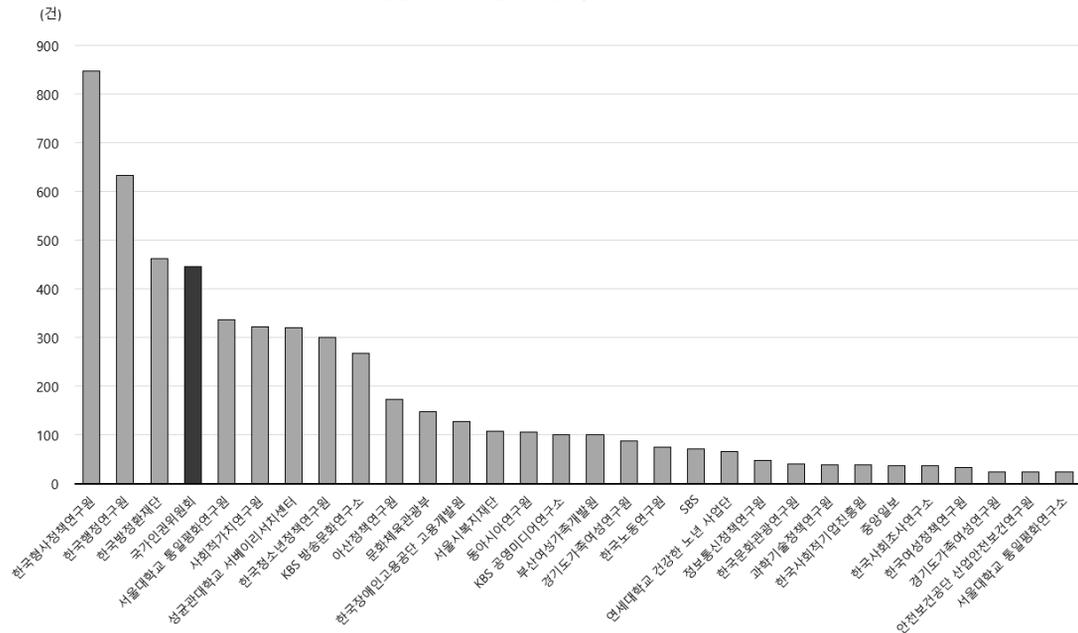
- 오늘날과 같이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또는 메시지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집합지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문가집단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된다. 오히려 일반인의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은 의미부여와 해석을 동반하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일이다. 그래서 가치중립성을 지향하는 일반적인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또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연구진이 제시한 인권통계 활용 예시안은 주로 통계청 또는 OECD가 주관하고 있는 지표 DB이다. 이들 DB는 일종에 틀로서 벤치마킹하기에 훌륭한 예시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필자가 제안하려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 제공하라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질문들에 답하는 콘텐츠들이다.
  - 그래서 한국의 인권상황은 어떻다는 것인가?
  - 개선된 것은 무엇이고,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이러한 측면에서 사건 중심의 인권 현황 보고서이지만 국제엠네스티가 매년 발간하는 「국제엠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숫자로 본 전 세계 인권 현황」 카드뉴스 등은 참고할만하다.
- 또한 데이터 시각화와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Our World in Data’, ‘Pew Research Center’ 웹사이트 등도 참고할만하다.



### ※ KOSSDA 국가인권위원회 컬렉션 이용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부터 KOSSDA와 업무협조 방식으로 위원회 산출 연구데이터를 KOSSDA에 기탁해왔으며, KOSSDA는 기탁받은 연구데이터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문서화, 데이터 클리닝, 익명처리 등 일련의 가공을 거쳐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별도의 국가인권위원회 컬렉션을 구성해 일반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2021년 현재 2002~2018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 총 111건의 연구데이터가 KOSSDA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 2021년 1~3분기까지 KOSSDA 기관별 데이터 이용 현황을 보면, KOSSDA의 40여 개 기탁기관 컬렉션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이용이 많다.

기관별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2021.3.1. ~ 12.10.



---

##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

| 발행일 | 2021년 12월 21일

| 발행인 | 송 두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797 | F A X | (02) 2125-0913

| 웹사이트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디자인모장

| 전 화 | (02) 2278-1990

---

ISBN 978-89-6114-868-9 9331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